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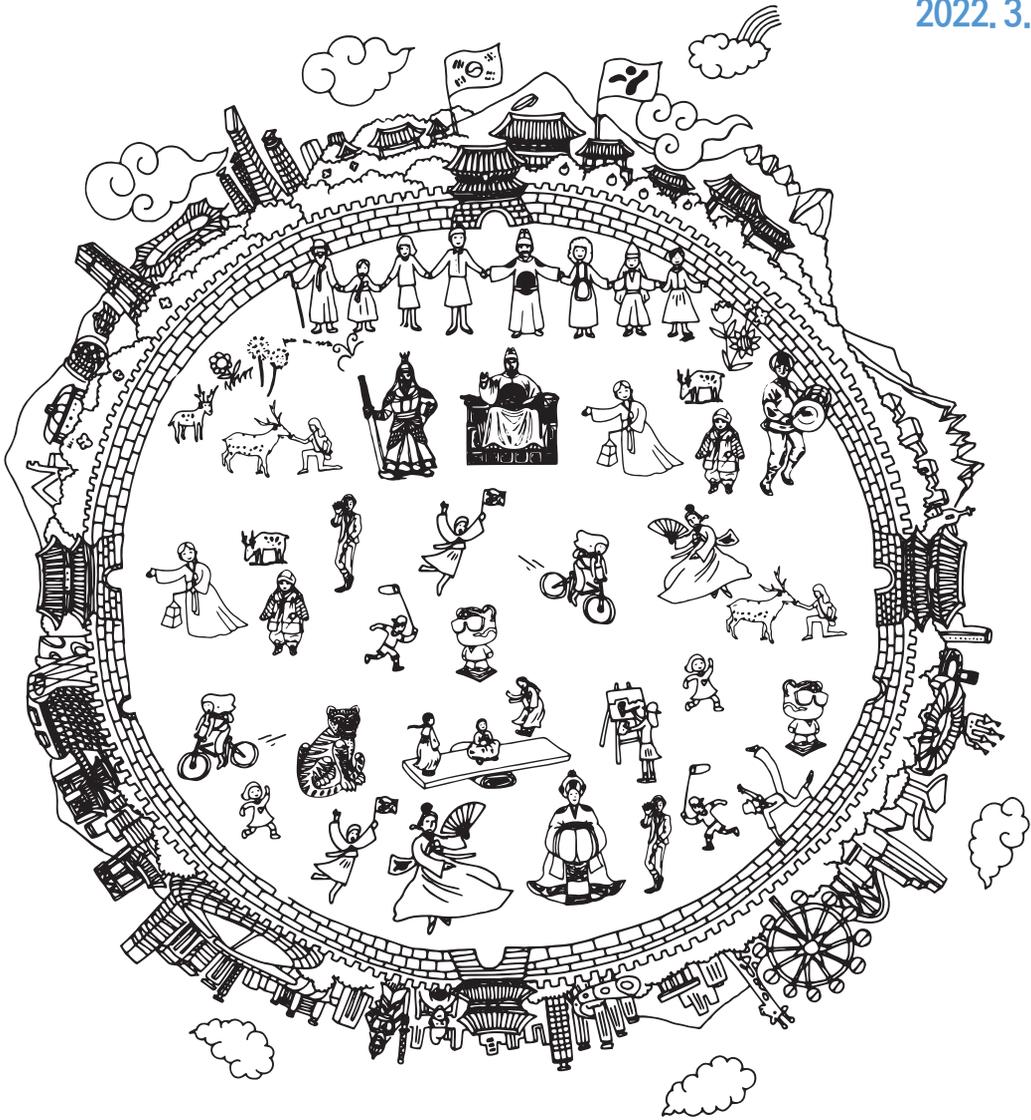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70호
2022. 3. 24.(목)





[]

제447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473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
제447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제4475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

제2022-790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	----

[]

제2022-83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27
제2022-844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1

제2022-1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3
제2022-123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7
제2022-125호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2
제2022-126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71
제2022-127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4호 <무속지화장> 종목 지정 고시	73
제2022-128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5호 <불교지화장업> 종목 지정 고시	74
제2022-130호	2022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75
제2022-13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77

제2022-79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1차 - 경고) 조치 통보 공고	83
제2022-79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85

제2022-80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87
제2022-816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88
제2022-821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89
제2022-82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90
제2022-83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08
제2022-83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09
제2022-840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10
제2022-841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113
제2022-845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16
제2022-84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18
제2022-47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119
제2022-2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122
제2022-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동구)	124
제2022-56호	행당제6,7구역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126
제2022-57호	행당제7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127
제2022-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128
제2022-4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성북구)	132
제2022-5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 변경)고시 (노원구)	135
제2022-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136
제2022-5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138
제2022-129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140
제2022-64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송파구)	164
제2022-3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마포구)	165
제2022-41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의견 청취 공고 (성북구)	172
제2022-535호	도시계획시설(물푸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은평구)	175

제2022-6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186
제2022-6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개웅산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187
제2022-6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동)]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90
제2022-6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 소공원 2-1)]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93
제2022-62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소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95
제2022-6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 7-2)]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98
제2022-489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동작구)	201
제2022-78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202
제2022-1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3
제2022-105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203
제2022-1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4
제2022-111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204
제2022-1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5
제2022-1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6
제2022-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6
제2022-41호	하천점용(변경) 허가(한강유역환경청)	207
제2022-47호	하천점용(변경) 허가(한강유역환경청)	208



[]

447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맞게 관련 용어를 규칙에 반영함(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4473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중 "특정기술"을 각각 "특정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건번호	제	호
------	---	---

건 명	
-----	--

발주부서	
제출년월일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요청부서		요 청 일	
총사업비		특정제품비	
사 업 명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위치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계약방법 : 		
심의안건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대상(심사안건) — ○특정제품 개요 — — — ○심사요청 사유 — — 		
별첨서류	사업 세부 설명서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사업내용

사 업 명			
발주부서		발주방법	
사 업 비		특정제품비	
심사 안건명			
[사업개요]			
[특정제품 개요]			

 추진경위

-
-
-

【별지 제4호서식】

□ 안 건 명 :

검토편야	검 토 의 건	비 고

년 월 일

검토의원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 심사건명 :

○ 발주부서 :

1. 본인은 위 심사건에 대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취득한 심사기준,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 심사건과 관련된 사업의 설계·시공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4. 심사위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7호서식】

- 1. 안 건
- 2. 일 시
- 3. 장 소
- 4. 의결사항 : 별첨

년 월 일

○○○○(기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및 용어가 ' 21. 12. 30.자로 변경되어(특정기술→특정제품) 이에 따른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서 “특정기술” 이 “특정제품” 으로 변경된 사항을 규칙 제명 및 본문에 반영함.

447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를 “건축허가 대상이면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세대 미만인 경우” 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업구역 면적(사업구역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 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노후건축물” 을 각각 “노후·불량건축물”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 을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후건축물” 을 “노후·불량건축물”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4)

1. 원칙 : 사업구역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5 이상인 경우
 - 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사업구역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부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함되는 부지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공급되는 주택 전체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마.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이거나,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합계가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바. 그 밖에 시장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 기준
 - 가.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철거 신고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및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은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 제1호 및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할 때 기존 건축물 전체가 주거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는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거 용도에서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본다.

- 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마.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물 동수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 이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신 설></p> <p>2. 건립예정 세대수가 <u>30세대 미만인 경우</u></p> <p>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별도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 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p> <p>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p>	<p>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 ----- ----- ----- -----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p> <p><단서 삭제></p> <p>1. 사업구역 면적(사업구역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2. -----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u>노후건축물</u>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② ----- ----- ----- ----- <u>노후·불량건축물</u> ----- -----.</p>
<p>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u>노후건축물</u>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③ ----- ----- ----- ----- <u>노후·불량건축물</u> ----- -----.</p>
<p>제15조(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u>노후건축물 적용기준</u>) 조례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대주택은 제외) 및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u>노후건축물 적용기준</u>은 별표 1을 적용한다.</p>	<p>제15조(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u>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u>) ----- ----- ----- ----- ----- ----- ----- <u>노후·불량건축물</u> ----- -----.</p>
<p>[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u>노후건축물 기준</u> (제4조 관련)</p> <p>1. 원칙 : <u>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가. <u>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서울특별</u></p>	<p>[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u>노후·불량건축물 기준</u> (제4조 관련)</p> <p>1. --- : <u>사업구역 내 ----- ----- ----- <u>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u></u></p> <p>가.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p>

현행	개정안
<p><u>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u></p> <p>나. <u>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건축물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u></p> <p>다. <u>사업부지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부분은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u></p> <p>라. <u>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마. <u>주거지역 안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전체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대비 부지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u></p> <p>바. <u>그밖에 시장이 노후도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 신 설 ></p> <p>< 신 설 ></p>	<p>나. <u>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5 이상인 경우</u></p> <p>다. <u>「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라. <u>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u></p> <p>< 삭 제 ></p> <p>< 삭 제 ></p> <p>2. <u>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u></p> <p>가. <u>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u></p>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정된 구역 중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나. 사업구역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부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함되는 부지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 신 설 ></p>	<p>다. 공급되는 주택 전체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 신 설 ></p>	<p>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 신 설 ></p>	<p>마.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이거나,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합계가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 신 설 ></p>	<p>바. 그 밖에 시장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p>

현행	개정안
<p>2.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 기준</p> <p>가.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u>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나. <u>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에 넣어 계산한다.</u></p> <p>다. <u>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으로 확인한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 동수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u></p> <p>< 신 설 ></p> <p>< 신 설 ></p>	<p>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3. ----- -----</p> <p>가. ----- ----- -----, ----- ----- ----- -----.</p> <p>마. ----- 아파트의 건축물 동수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p> <p>나. ----- ----- -----건축물폐쇄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철거 신고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및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은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p> <p>다. 제1호 및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할 때 기존 건축물 전체가 주거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는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거 용도에서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본다.</p> <p>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p>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u> <u>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u> <u>적용한다.</u>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다양한 지역 현황과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구역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함(제4조제1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개선함(별표 1).

447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제9호” 를 “제10호”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31조제1항제9호” 를 “제31조제1항제10호”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제31조제1항제9호” 를 “제31조제1항제10호” 로 한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중증장애인 감면시행을 위한 감면율 등의 규정 신설(제27조제1항).

[]

2022 - 79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제21조의4 및 제28조의4에 따라 위임된 성과계약과 정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변경 (안 제3조)
-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및 우선위탁 요건 변경 (안 제4조의 1항 및 안 제17조의 3항)
- 이사장·대표이사 명칭을 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변경 (안 제8조)
- 성과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 (안 제18조 및 제19조)
-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0조~안 제 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748, FAX:02-2133-0718, E-mail : mozart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022 - 830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으로 재산등록의무 대상이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 21.10.2.)으로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안 제4조)

-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 및 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 제한범위는 부동산 유관부서의 직무 관련 부동산으로 함(별표)

나. 부동산 취득 여부 조사 및 취득 신고(안 제5조~제7조)

-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 상속, 근무, 취학, 결혼 등 예외적 취득 인정(1개월 이내 신고)

다.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8조)

-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 자진매각 요구
- 의무 위반 부동산 취득,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징계 조치

라.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 누설 금지(안 제9조)

마. 기타 세부사항(안 제10조)

- 신규취득 여부 조사, 신고에 대한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161, 이메일 hongjay@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예규)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김형래, 팀장 최준영, 주무관 홍제희									
4. 근거법령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 				관	련	규	제	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부동산 업무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 부동산 유관부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및 그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직계존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 									
6. 규제존속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이 유지되는 동안 존속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대상자(피규제집단)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부동산 범위, 기간 포함 [제정안 제4조(별표 포함)] - 직무관련 신규부동산 취득시 제한대상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자진 매각 요구(제정안 제8조)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직무상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LH 사태)
-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 21.10.2. 시행)
- 개정법의 주요한 규정인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일반 시민의 지지 및 공직사회의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제한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공직윤리시스템상 부동산취득신고 관련 기능 신설로 충분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짐
- 다만, 부동산 유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취득제한 부동산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혼란없이 규제목적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기존 규제 없음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이며, 행정예고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이를 참고할 예정임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규제에 의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직무상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행위 예방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별표를 통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신고방법을 명시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직무관련 부동산의 예외적 취득시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있음
- 처리기간 규정 미비하여 필요시 행정예고 기간 중 보완하겠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감사부서의 장이 예외적 취득 신고의 적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인할 예정임

2022 - 844

「 () 가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 2021. 6. 2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도시의 개발사업 중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

-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건축용도(주거·비주거) 및 규모별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시기 규정

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삭제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 불필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 설치·사용을 위해 사업자 선택의 자율성 확대

다.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 불필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 설치·사용을 위해 사업자 선택의 자율성 확대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인증 정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와 연계하여 단계적 시기 규정

마.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정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2. 1. 28.)에 따라 ‘주차면’을 ‘전용주차구역’으로 개정

바. 생태면적률 적용 비율 정비

-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2) 온실가스 항에 제시되어 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녹지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을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4) 토지이용 항으로 이동하여 명시

사. 저소음포장도로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 항목 삭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타 소음방지 시설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9) 소음·진동 항에 있던 저소음포장도로에 관한 사항을 삭제

아. 부칙

- 개정된 심의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적응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전 고시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2133-3544, FAX 2133-1019, E-mail: poem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2 - 121

() 가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653(1986.09.12)호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된 "독산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1번지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목적 : 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 사업의 명칭 : 독산공영차고지 정비동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 공영차고지 면적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독산동 1001	1280.70	1986.09.12.	소유자 서울특별시
변경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독산동 1001	1280.70	-	정비동 1개동 증축(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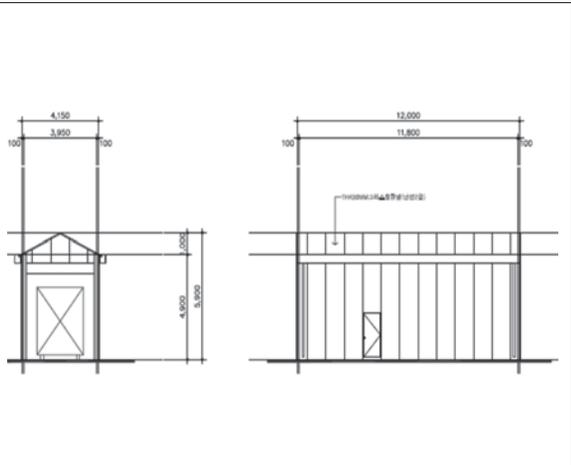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 성명 : 범일운수(주)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38(시흥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일 이후
 - 사업의 준공일 :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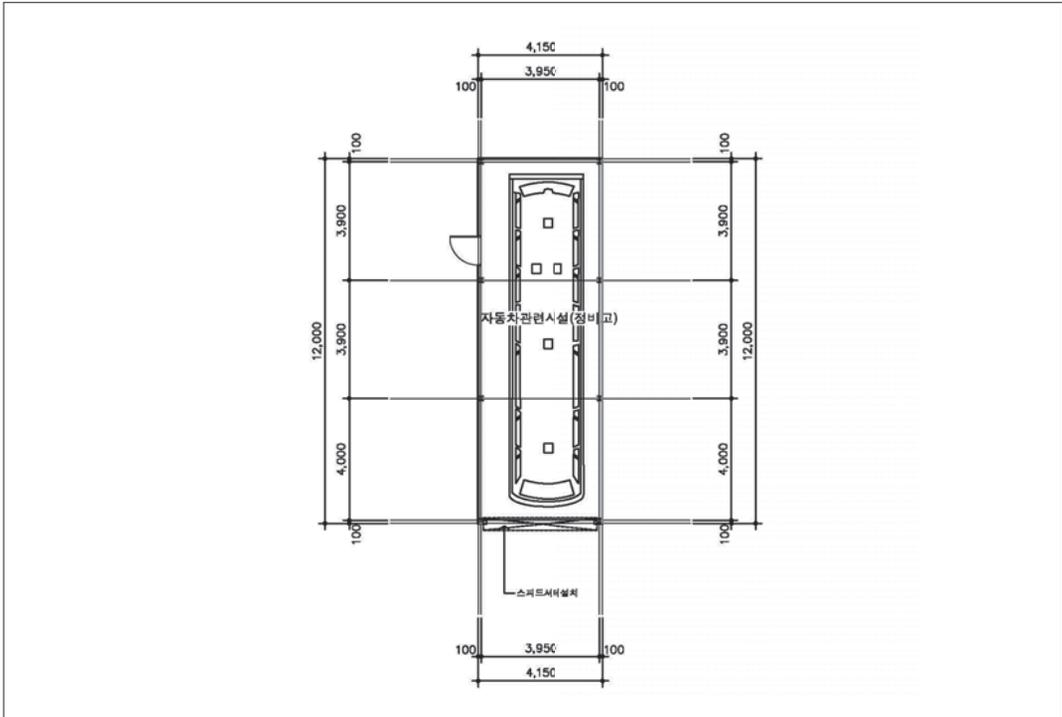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측면도



○ 자동차정비고 평면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 없음

8.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변경 없음

9. 사업의 규모

○ 개요

- 당 초 : 금천구 건축-308(2007.1.9.)호에 의거 사용승인
- 변 경 : 정비동 1개동 49.8㎡ 증축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차 고 지	면 적	1,280.7㎡	1,280.7㎡	
	건 축 물	1동 (연면적 : 69㎡)	1동 (연면적 : 69㎡)	
		부속건축물	-	1동 (연면적 : 49.8㎡)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69㎡	118.80㎡	(증)49.8㎡
	부대시설			
	녹 지			

○ 공영차고지 시설물배치계획(건축물)

구분	용도	당초(㎡)		변경(㎡)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69	69	118.8	118.8	
주 건축물	자동차관련시설 (사무실)	69	69	69	69	
부속건축물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정비고)	-	-	49.8	49.8	

○ 사업규모 변경 사유

- 시설물 증축공사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변경

※ 차고지 용도별 시설물 규모 증감표

(연면적, ㎡)

용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계		69	118.8	49.8	
건축물	계	69	69		
	사무실	69	69		
부속건축물	계		49.8	49.8	
	자동차정비고		49.8	49.8	

10.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11.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02-2133-9751) 및 금천구 교통행정과(☎02-2627-1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 123

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0호(2021.06.24.)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9호(2021.10.14.)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 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6,582.0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라.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1)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1)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31일
- 2)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지구분할(변경없음)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1) 토지이용계획(변경) : [붙임 1]
-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가) 인구 및 주택별 계획(변경없음)
 - 나) 주택규모별 계획(변경)

구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임대		분양		임대		분양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지구	합계	595,267.9	5,910 (3,207)	5,910 (3,207)	5,926	5,926	16,548 (8,980)	16,548 (8,980)	16,592	16,592	
	단독주택	4,247.7	-	-	15	15	-	-	42	42	230~ 330㎡
	공동주택	591,020.2	5,910 (3,207)	5,910 (3,207)	5,911	5911	16,548 (8,980)	16,548 (8,980)	16,550	16,550	
	60㎡이하	307,330.1	4,958 (2,255)	4,945 (2,242)	1,467	1,441	13,882 (6,314)	13,845 (6,277)	4,107	4,035	60㎡이하: 60~85㎡: 85㎡초과 =52%:35% :13%
	60㎡~85㎡	206,857.1	904 (904)	917 (917)	3,180	3,206	2,531 (2,531)	2,569 (2,569)	8,904	8,976	
	85㎡초과	76,833	48 (48)	48 (48)	1,264	1,264	134 (134)	134 (134)	3,539	3,539	

※ ()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항

3) 기반시설계획(변경) : [붙임 2]

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도서 중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내용에 포함

차.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없음

카. 관계 도서의 공람방법

- 1) 시민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 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68)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 2600-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2)

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 본 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됨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 [붙임 2]

과. 기타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포함) 사항은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을 따른다.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1) 마곡 도시개발구역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6,582.0	

라. 시행자 : (변경)

- 1)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마. 시행기간

- 1)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12월 28일 ~ 2022년 12월 31일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지구분할(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 [붙임 2]
- 5)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획지계획은 필지계획으로 대체
 -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3) 상업용지(변경없음)
 - (4) 업무용지(변경없음)
 - (5)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6)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7)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8) 공공청사(변경없음)
 - (9) 학교(변경없음)
 - (10)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11) 주차장(변경없음)
 - (12)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13)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14) 방수설비(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3공구	M1	기정	2,368.0	기정	M1	2,368.0	
			변경	2,496.0	변경	M1	2,496.0	

- (15) 종교시설(변경없음)
- (1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 (17) 편익시설(변경없음)
- (18) 택시차고지(변경없음)
- (19) 보육시설(변경없음)
- (20) 문화시설(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별표 1>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별 규모·가구수·건폐율·용적률·세대수(변경)

구분	도면표시	면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비고
	합계	590,975.9	11,821		-	-	-
기정	AC10-2	23,057.0	소 계	577	300	60	10단지
			60㎡ 이하	577			
			60㎡ 초과 ~85㎡ 이하	-			
			85㎡ 초과	-			
변경	AC10-2	23,057.0	소 계	577	300	60	10-2단지
			60㎡ 이하	538			
			60㎡ 초과 ~85㎡ 이하	39			
			85㎡ 초과	-			

주)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3)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4) 상업용지(변경없음)
- (5) 업무용지(변경없음)
- (6)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7) 도시계획시설 용지(변경없음)
- (8) 기타시설 용지(변경없음)
- (9) 건축심의(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변경없음)
- (10)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준수(변경없음)
-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12) 기타사항(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

- 1) 사업의 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없음)
- 3)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 가) 시행자 : (기정)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변경)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 나)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 4)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 5) 무상귀속 조서(변경없음)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1)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 (☎ 02) 2133-1568)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 2600-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2)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가)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가) 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가) 개발기간 : 2008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31일
 - (나) 개발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5)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계획 >

구분	공시명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기정	한강 접근성 개선 공사	- 마곡 도시개발구역과 한강을 연결하는 나들목 또는 한강연결 보행교 설치	-
변경	한강 접근성 개선 공사	- 마곡 도시개발구역과 한강을 연결하는 육갑문 및 육교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정	양천길-올림픽대로 연결도로 신설	-도로 연장 0.8km, 폭 36m(6차로)	-
변경	양천길-올림픽대로 연결도로 신설	-도로 연장 0.8km, 폭 36m(6차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 (8)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조서 참조

나)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 (1) 사업의 명칭 : 마곡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현동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12월 30일 ~ 2022년 12월 31일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의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2)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의 인가(변경없음)
-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변경없음)
- 4)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변경없음)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변경없음)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없음)

[붙임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3,666,582.0	778,603.8	92,764.0	194,930.6	1,382,130.4	247,525.1	274,004.3	384,291.9	14,984.9	297,347.0	100.0		
소 계	1,794,874.6	513,428.3	-	92,179.0	837,164.5	186,889.8	165,213.0	-	-	-	48.9		
주거용지	계	595,267.9	503,088.9	-	92,179.0	-	-	-	-	-	16.2		
	단독주택용지	4,247.7	4,247.7	-	-	-	-	-	-	-	0.1		
	공동주택용지	591,020.2	498,841.2	-	92,179.0	-	-	-	-	-	16.1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06.3	10,339.4	-	-	72,466.9	-	-	-	-	2.3		
업무용지	업 무 용 지	305,302.1	-	-	-	183,528.7	121,773.4	-	-	-	8.3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006.0	-	-	-	539,202.3	54,946.7	134,857.0	-	-	19.9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2,492.3	-	-	-	41,966.6	10,169.7	30,356.0	-	-	2.2		
소 계	1,815,248.8	260,666.0	82,900.8	90,765.6	539,366.1	60,635.3	85,092.3	384,291.9	14,183.8	297,347.0	49.5		
도시 기반시설 용지	도 로	기정	650,282.3 (8,851.0)	75,183.5	23,219.4	59,953.6	367,091.0	17,934.5	77,282.3	-	-	29,618.0 (8,851.0)	17.7
		변경	650,154.3 (8,851.0)	75,183.5	23,219.4	59,825.6	367,091.0	17,934.5	77,282.3	-	-	29,618.0 (8,851.0)	17.7
	보행자도로	1,627.3 (647.0)	652.7	-	-	554.6	-	420	-	-	-	(647.0)	0.0
	철 도 용 지	16,733.0	-	-	-	-	7,333.0	-	-	-	9,400.0	0.4	
	의 료 시 설	33,363.8	-	-	-	33,363.8	-	-	-	-	-	0.9	
	공 공 청 사	47,092.8	21,669.0	23,948.8	1,475.0	-	-	-	-	-	-	1.3	
	학 교	110,009.4	47,749.8	16,752.0	24,311.0	21,196.6	-	-	-	-	-	3.0	
	보 육 시 설	991.6	-	-	-	991.6	-	-	-	-	-	0.0	
	사 회 복 지 시 설	1,700.0	-	1,700.0	-	-	-	-	-	-	-	0.0	
	문 화 시 설	11,823.5	-	-	-	-	-	-	-	11,823.5	-	0.3	
	광 장	12,985.4	-	-	-	12,985.4	-	-	-	-	-	0.4	
	근 린 공 원	547,226.1 (35,884.0)	24,594.6	17,280.6	-	-	-	-	384,291.9	-	121,059.0 (35,884.0)	14.9	
	어 린 이 공 원 / 소 공 원	16,615.1	13,957.1	-	2,658.0	-	-	-	-	-	-	0.5	
	문 화 공 원	20,379.3	-	-	-	12,082.5	8,296.8	-	-	-	-	0.6	
가 로 공 원	2,618.5	-	-	-	2,618.5	-	-	-	-	-	0.1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경 관 녹 지	2,825.3	1,579.5	-	-	559.1	-	369.0	-	317.7	-	0.1		
연 결 녹 지	171,633.8 (898.0)	69,768.4	-	-	67,773.4 (898.0)	27,071.0	7,021.0	-	-	-	4.7		
주 차 장	25,661.0 (8,114.0)	5,511.4	-	-	20,149.6	-	-	-	-	- (8,114.0)	0.7		
열공급설비	24,140.0	-	-	-	-	-	-	-	-	24,140.0	0.7		
전기공급설비	2,042.6	-	-	-	-	-	-	-	2,042.6	-	0.1		
방 수 설 비	기정	8,615.0 (7,885.0)	-	-	2,368.0	-	-	-	-	6,247.0 (7,885.0)	0.2		
	변경	8,743.0 (7,885.0)	-	-	2,496.0	-	-	-	-	6,247.0 (7,885.0)	0.2		
유 수 지	106,883.0									-	106,883.0	2.9	
저 류 지	(50,000.0)	-	-	-	-	-	-	-	-	-	(50,000.0)	0.0	
소 계	56,458.6	4,509.5	9,863.2	11,986	5,599.8	-	23,699.0		801.1	-	1.6		
기타시설 용지	주 유 소	3,202.2	-	799.8	-	1,601.3	-	-	-	801.1	-	0.1	
	가스충전소	3,998.5	-	-	-	3,998.5	-	-	-	-	-	0.1	
	종 교 시 설	2,994.4	2,994.4	-	-	-	-	-	-	-	-	0.1	
	편 익 시 설	36,258.5	1,515.1	9,063.4	11,986	-	-	13,694.0	-	-	-	1.0	
	택시차고지	10,005.0	-	-	-	-	-	10,005.0	-	-	-	0.3	

※ 근린공원1 중복결정 : 저류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공동구), 종로2-37[()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임]
 ※ 유수지 중복결정 : 종로2-38, 소로3-4, 근린공원4, 방수설비2[면적:7,885㎡][()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을 포함]
 ※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 : 산업시설용지(산DP3)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598㎡), 산업시설용지(산D22-25)내 일부구간 상부(면적 : 300㎡) [() 면적 : 지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 근린공원 점용 : 가스정압기(근린공원2), 변전소(근린공원3)
 ※ 토지이용계획 내 지하도로 면적(16,234.2㎡) 별도 미명기

[붙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류별	폭원 (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노 선 수	면적 (㎡)	
총계	-	116 (6)	32,202,661,407.6 (3)	27 (3)	4,225,75,836.2 (1)	726	23,219.4	5	2,096,59,953.6 (3)	69 (3)	20,354,367,645.6	3	698	17,934.5	11 (1)	2,435,77,702.3	-	-	-	-	-	-	-	-	4 (1)	1,668,39,116.0
계	-	3 (1)	1,850,99,042.7	1	398.3	-	-	1	618,32,029.7	-	-	-	-	-	1 (1)	1,232,66,614.7	-	-	-	-	-	-	-	-	-	-
3류	45~ 50	3 (1)	1,850,99,042.7	1	398.3	-	-	1	618,32,029.7	-	-	-	-	-	1 (1)	1,232,66,614.7	-	-	-	-	-	-	-	-	-	-
계	-	6 (2)	5,062,169,838.5	-	-	703	23,063.3	-	-	5 (2)	3,175,107,120.5	1	260	10,036.7	-	-	-	-	-	-	-	-	-	1 (1)	914,29,618.0	
1류	36	1	1,427,54,979.7	-	-	-	-	-	-	1	1,427,54,979.7	-	-	-	-	-	-	-	-	-	-	-	-	-	-	
2류	30~ 53	3 (2)	1,877,64,929.0	-	-	703	23,063.3	-	-	2 (2)	-	2,211.0	1	260	10,036.7	-	-	-	-	-	-	-	-	1 (1)	914,29,618.0	
3류	25~ 31	2	1,748,49,929.8	-	-	-	-	-	-	2	1,748,49,929.8	-	-	-	-	-	-	-	-	-	-	-	-	-	-	
계	-	84 (3)	23,032,373,923.9	16 (3)	3,466,68,460.1	-	-	4	1,478,27,923.9 (3)	61 (3)	16,625,257,331.8	2	438	7,897.8	2	385,3,459.3	-	-	-	-	-	-	-	2	640,8,851.0	
1류	20~ 23	13 (3)	6,092,130,418.9	6 (3)	1,881,42,264.3	-	-	-	1	661,15,444.7 (3)	3,307,67,782.7	1	243	4,927.2	-	-	-	-	-	-	-	-	-	-	-	
2류	15~ 18	29	7,408,125,188.0	8	1,504,25,162.6	-	-	1	314,6,513.4	17	4,679,83,217.4	-	-	-	1	271,1,443.6	-	-	-	-	-	-	2	640,8,851.0		
3류	12~ 14	42	9,532,118,317.0	2	81,1,033.2	-	-	2	503,5,965.8	36	8,639,106,331.7	1	195	2,970.6	1	114,2,015.7	-	-	-	-	-	-	-	-	-	
소계	-	17	1,918,16,328.2	7	604,6,325.1	1	23,156.1	-	-	2	508,2,638.7	-	-	-	7	783,7,208.3	-	-	-	-	-	-	-	-	-	

일 반 노 선

(나)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폭원 (m)	합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노선 (m)	면적 (㎡)	연장 (m)	노선 수	면적 (㎡)	연장 (m)	노선 수	면적 (㎡)	연장 (m)	노선 수	면적 (㎡)	연장 (m)	노선 수	
총계	-	116 (6)	32,202,661,279.6 (3)	21 (3)	4,223 75,836.2	2 (1)	726 23,219.4	69 (3)	20,354 367,645.6	3	698 17,934.5	11 (1)	2,435 77,702.3	4 (1)	1,668 39,116.0
광역	-	3	1,850 99,042.7	1	398.3	-	-	-	-	-	-	-	-	-	-
3류	45~ 50	3 (1)	1,850 99,042.7	1	398.3	-	-	1 618 32,029.7	-	-	-	1 1,232 86,614.7	-	-	-
계	-	6	5,052 169,838.5	-	-	1 (1)	703 23,063.3	5 (2)	3,175 107,120.5	1	260 10,036.7	1 (1)	-	1 (1)	914 29,618.0
1류	36	1	1,427 54,979.7	-	-	-	-	1 1,427 54,979.7	-	-	-	-	-	-	-
2류	30~ 53	3 (2)	1,877 64,929.0	-	-	1 (1)	703 23,063.3	2 (2)	2,211.0	1	260 10,036.7	1 (1)	-	1 (1)	914 29,618.0
3류	25~ 31	2	1,748 49,929.8	-	-	-	-	2 1,748 49,929.8	-	-	-	-	-	-	-
계	-	84 (3)	23,032 373,795.9	16 (3)	3,466 88,460.1	-	-	61 (3)	16,625 257,331.8	2	438 7,897.8	2 385 3,459.3	-	2	640 8,851.0
1류	20~ 23	13 (3)	6,082 130,290.9	6 (3)	1,881 42,264.3	-	-	8 (3)	3,307 67,782.7	1	243 4,927.2	-	-	-	-
2류	15~ 18	29	7,408 125,188.0	8	1,504 25,162.6	-	-	17 4,679 83,217.4	-	-	-	1 271 1,443.6	-	2	640 8,851.0
3류	12~ 14	42	9,532 118,317.0	2	81 1,033.2	-	-	36 8,639 106,331.7	1	195 2,970.6	1 114 2,015.7	-	-	-	-
계	-	17	1,918 16,328.2	7	604 6,325.1	1 (1)	23 156.1	2 508 2,638.7	-	-	-	7 783 7,208.3	-	-	-
소 1류	10	6	777 8,469.10	4	428 4,809.1	-	-	-	-	-	-	2 349 3,660.0	-	-	-
소 2류	8~10	7	966 6,749.0	3	176 1,516.0	-	-	1 414 1,978.3	-	-	-	3 376 3,254.7	-	-	-
소 3류	4~6.5	4	175 1,110.1	-	-	1 (1)	23 156.1	1 94 660.4	-	-	-	2 58 293.6	-	-	-
계	-	2	81 974.6	-	-	-	-	1 46 554.6	-	-	-	1 35 420	-	-	-
3류	12	2	81 974.6	-	-	-	-	1 46 554.6	-	-	-	1 35 420	-	-	-
계	-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1	114 647.0
소 3류	1.5~5	4	269 1,299.7	3	155 652.7	-	-	-	-	-	-	-	-	1	114 647.0

※ () : 지구간 중복 노선수
 ※ 중복경계면 도로 포함 : 일반도로 중로2-37, 중로2-38, 보행자도로 소로3-4 (3지구 2공구)

(다)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도로(지하도로)

(가) 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규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폭원 (m)	기능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2	12	특수 도로	12	마곡동 727-689	마곡동 727-689	지하공공 보도시설	144	-	-	-	-	144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중3-18과 중복결정
변경	2	12	특수 도로	12	마곡동 727-689	마곡동 727-689	지하공공 보도시설	144	-	-	-	-	-	144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중3-18과 중복결정
기정	3	12	특수 도로	20	마곡동 727-771	마곡동 727-771	지하공공 보도시설	240	-	-	-	-	240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중1-13과 중복결정
변경	3	12	특수 도로	20	마곡동 727-771	마곡동 727-771	지하공공 보도시설	240	-	-	-	-	240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중1-13과 중복결정
신설	4	11.8	특수 도로	19.1	마곡동 727-717	마곡동 727-754	지하공공 보도시설	225.2	-	-	-	-	-	225.2	-	-	-	-	철도3, 연북21과 중복결정

(나) 도로(지하도로)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도로 (지하도로)	•공구 변경 2지구 2공구 → 2지구 3공구	•2공구의 사업(부분)준공이 도래되었으나, 본 시설물의 미설치로 미준공 공구로 변경
3	도로 (지하도로)	•공구 변경 2지구 2공구 → 2지구 3공구	•2공구의 사업(부분)준공이 도래되었으나, 본 시설물의 미설치로 미준공 공구로 변경
4	도로 (지하도로)	•도로(지하도로) 신설 - L : 19.1m, B : 11.8m, A : 225.2㎡	•CP4-1과 5호선 마곡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신규 설치

(3) 주차장(변경없음)

(4) 철도

(가) 철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최초 결정일	비고
					연장 (m)	면적 (㎡)	1공구		1공구		1공구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3	철도	마곡정거장 (마곡역)	마곡동 727-717 일대	-	9,986	-	-	-	9,986	-	-	건고 제92-148	
변경	3	철도	마곡정거장 (마곡역)	마곡동 727-717 일대	-	9,986	-	-	-	9,986	-	-	건고 제92-148	지하도로4 (43.4㎡) 중복결정

(나) 철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3	마곡정거장 (마곡역)	•도로(지하도로4)와 중복결정 - A : 43.4㎡	•CP4-1과 5호선 마곡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신규 설치

(다) 철도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 (1) 광장(변경없음)
- (2) 공원(변경없음)
- (3) 녹지

(가)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기정	21	연결녹지	마곡동 769-2	3,771.9	-	-	-	-	3,771.9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변경	21	연결녹지	마곡동 769-2	3,771.9	-	-	-	-	3,771.9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지하도로4 (181.8㎡) 중복결정

(나)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녹 지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21	연결녹지	•도로(지하도로4)와 중복결정 - A : 181.8㎡	•CP4-1과 5호선 마곡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신규 설치

(다)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1) 방수설비

(가) 방수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1	방수설비	마곡동 730-222일원	2,368	-	-	2,368	-	-	-	-	-	-	서고제1993-186호 (1993.6.18)	
변경	1	방수설비	마곡동 730-222일원	2,496	-	-	2,496	-	-	-	-	-	-	서고제1993-186호 (1993.6.18)	

(나) 방수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방수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변경 A = 2,368㎡ → 2,496㎡(증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측량결과 방수설비1의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 유수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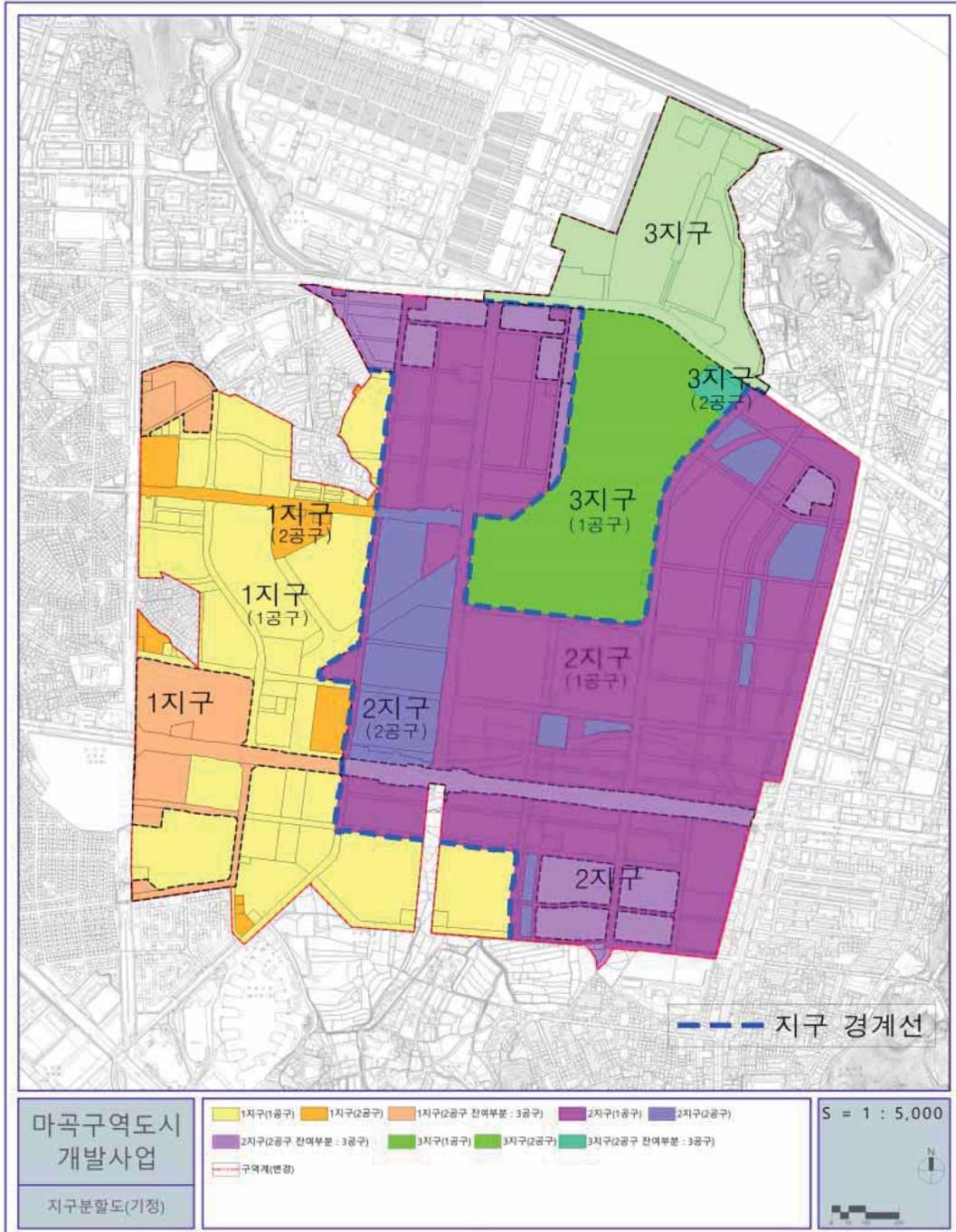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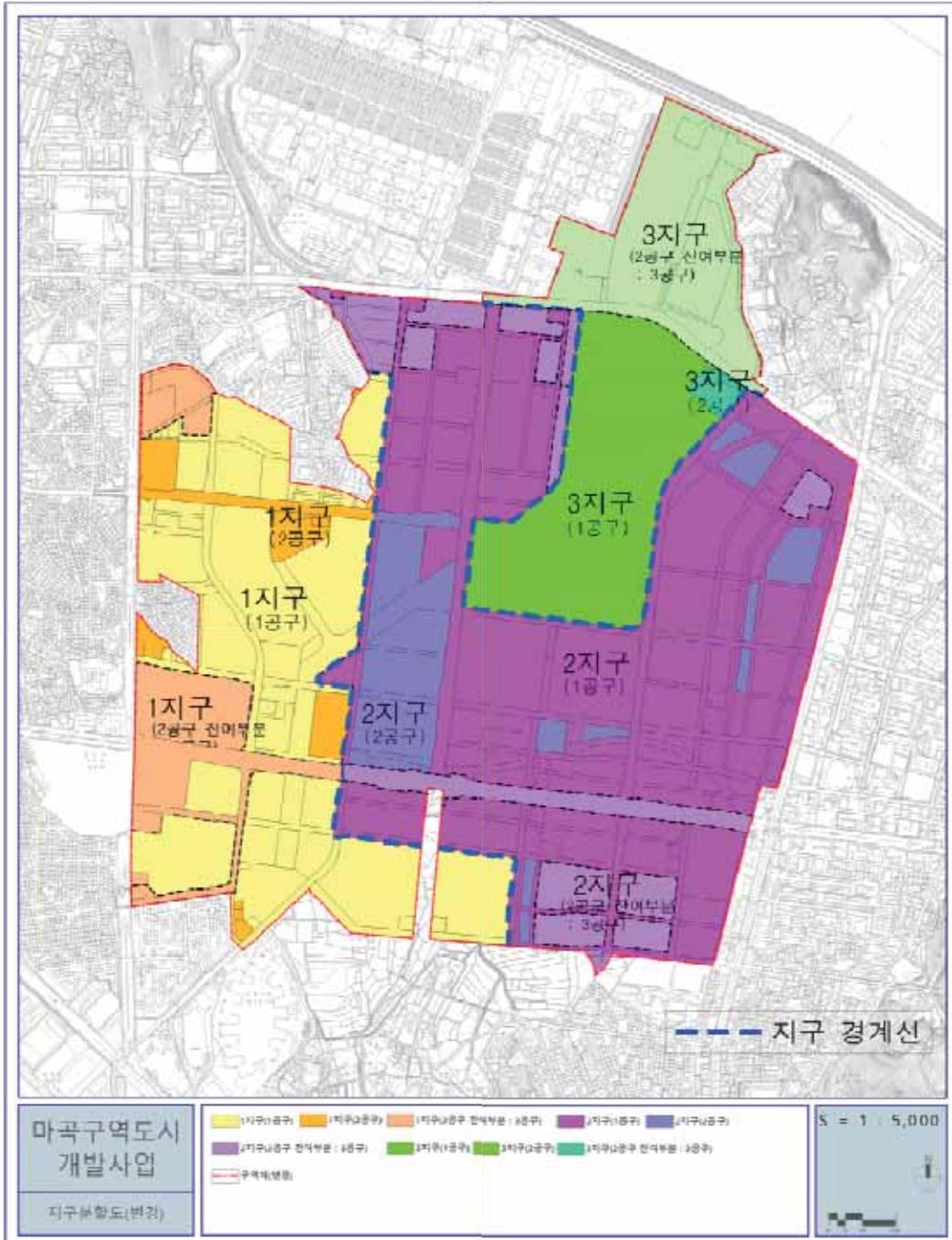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간선하수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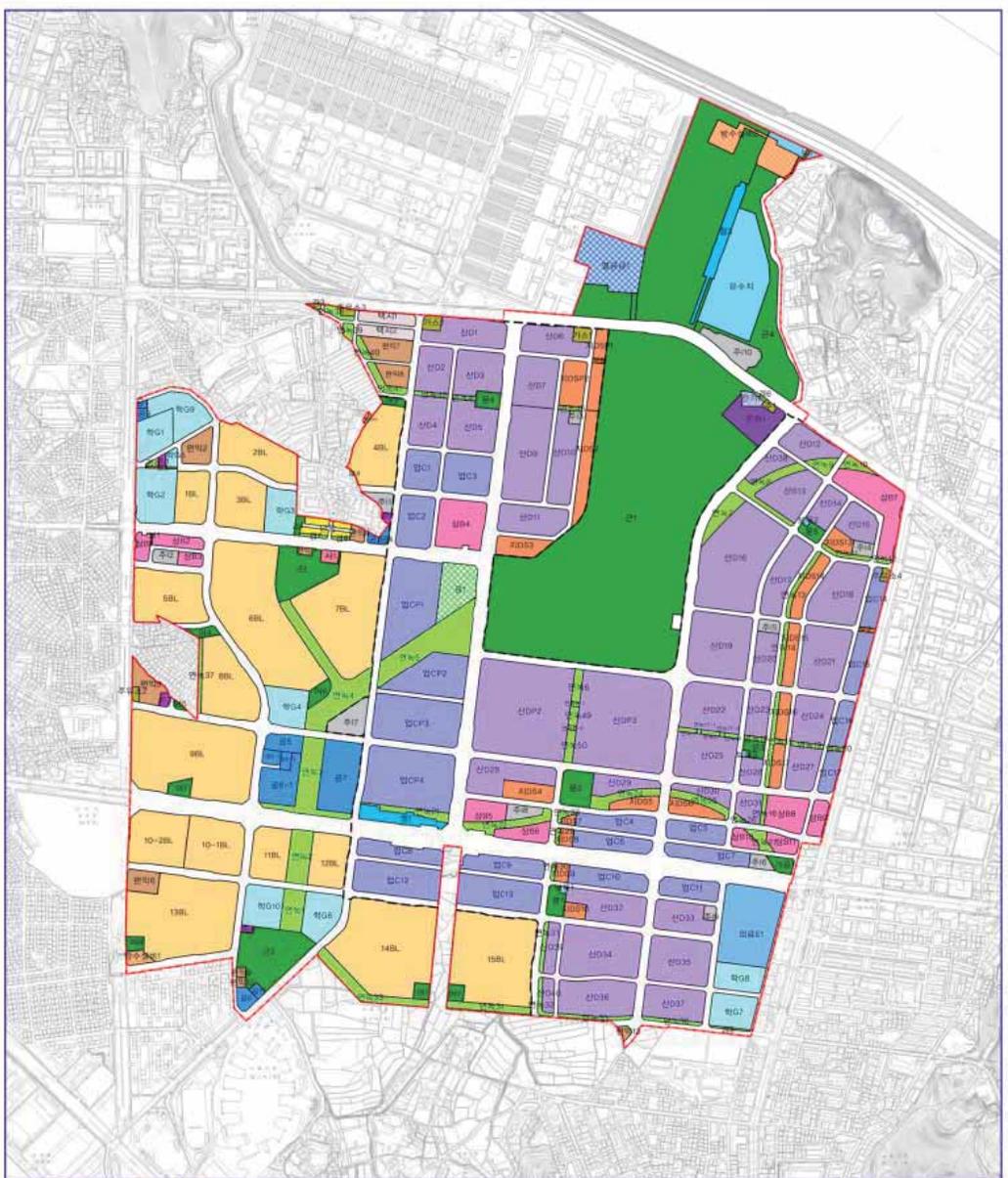
□ 지구분할도(기정)



□ 지구분할도(변경)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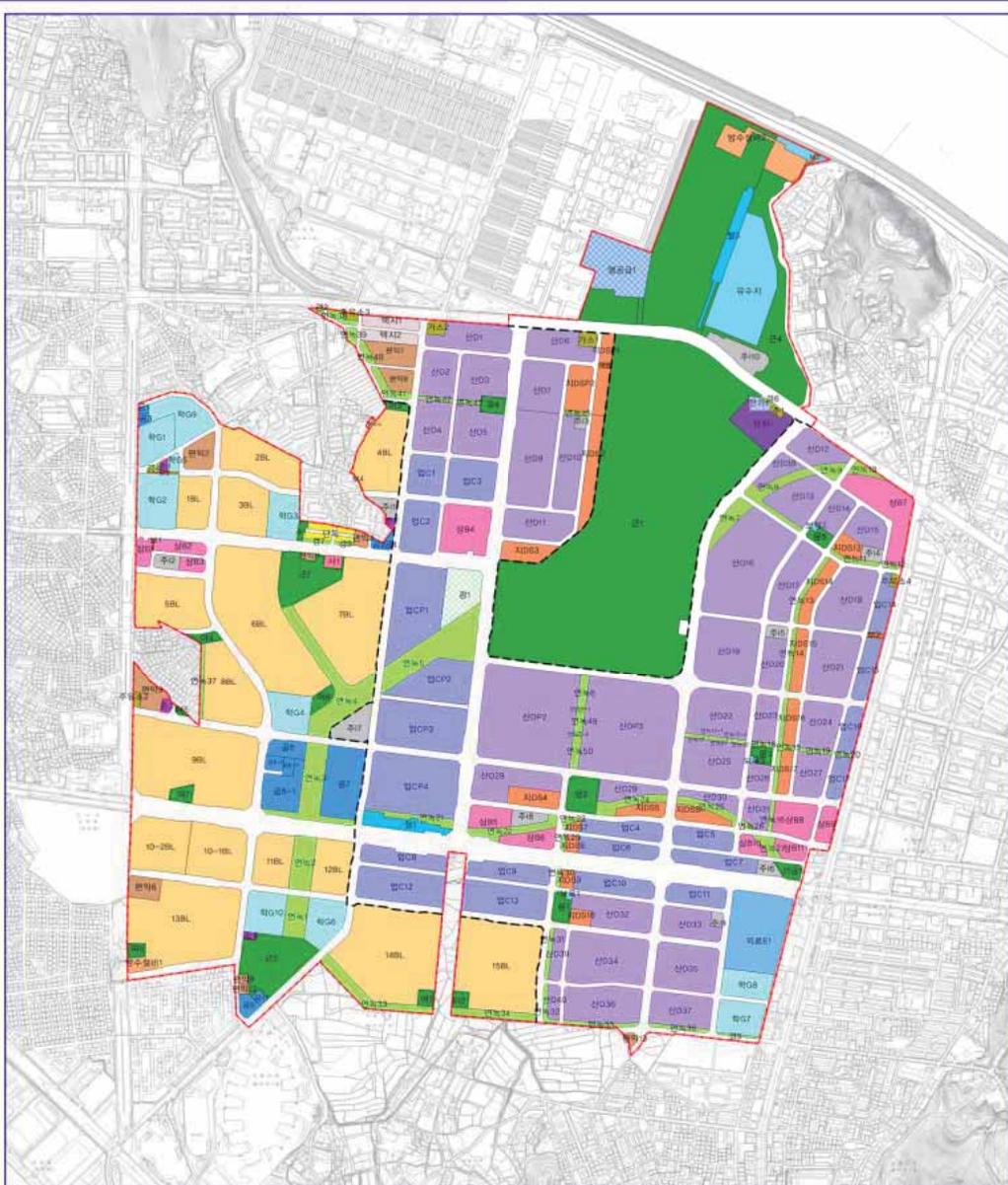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기정)도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공원	학교	전기공급선비	준보호시설
상업용지	공공청사	녹지	양수설비	주유소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지	문화의료시설	열공급설비	산림시설용지	보행자전용도로	전도용지
편익시설	주차장	지점시설	택시차고지	광장	가스중전소
공동구	상용시설	지구분할선			

S = 1 : 5,000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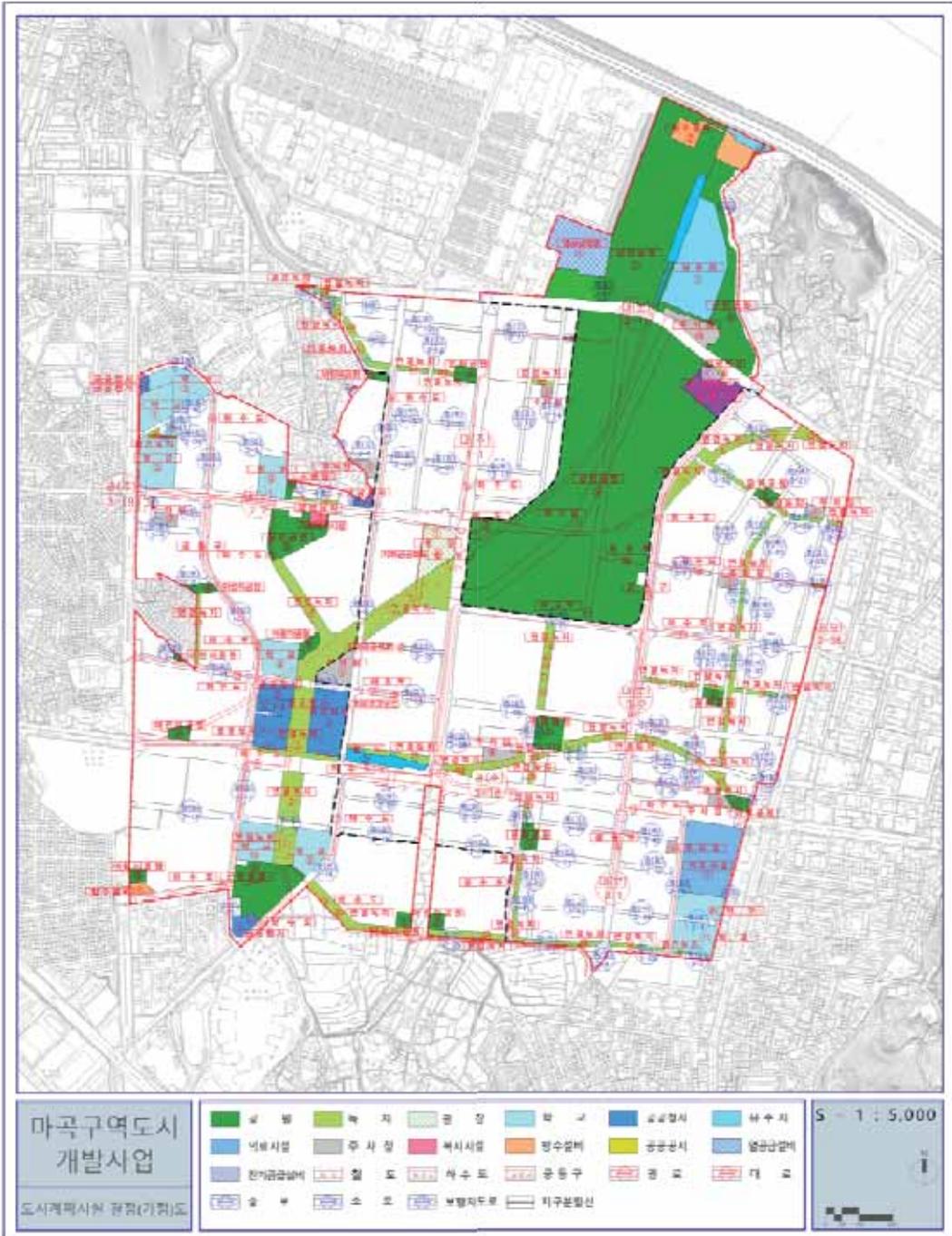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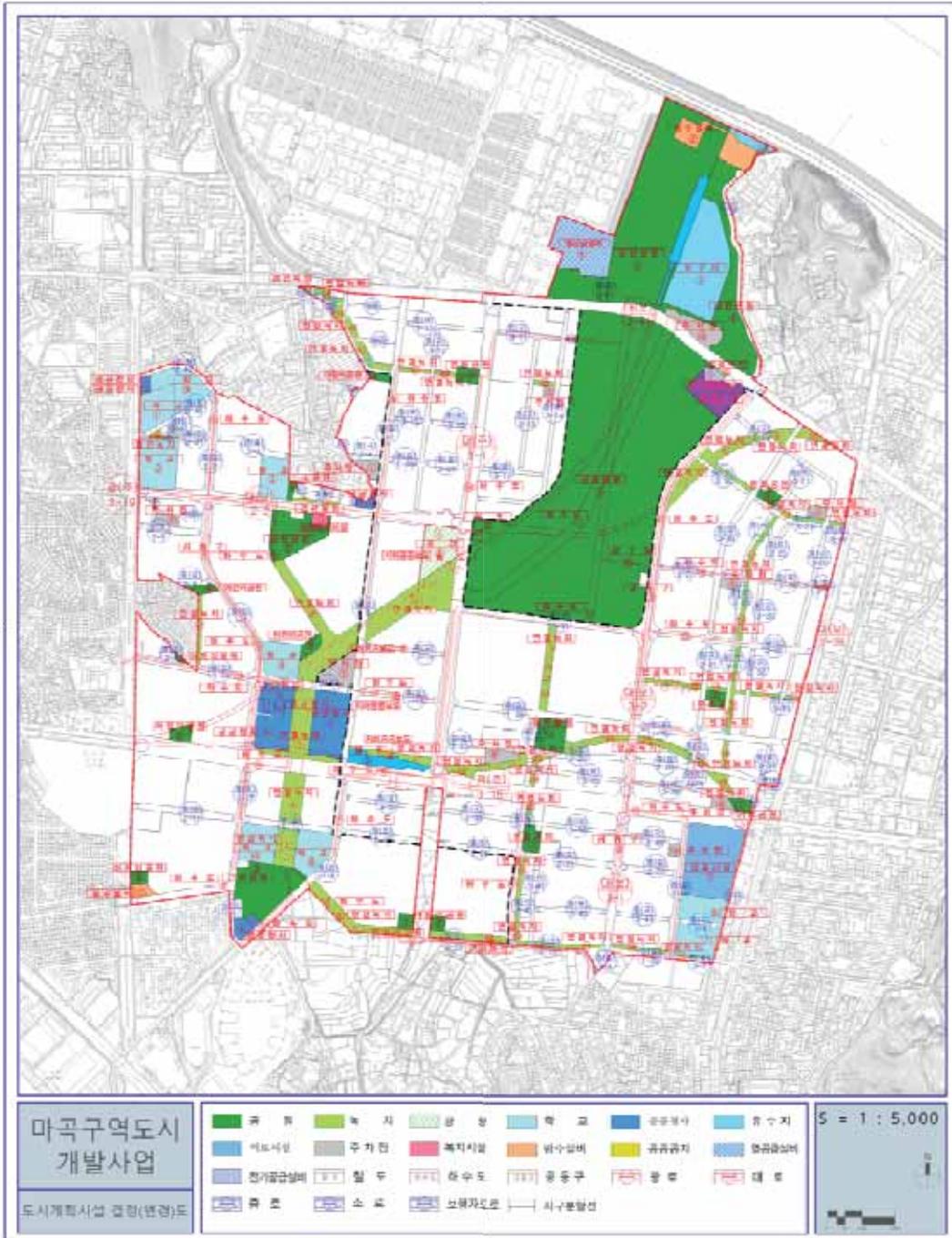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공 원	학 교	편기공갈일비	종교시설
상업용지	공공청사	복 지	병수설비	주유소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지	공할의료시설	열공급설비	산업시설용지	보행자편용도로	전도용지
편익시설	주 목 장	지원시설	역시착고지	광 장	가스출입소
광동구	편용시설	지구분할선			

S = 1 :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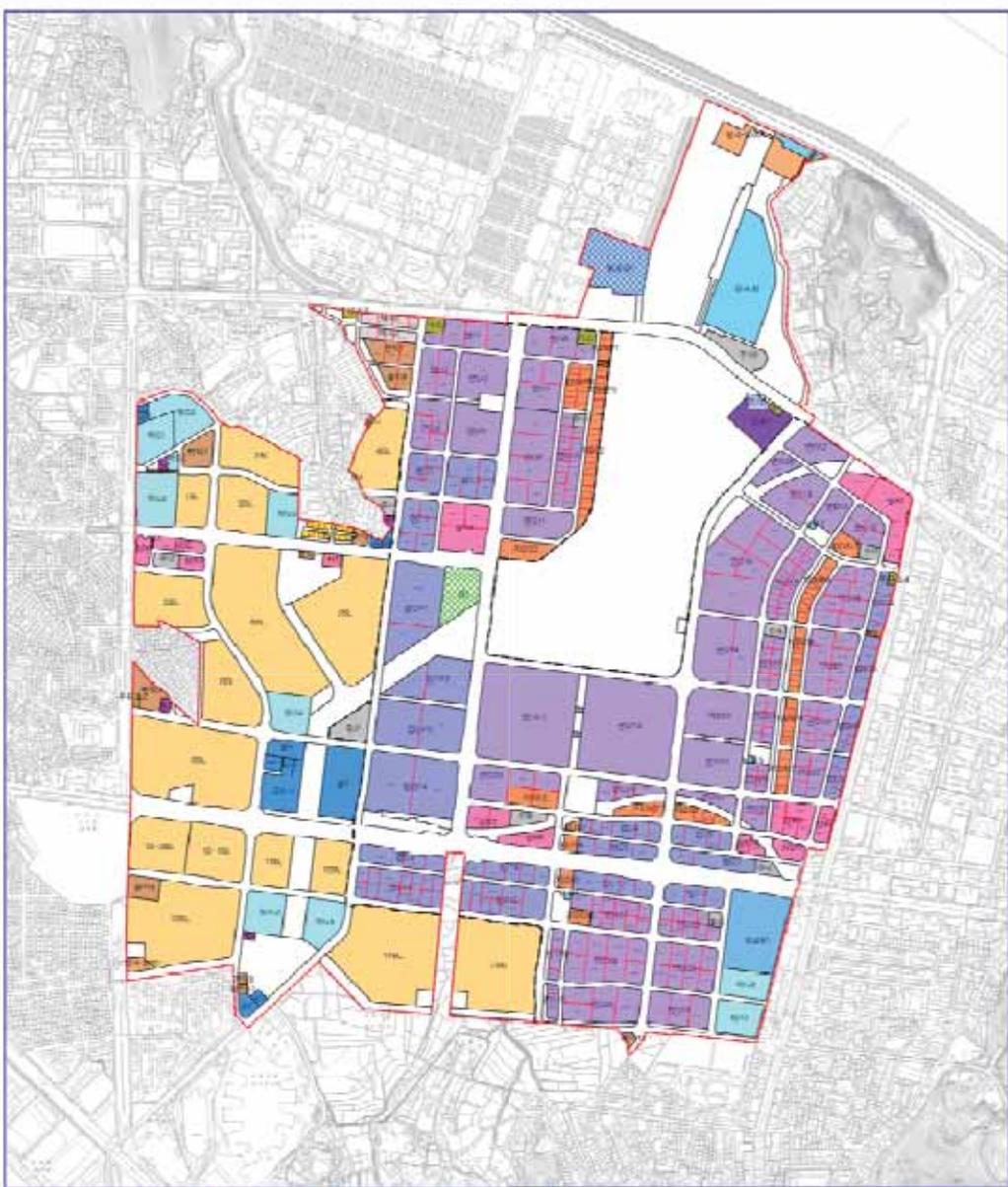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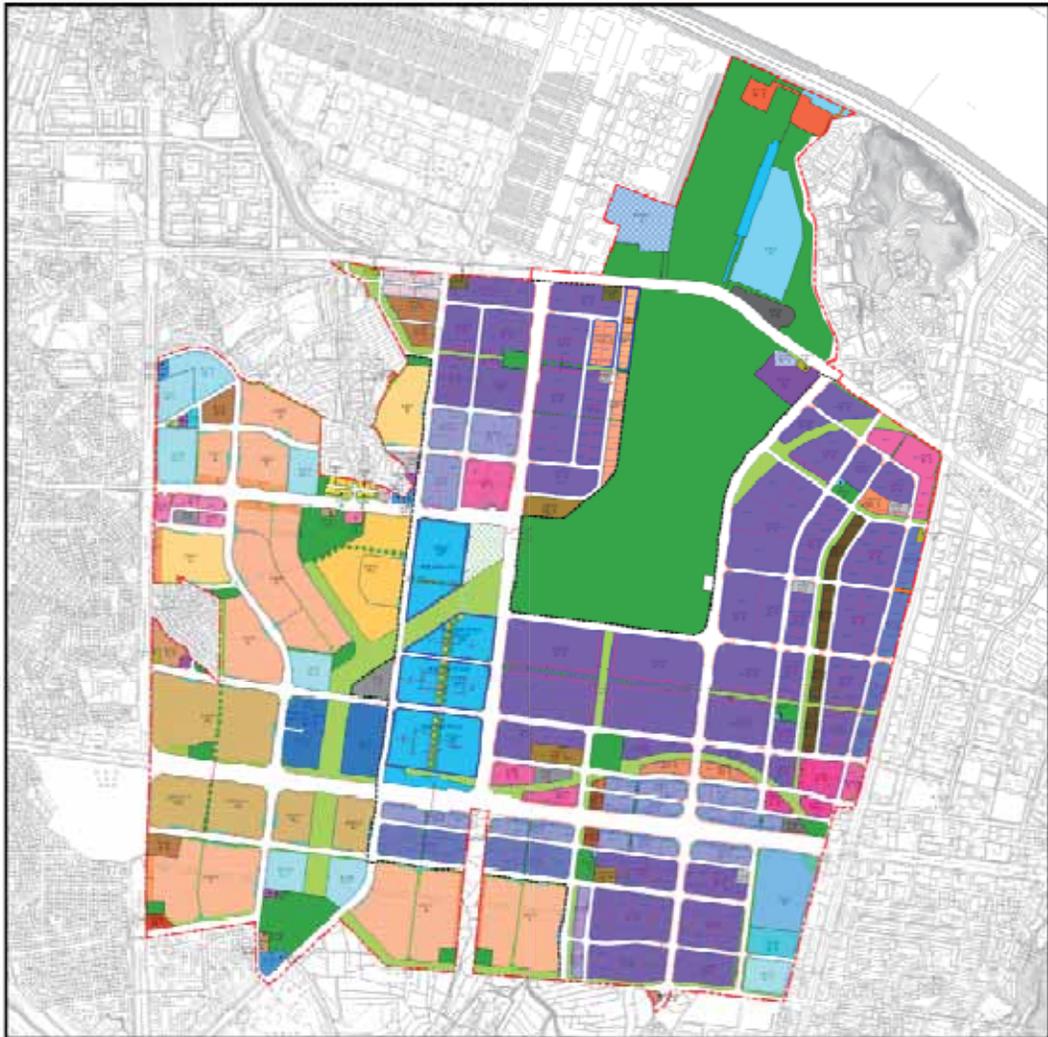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기정)도

1차도	2차도	3차도	4차도
5차도	6차도	7차도	8차도
9차도	10차도	11차도	12차도
13차도	14차도	15차도	16차도
17차도	18차도	19차도	20차도
21차도	22차도	23차도	24차도
25차도	26차도	27차도	28차도
29차도	30차도	31차도	32차도
33차도	34차도	35차도	36차도
37차도	38차도	39차도	40차도
41차도	42차도	43차도	44차도
45차도	46차도	47차도	48차도
49차도	50차도	51차도	52차도
53차도	54차도	55차도	56차도
57차도	58차도	59차도	60차도
61차도	62차도	63차도	64차도
65차도	66차도	67차도	68차도
69차도	70차도	71차도	72차도
73차도	74차도	75차도	76차도
77차도	78차도	79차도	80차도
81차도	82차도	83차도	84차도
85차도	86차도	87차도	88차도
89차도	90차도	91차도	92차도
93차도	94차도	95차도	96차도
97차도	98차도	99차도	100차도

S = 1 : 5,000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기정)



Legend

도시계획구역	건축물대장번호	건축물대장번호
행정동구역	건축물대장번호	건축물대장번호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기정)

Scale 1 : 5,000

2022 - 125

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호(2010.2.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6호(2016.9.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예장동 2-1 일대 남산2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남산창작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시설물 외, 내부 변경사항과 『공원시설 현황 반영』 등으로 공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2. 위 치 : 남산2근린공원(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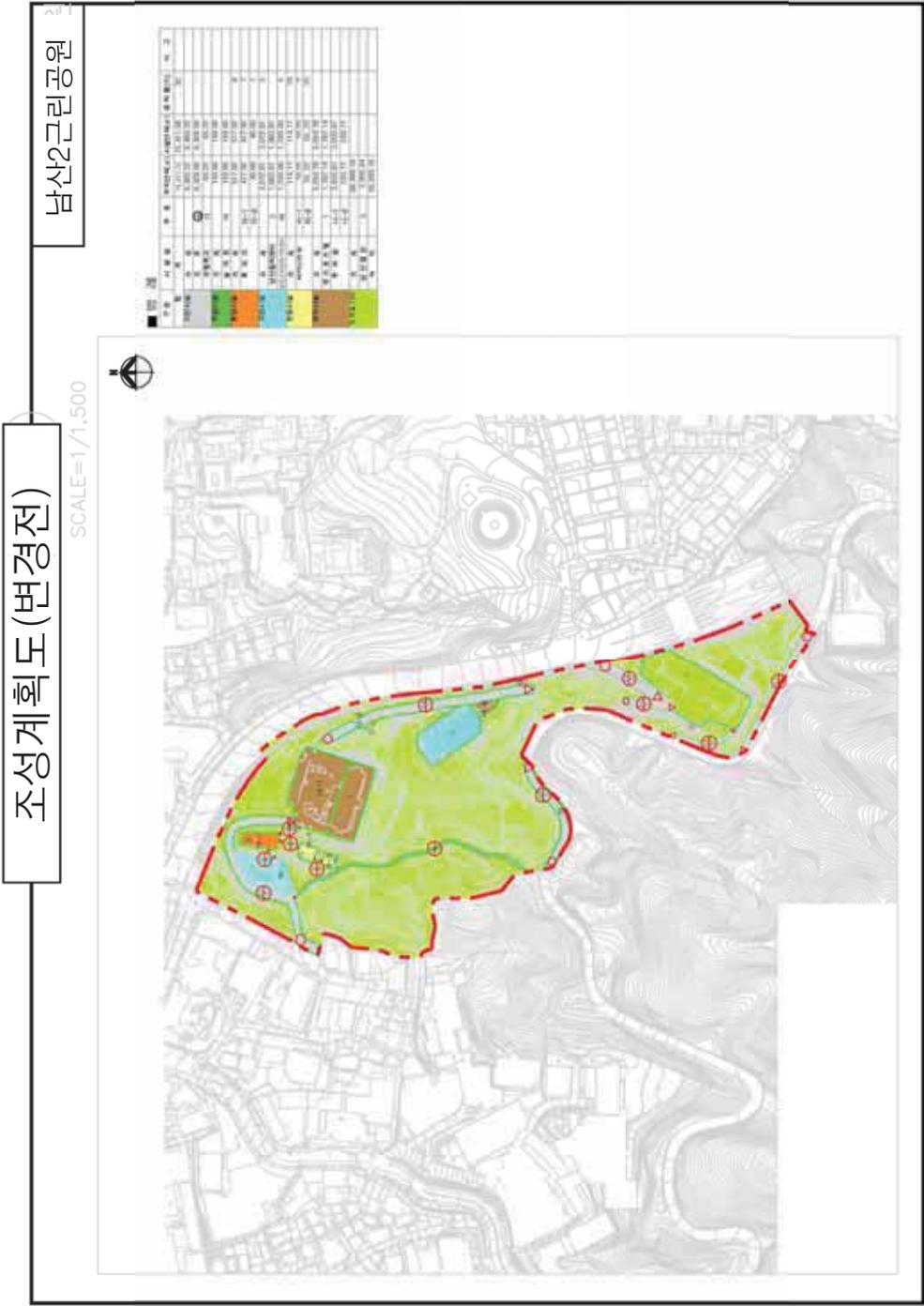
3. 면 적 : 7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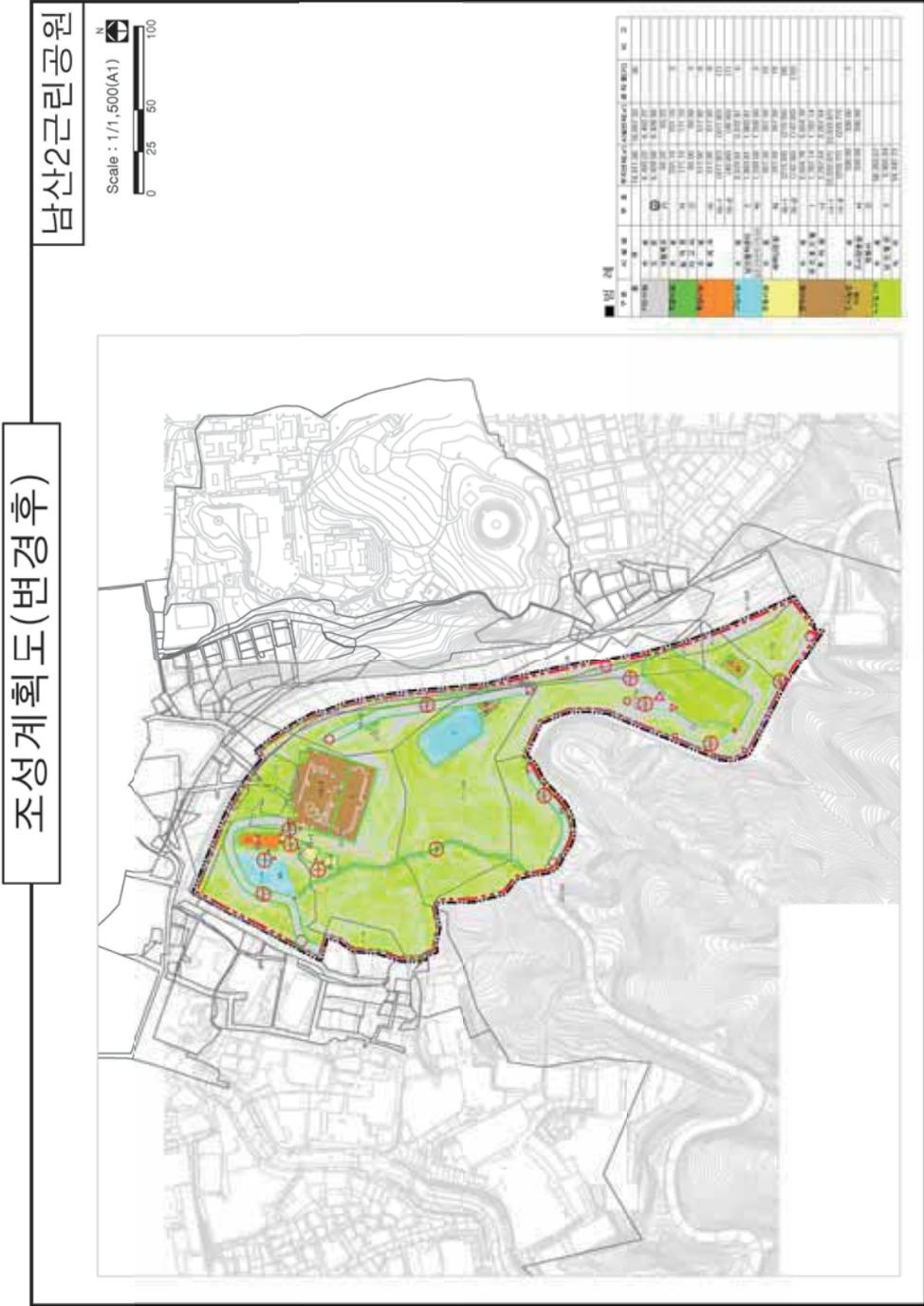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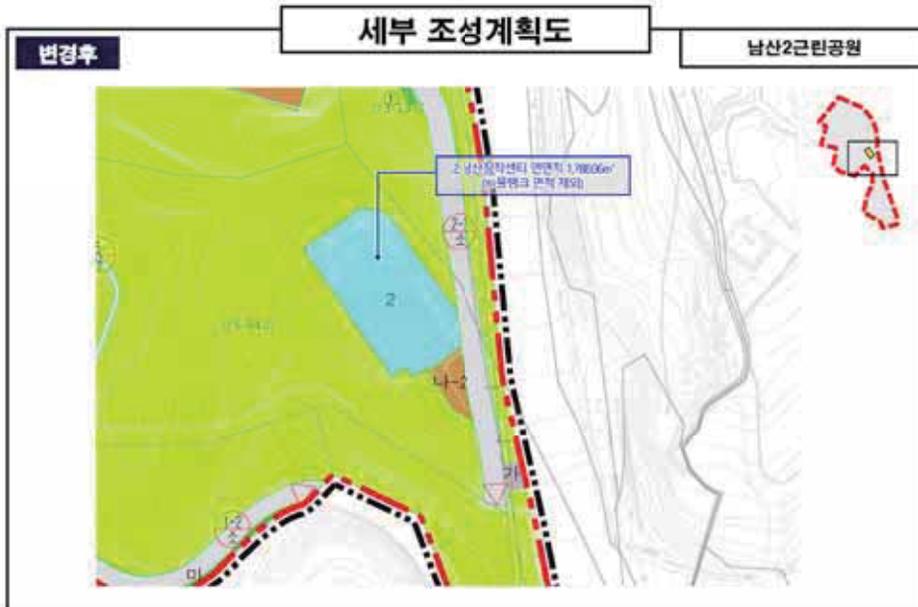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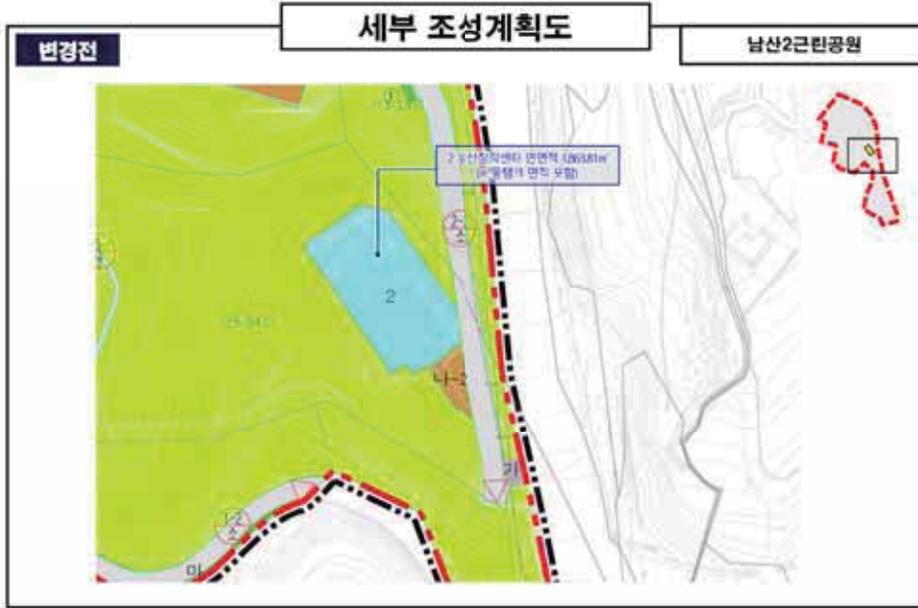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8)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2)





조성계획도(변경후)



2 ()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변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경			공작물 (기)	후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4,411.00	15,411.90	2	2,270.82	11,160.87	32	74,411.00	16,057.33	2	2,166.73	10,982.73	36	증) 645.43㎡ (시설면적)				
기	6,493.22	6,493.22					6,493.22	6,493.22									
반	6,428.00	6,428.00					6,428.00	6,428.00									
시	65.22	65.22					65.22	65.22									
설	159.00	159.00					231.10	231.10				3	증) 72.10㎡ (부지, 시설면적)				
조경 시설																	
유역 시설																	
휴양 시설	517.92	517.92				8	517.92	517.92				8					
교양 시설	3,072.81	3,072.81	1	1,356.20	1,966.20	5	3,072.81	3,072.81	1	1,252.11	1,788.06	5	건축물 바닥면적 감) 104.09㎡ 건축물 연면적 감) 178.14㎡				
운동 시설	114.17	114.17				19	357.50	357.50				19	증) 243.33㎡ (부지, 시설면적)				
편익 시설	5,054.78	5,054.78	1	914.62	9,194.67		5,054.78	5,054.78	1	914.62	9,194.67						
도시농업시설							330.00	330.00				1	증) 330.00 (부지, 시설면적)				
녹지 및 기타	58,999.10		(1)	(1,197.88)	(7,322.40)	(15)	58,953.67		(1)	(1,197.88)	(7,322.40)	(15)	감) 645.43㎡ (부지면적)				
시설률 (반정 40%)	(15,411.90 / 74,411.00) × 100 = 20.71%																
건폐율 (반정 15%)	(2,270.82 / 74,411.00) × 100 = 3.05%																
	(16,057.33 / 74,411.00) × 100 = 21.58%																
	(2,166.73 / 74,411.00) × 100 = 2.9%																
	증) 0.87%																
	감) 0.15%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변 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74,411.00	15,411.90		2	2,270.82	11,160.87	92					2	2,270.82	11,160.87	96	정) 645.43㎡ 오류보정
	소 계			6,493.22	6,493.22														
	도로			6,428.00	6,428.00														
기 반 시 설		가		65.22	65.22														부호변경 (가-1 → 가)
	보행육교																		
		가-1	중구 예장동 신5-09	65.22	65.22														
조 경 시 설		소 계		159.00	159.00													3	정) 72.10㎡ 오류보정
	삼개천	마		159.00	159.00														정) 12.10㎡ 오류보정
	파고라									①	60.00	60.00					(3)	중) 60.00㎡ 평행반영	
휴 양 시 설		소 계		517.92	517.92					8								8	
		다		517.92	517.92														
	휴게소																		(7)
		다-1	중구 예장동 2-1	(477.92)	(477.92)														

구분	시열명	변 경							변 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열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열면적 (㎡)		구조	규모	비대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다-2	중구 예장동 신3-13	(40.00)	(40.00)					(1)	다-2	중구 예장동 신3-13	(40.00)	(40.00)							(1)		
	소 계			3,072.81	3,072.81					5											5		
교양 시설	남산향작 센터	2	중구 예장동 신5-87	1,863.81	1,863.81	철근 콘크리트 조	1	1,356.20	1,966.20	(5)	2	중구 예장동 신5-87	1,863.81	1,863.81	철근 콘크리트조	1	1,252.11	1,788.06					건축물 비대면적 감 104.09㎡ 건축물 연면적 감 178.14㎡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바	중구 예장동 2-1	1,209.00	1,209.00					(5)	바	중구 예장동 2-1	1,209.00	1,209.00							(5)		
	소 계			114.17	114.17					19											19		중 243.33㎡ 오류보정
복합 시설	체력 단련장	라	중구 예장동 신4-5	114.17	114.17						라	중구 예장동 신4-5	114.17	114.17									중 243.33㎡ 오류보정
	체력 단련장	라-1	중구 예장동 신4-5	(58.95)	(58.95)					(9)	라-1	중구 예장동 신4-5	(58.95)	(215.50)							(9)		중 156.55㎡ 오류보정
	소 계			5,054.78	5,054.78		1	914.62	9,194.67	(10)		중구 예장동 신4-5	(55.22)	(142.00)							(10)		중 86.78㎡ 오류보정
편의 시설	우스 호텔	1	중구 예장동 신4-5	1,787.14	1,787.14	철근콘크리트	1	914.62	9,194.67		1	중구 예장동 신4-5	1,787.14	1,787.14	철근콘크리트	1	914.62	9,194.67					

구분	시열명	변 경						진 경						후 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면적	연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비면적	연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나		3,267.64	3,267.64							나		3,267.64	3,267.64												
	주차장	나-1	중구 예장동 산4-5	3,033.87	3,033.87							나-1	중구 예장동 산4-5	3,033.87	3,033.87												
		나-2	중구 예장동 산5-84	233.77	233.77							나-2	중구 예장동 산5-84	233.77	233.77												
	소계													330.00	330.00									1		증) 330.00㎡ (현황반영)	
	도시농업양봉사업시설회사											사	중구 예장동 산5-85	330.00	330.00											증) 330.00㎡ (현황반영)	
												㉔	중구 예장동 산5-85										1		L9A83 (현황반영)		
	소 계			58,999.10										(1)	(1,197.88)	(7,322.40)	(15)	(1)	(1,197.88)	(7,322.40)	(1)	(1,197.88)	(7,322.40)	(15)		감) 645.43㎡ 오류보정	
	복지 및 남신원관 기타	3	중구 예장동 산5-85	3,905.94		철근콘크리트	(1)	(1,197.88)	(7,322.40)	(1)	3	중구 예장동 산5-85	3,905.94		철근콘크리트	(1)	(1,197.88)	(7,322.40)	(1)	(1,197.88)	(7,322.40)	(1)					
	누 지		전지역	55,083.16																						감) 645.43㎡ 오류보정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038.5	6,428.0				
변경					1,038.5	6,428.0				
당초	소계				733.0	5,831.0				
당초	1	1	10	85.0	850.0	남부순환로	예정동 산5-6	예정동 산5-6		
당초	1	2	8.5	106.0	901.0	남부순환로	예정동 산5-6	예정동 산5-6		
당초	2	1	8	212.0	1,696.0	주진입로	예정동 2-1	주차장1		
당초	2	2	8	210.0	1,680.0	주진입로	예정동 산3-13	예정동 산5-84		
당초	2	3	8	48.0	384.0	주진입로	예정동 산5-85	예정동 산5-85		
당초	2	4	8	8.0	64.0	주진입로	예정동 산5-89	예정동 산5-85		
당초	3	1	4	64.0	256.0	부진입로	예정동 산5-6	예정동 산5-85		
당초	소계				305.5	597.0				
변경					305.5	597.0				
당초	-	1	2	16.5	30.0	산책로	휴게소1	광장 가-2		
변경	-	1	2	16.5	30.0	산책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휴게소1	오류정정	
당초	-	2	1.5	20.0	30.0	산책로	휴게소1	체력단련장1		
당초	-	3	2	25.0	50.0	산책로	주차장1	휴게소1		
당초	-	4	1.5	8.0	12.0	산책로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2		
당초	-	5	2	236.0	472.0	산책로	소로2-1	예정동 산5-6		

2022 - 126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고시명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무형문화재 (기능/개인)	제18호 민화장	정귀자	여	1954. 2. 5.
	제53호 서울석장(석구조장)	김권오	남	1952. 8. 15.
	제53호 서울석장(석조각장)	임한빈	남	1953. 10. 10.

2. 인정일 : 2022. 3. 24.

3. 인정사유

가. 제18호 민화장 보유자 인정 대상자 정귀자

인정대상자 정귀자는 민화의 특성 및 현대적 계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토대로 민화 기법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음. 작품 제작에 있어서도 숙달된 필력을 보여주고 있음. 다양한 전통 재료를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으로 여러 가지 자연 염료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어 현대의 시각 환경에 부응하면서 민화의 회화적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음. 또한 전통에 기반을 두고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 안료 등을 실험하고 있는 점도 확인됨.

작고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민화장 보유자 김만희 선생의 수제자로 전수교육조교를 거친 이력을 통해 확실한 전승기량, 활동, 의지 등을 뒷받침함. 오랫동안 작품활동과 후진양성에 활동하며 다양한 수상경력과 교육, 심사위원 활동 등을 거친 이력이 확인됨. 또한 화실에는 스승 김만희 선생의 자료 슬라이드 등을 잘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민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정됨. 이에 위 대상자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나. 제53호 서울석장(석구조장) 보유자 인정 대상자 김권오

인정대상자 김권오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이상각 선생에게서 6개월의 석공 기본 기술을 배우고 1967년경 서울로 상경하여 ‘일신석재’에서 1년 8개월간 이시우 선생에게서 석공을 본격적으로 배웠으며 1981년 2월 16일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자 석공 시험에 합격하여 석공 제574호로 등록하였음.

석구조장과 관련하여 부산 동래읍성, 오산 독산성, 서울 한양도성, 창경궁, 서울 사직단, 운현궁, 강화산성 망월루, 강화외성 조해루, 강화 삼량성, 나주읍성 북망루, 강화외성 진해루 등 주요 성곽 및 성문 복원·보수공사, 궁궐의 월대 및 석축보수 등 많은 석구조공사에 참여하였음. 인정대상자는 50여년 전통 석구조공사에 종사하여 석재의 가공과정별 석재가공 및 작업 공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으며 각 시대별 석구조의 특성과 시공기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우수하게 시행할 자질이 있음.

인정대상자는 전수 시설과 전통기법 전승 장비 등을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석구조에 관한 경험과 기량, 시공 실적 및 전승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위 대상자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세부종목 : 석구조장)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다. 제53호 서울석장(석조각장) 보유자 인정 대상자 임한빈

인정대상자 임한빈은 친형 임기빈을 따라 1968년부터 현재까지 석공예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국가무형문화재 석장 이의상 및 조각가 김창희로부터 사사받아 전통기술과 조형 감각을 균형 있게 익혔으며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제작에 연관된 풍부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보유함.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와 복원에도 참여하기도 했음. 석조각에 쓰이는 다양한 원석 산지와 채석, 용도에 따른 석재의 유형 등 재료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양호함.

인정대상자는 화강암을 다루는 솜씨가 우수하며 전통공구에 대한 이해도 높으며, 석조각장으로 서 설계와 시공 전체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예술 활동과 교육 활동, 리더로서의 품격과 자질도 갖춘 것으로 판단됨. 조각 기법 등이 능숙하고 숙련도가 높아 전통 석조미술품을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통적 기법을 활용한 설계와 도상의 표현, 조각 기법이나 과정 수행이 능숙하며 도상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섬세한 예술적 기교 등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작업장 환경도 양호하며 전승의지 역시 높은 편으로 원활한 전승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통기술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하는 전수체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임. 이에 위 대상자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세부종목 : 석조각장)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끝.

2022 - 127

54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무속지화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명 : 무속지화장

2. 지정번호 : 제54호

3. 지정일 : 2022. 3. 24.

4. 지정사유

- 서울 굿은 전통적으로 신격에 따라 지화를 다르게 제작하여 제장(祭場)에 장식하며 지화는 곧 신격을 대변해 줄 정도로 중요한 상징물임에 분명함.
- 19세기 후반에 출간된 서울 굿 무속자료인 『무당내력』에 의하면, 매 거리마다 제물상의 한가운데에 지화를 장식한 모습을 볼 수 있음.
- 특히, 수팔련[혹은 수파련 水波蓮]은 궁중의례를 그대로 본 따 만든 것으로, 과거 한양 굿이라 불리던 서울 굿의 역사적·지역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지화는 무속의 전승체계가 도제식으로 유지되던 시기의 무격이라면 반드시 그 제작기법을 학습해야 하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지화제작기법을 익힌 무격의 감소로 그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현재 무속지화 전승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전통적인 기법에 의한 지화 전반에 대한 제작이 가능한 무격이 소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속지화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승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끝.

2022 - 128

55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5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불교지화장엄>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명 : 불교지화장엄

2. 지정번호 : 제55호

3. 지정일 : 2022. 3. 24.

4. 지정사유

- 불교에서 꽃 만들기는 곧 수행의 하나로 그 과정이 도를 닦는 과정이라 여겨지며 종교에서 꽃은 일상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관념보다 더 다양하게 표상(表象)되고 있음.
-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다고 해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찬탄을 상징하기도 함.
- 조선시대 불교는 유교중심의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에 의해 그 입지가 취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사찰의 감로도에서 볼 수 있는 전통기법의 의례용 지화 장엄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불교에서는 지화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일부로서 신도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종이 염색부터 설단 장엄 및 해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함.
- 따라서 지화의 전승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단체)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의례적 측면과 전승의 지속가능성을 볼 때, <불교지화장엄>을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 종목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끝.

2022 - 130

2022 1 가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2022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건축물 20,472호

- 건축물 20,472호

○ 변경결정 현황

구 분	합 계	수시조정 내용		
		신규	인상	인하
건축물	20,472	-	-	20,472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세부내역 붙임

3. 변경고시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 변경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news.seoul.go.kr/gov/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찾아가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자료실 ⇒ 세금 ⇒ 시가표준액표
(건물, 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끝.

붙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건축물 : 총 20,467호(상가 19,856, 오피스텔 611)
- 조정내역(인하 20,467호)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물건소재지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 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 후)				건물 시가표준액	
			구조	용도	위치	가감	구조	용도	위치	가감	변경전	변경후

※ 세부내역 : 서울시 홈페이지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참조

(홈페이지주소) http://news.seoul.go.kr/gov/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찾아가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 세금 ⇒ 세금 ⇒ 세금자료실
⇒ 시가표준액표(건물, 기타)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2022 - 131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제9조(문화재자료),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보), 제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 제67조(준용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개요
가.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9호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권 1책	32.0×21.0cm	1576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0호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 (彌陀寺 金水庵 山神圖)	1점	전체 : 97.5×86.4cm 그림 : 65×53.7cm	1869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1호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 (彌陀寺 金水庵 現王圖)	1점	전체 : 149.5×129.5cm 그림 : 141×122.3cm	1900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2호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 (彌陀寺 極樂殿 阿彌陀佛會圖)	1점	180×226cm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13호	미타사 극락전 감로도 (彌陀寺 極樂殿 甘露圖)	1점	163×245.5cm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85호	미타사 책거리 병풍 (彌陀寺 冊거리 屏風)	1점	전체 : 92.5×332cm 각쪽 : 92.5×41.5cm	19세기말~ 20세기초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86호	백화사 목련경변상도 (白華寺 目連經變相圖)	1점	전체 : 126×113.3cm 화면 : 114.4×100.3cm	1925년	은평구 (대한불교조계종 백화사)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2호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유학생 잡지 5종	5종 18책	『공수학보(共修學報)』(1종 2책) 210×148cm	1907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대한유학생회학보(大韓留學生會學報)』(1종 2책) 21.2×14.6cm	1907년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동인학보(同寅學報)』(1권 1책) 210×148cm	1907년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1종 9책) 21.1~21.5×145cm	1908년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1종 4책) 22.0~22.2×14.2~14.6cm	1909년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3호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교지 1종	1종 1책	『보중친목회보(普中親睦會報)』(1종 1책) 22.5×15.5cm	1910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4호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애국계몽운동학회지 2종	2종 22책	『서우(西友)』(1종 13책) 22~23×15~15.5cm	1906~ 1908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1종 9책) 21×15cm	1908~ 1909년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15호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종합잡지 3종	3종 14책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1종 6책) 24.2~24.6×15~16.2~16.5cm	1906~ 1907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대동보(大同報)』(1종 4책) 23.4~23.7×15.3~15.5cm	1907년	
			『장학월보(獎學月報)』(1종 4책) 22.0~22.2×15.3cm	1908년	

나. 지정 및 등록 사유

1) 유형문화재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는 조선시대 대우(大愚)가 사후(死後)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살아 있을 때 재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의례의 일종인 여수재에 관한 의식 절차를 편찬한 의식집이다. 남산도서관 소장본은 선조 9년(1576) 안동 학가산(鶴駕山)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며 당시 각수는 석견(釋堅)으로 권말에는 육화(六和)가 지은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가 수록되어 있다. 형태적 판식을 살펴보면 오침안정법을 사용한 선장으로 표지의 문양은 능화문이며 전체적인 상태는 보통이다. 저자는 ‘松堂野衲大愚 集述’이라 되어있다. 내용의 여러 곳에 한글로 묵서한 발음이 묵서되어 있고 방점도 찍혀 있는 1책(56張)이다. 관심의 제목은 ‘預修文’이며 그 아래에 張次가 순서대로 인쇄되어 있다. 특히 제일 뒷장에는 ‘萬曆四年丙子(1576)五月日慶尙道安東地鶴駕山廣興寺開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그리고 施主者가 다수 인쇄되어 있고 刻手者로 ‘釋堅’, 鍊板者는 ‘圓悟’, ‘天熙’ 등이 인쇄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뒤표지 이면에 ‘崇禎元年戊辰(1628)五月日引經施主’라는 기록과 함께 이 경을 시주한 기록과 함께 시주자 명단도 묵서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산본은 간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목판본으로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본문 내용 여러 곳에 한글로 음을 달아 놓아

국어학적 연구 가치와 함께 임란 전 간행본으로 비교적 판본이 많지 않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彌陀寺 金水庵 山神圖) 】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는 미타사 금수암 무량수전의 하단불화로 조성되었다. 화기는 그림 왼쪽 하단에 구획을 마련하여 묵서되어 있는데, 緣化秩로부터 시작하여 施主秩과 化主를 마지막으로 끝 부분에 조성시기를 표기하였다. 화기로 미루어 보아 이 산신도는 1869년에 조성되었으며, 수화승인 金魚片手 應□을 비롯하여 漢峰堂 瑤輝, 比丘斗正, 比丘守燭, 比丘肯印 등 5명의 화승들에 의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한봉당 창엽은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대 활약상을 보인 화승으로, 당시 불교 화단을 좌우지하던 ‘惺雲永羲, 金谷永煥, 大虛體訓, 慶船應釋’ 과의 교류를 통해 괘불화를 비롯한 많은 불화들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는 화기를 통해 조성연대와 조성 화승들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조선시대 후반의 민화와도 연결 지어볼 수 있는 화풍을 엿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당시 화승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형 불화인 괘불화를 비롯하여 많은 불화들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경기지역 불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彌陀寺 金水庵 現王圖) 】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는 미타사 금수암 무량수전의 하단불화로 조성되었다. 폭 38cm, 92cm의 무명천 두 폭을 잇대어 만든 바탕에 그린 현왕도로서, 8폭 병풍을 배경으로 중앙의 현왕(現王)을 비롯하여 2위의 성왕(聖王)과 2위의 귀왕(鬼王), 4위의 판관(判官)과 녹사(綠事), 3위의 동자(童子)와 2위의 천녀(天女) 등 총 14위의 존상이 등장한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화기란이 마련되어 묵서를 통해 대한광무 4년인 1900년 8월에 점안하여 미타사 중사 무량수전에 봉안하였으며, 그림은 재검이 그렸음이 확인된다. 도상은 1846년 조성의 남양주 흥국사 현왕도를 수용하여 약간 변용 시킨 작품으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의 화승 계보와 화풍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에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彌陀寺 極樂殿 阿彌陀佛會圖) 】

미타사 극락전에는 아미타삼존상(阿彌陀三尊像)을 주존불로 모시고, 후불도로 아미타불회도(阿彌陀佛會圖)를 봉안하고 있다. 동쪽벽에는 좌우로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와 신중도(神衆圖)를 모셨고, 서벽에는 칠성도(七星圖), 현왕도(現王圖), 감로도(甘露圖)를 모셨다. 이중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1887년)는 조성연대 및 조성지와 봉안처가 분명하며, 제작 화승,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로, 당대를 대표하는 수화승 금곡 영환의 기량을 엿볼 수 있다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부처의 붉은 가사에 굵은 금니의 용 문양을 중심으로 파도문을 주 문양으로 포치하고 그 바깥쪽에는 소용돌이 문양(渦圈文)을 두른 큼직한 문양이 화려하게 가사를 장식한 바, 금박의 신광(身光)과 더불어 충분한 금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극락전 불화 중 가장 화려한 금의 효과를 나타낸 미타사 아미타불회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 미타사 극락전 감로도(彌陀寺 極樂殿 甘露圖) 】

미타사 극락전 하단불화로 영가단(靈駕壇)에 봉안된 감로도는 1887년에 일련의 불사로 조성되었다. 미타사 감로도는 비단 5폭을 가로로 잇대어(향좌로부터 폭46.21cm, 51.3m, 51.2m, 51.2, 46cm)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주(朱), 녹(綠) 등의 안료를 주조색으로 채색한 불화다. 미타사 극락전 내부의 불화는 대부분 가로로 긴 장방형의 구성과 51.5cm가 한 폭인 비단폭, 채색 등에서 당시 조성한 불화로서의 공통점이 간취된다. 극락전 감로도는 조성연대와 화승, 시주자가 명확한 불화로 화승의 경우 19세기 후반 근기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한 불화승들이 망라되어 있다. 수화승 학허 석운(鶴虛石雲), 명응 응감(明應幻鑑), 허곡 긍순(虛谷肯巡), 보암 광법(普庵肯法), 혜조(慧照) 등 5명의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다. 19세기 근기지역에서 공유된 도상을 보이는 미타사 감로도는 근기지역 도상 계보와 화승 학허의 감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2) 문화재자료

【 미타사 책거리 병풍(彌陀寺 冊거리 屏風) 】

『미타사 정수암에 소장된 책거리로서 종이에 채색한 8폭 병풍으로 높이가 1m미만의 작은 병풍, 실내용 단병이다. 전체적으로 얇게 설채되어 있으며 짙은 푸른색과 엷은 붉은 색이 많이 쓰였다. 龍文, 雲文, ‘壽’, ‘福’ 문양 등이 도자기와 서갑에 적극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원근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서갑의 표현에서 입체감을 주려는 다양한 시도가 보인다. 19세기말 - 20세기 초에 제작된 서가가 생략된 책거리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미타사 정수암 책가도의 주문자와 현 소장처와의 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 궁중책가도의 공필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병풍이 비단이 아닌 종이 바탕이며, 안료 역시 값이 나가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궁중 소장품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독창성이 떨어지며 19세기말-20세기초의 정형화된 형식을 보이므로, 책거리의 미술사적 가치 높지는 않다. 한편 19세기말 서가가 생략된 책가도의 전형 양식을 살펴보기에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전체적으로 전형 양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문양과 입체 표현 등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덧칠이 많이 가해지지 않고, 처음 장황을 유지하는 등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명칭을 <미타사 책거리 병풍>으로 수정하여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백화사 목련경변상도(白華寺 目連經變相圖) 】

백화사 <목련경변상도>는 건봉사 만일회(萬日會)에서 1862년 간행한 『불설대목련경』의 권수변상도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그린 불화로 찢겨진 부분은 없으나 화면 곳곳에 얼룩이 묻어있는 등 오염되어 있을 뿐 도상의 원형은 잘 유지되어 있다. 18세기중엽에서 1930년경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불화를 제작한 화승 예운당 상규와 속인 화원으로 추정되는 방한태가 함께 제작하였다. 예운당 상규는 전통에 바탕을 둔 능란한 필선을 구사하는데 이 불화에서는 필선도 약간 이완되어 보이고 특히 존상의 얼굴이 매우 세속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규는 출초(出草)를 담당하고 속인인 방한태(方漢泰)가 화면을 완성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필치가 뛰어난 불화는 아니지만 화승과 속인 화원이 함께 제작하였고, 불화로서는 현존하는 유일한 목련

경변상도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재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등록문화재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유학생 잡지 5종 】

1905년 말부터 일본에 건너간 유학생들은 친목도모와 지식교환을 위해 주로 출신지역별로 여러 단체를 구성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차례로 통합되어 1909년에는 대한홍학회로 통일을 이루게 된다. 각 단체는 잡지 발행을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들 잡지는 각 단체나 일본의 유학생 사회 안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통되어, 당시 국내의 학회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계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유학생 잡지 5종(『공수학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동인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회보』)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애국계몽운동기의 일본유학생들의 동향과 학지(學知)의 수용·유통의 양상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동인학보』, 『대한학회월보』는 남산도서관에 전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3종도 모두 창간호를 포함하고 있어서 컬렉션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교지 1종 】

보성학교는 1906년 이용익(李容翊)이 창립한 학교로 대한제국 황실의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로 구성되고 인쇄소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설립자 이용익과 그 뒤를 이은 손자 이종호(李種浩)가 정치적 이유로 잇달아 해외로 망명을 하면서, 결국 1910년 말 보성학교는 천도교 쪽에 인수되었다. 또 1911년 8월 일제의 (제1차)「조선교육령」으로 대한제국기의 소학교·중학교·전문학교 등의 학제는 폐지된다. 남산도서관에는 이 시기 동안 보성중학교와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의 친목회지인 『보중친목회보(普中親睦會報)』이 소장되어 있다. 『보중친목회보』은 1910년 6월 10일자로 창간된 보성중학교 졸업생 친목회지인데, 그해 12월 제2호로 중단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 이수삼(李秀三), 발행소는 중부 박동(礪洞) 보성중학교 내에 있는 보중친목회, 인쇄인 김한수(金漢洙), 인쇄소 동문관(同文館)으로 되어 있다. A5 156면, 정가 15전이다. 주시경 선생 및 <애국가> 관련 중요자료(김인식 교유의 글)로 통권 2호 중 남산도서관에는 창간호가 소장되어 있어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애국계몽운동학회지 2종 】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애국계몽운동학회지 2종은 애국계몽운동기의 중요한 학회 또는 사회단체의 기관지이다. 특히 『서우』는 지역 단위 학회지의 효시이고, 『기호홍학회월보』는 그중 최대 규모의 학회였다. 또 남산도서관 소장본이 두 종 다 창간호를 포함해서 『서우』는 통권 14호 중 한 호(9호)가 빠진 13호, 『기호홍학회월보』는 통권 12호 중 9호를 갖추고 있어 컬렉션으로서도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서우』, 『기호홍학회월보』는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남산도서관 소장 대한제국기 간행 종합잡지 3종 】

『소년한반도』, 『대동보』, 『장학월보』는 모두 발행자가 잡지의 발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설립해서 운영한 경우로, 학회지의 경우와는 또 다른 한국 잡지사의 독특한 사례들이다. 특

히 『대동보』는 종래 국채보상운동의 ‘기관지’ 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보다는 김광제 개인이 대동보사를 세워 간행한 잡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학월보』는 현상모집한 독자 투고로만 운영한 특이한 잡지다. 또 남산도서관은 『소년한반도』는 통권 6호 전부, 『대동보』는 통권 6호 중 4권, 『장학월보』는 통권 5호 중 4권(모두 창간호 포함)을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 문화재 지정(등록) 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794

(1 -)

소방시설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나 영업소재지 불명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4. 1.(금) ~ 2022. 4. 15.(금)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1차 - 경고) 조치 통보
귀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1차 - 경고)을 통보합니다.

당사자	성 명	대표 권대규 [동구에프씨(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 소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81-12, 2층(문정동)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1차 - 경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시정명령 조치기한	2022. 4. 1. ~ 2022. 4. 15.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장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처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개별기준 나목 1차 	
비 고	○ 등록기준 미달상태로 시정명령 조치기한 만료 시 2차-영업정지3개월 처분	

<행정심판 등의 고지>

-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2 - 796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송광용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2, **1호(신읍동)	일시 : 2021-10-20 20:25 장소 : 서울시 아리수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5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전정민	경상북도 칠곡군 장곡길 ***4-*(석적읍)	일시 : 2021-10-25 03:15 장소 : 서울시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7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박종두	경기도 포천시 청신로 ***4, *동 **2호(신북면)	일시 : 2022-01-27 20:35 장소 : 서울시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길이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송광용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2, **1호(신읍동)	일시 : 2022-01-27 20:45 장소 : 서울시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2.04.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2022 - 800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140487	㈜그린아이씨티/정상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산정빌딩 (여의도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중급1, 초급1, 기능계1인)	등록취소
2	200248	크레이코리아인크한국지점(영업소)/최진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센트럴프라자 317호 (서초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초급4, 기능계1인)	등록취소
3	202239	㈜티플러스/이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 강남빌딩 3층 (신사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초급1인)	등록취소
4	200987	대운정보통신/윤석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403-1 (등촌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초급1인)	등록취소
5	201685	팬텀㈜/최재민	강남구 봉은사로 33길10. 2층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효력상실)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
(☎(02) 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2022 - 816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정*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일시: 2022-01-04 22:36 장소: 화랑대사거리(포항~화곡동) 내용: 경북98아2504(트레일러6축, 길이 초과(실측값:18.5m, 초과값:1.8m), 적재물:형강)	처분일: 2022. 02. 18. 과태료: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2. 3.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 82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승인일자: 2022. 3. 17.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용마산 근린공원 (광진구청장)	광진구 중곡4동 176-110 일대	612,481.00	489,457.20	감) 123,023.80	4,622.30	2,024.88	감) 2,597.42	
육군 제1596부대 (국방부장관)	관악구 남현동 산100-14 일대	119,796.88	123,577.38	3,780.50	108,259.11	111,217.96	2,958.85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 - 2133 - 2015)

광진구 공원녹지과(02-450-7791)

관악구 공원녹지과(02 - 879-6542)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2022 - 827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특별시공고 제2021-984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지정지역 : 공공재개발 후보지 904,270㎡

시도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계			904,270	
	노원구	상계3	상계동 71-183번지 일대	104,000	
	강동구	천호지A1-1	강동구 천호동 467-61번지 일대	26,549	
	동작구	본동	본동 47번지 일대	51,696	
	성동구	금호23	금호4가동 1109번지 일대	30,706	
	종로구	송인동 1169	송인동 1169번지 일대	14,157	
	양천구	신월7동-2	신월7동 941번지 일대	90,346	
	서대문구	홍은1	홍은동 48-163번지 일대	11,466	
	서대문구	충정로1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8,075	
	서대문구	연희동721-6	연희동 721-6번지 일대	49,745	
	송파구	거여새마을	거여동 551-14번지 일대	63,995	
	동대문구	전농9	전농동 103-27번지 일대	44,878	
	중랑구	중화122	중화동 122번지 일대	37,662	
	성북구	성북1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109,336	
	성북구	장위8	장위동 85번지 일대	116,402	
	성북구	장위9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85,878	
영등포구	신길1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59,379		

2. 지정기간 : 2022년 4월 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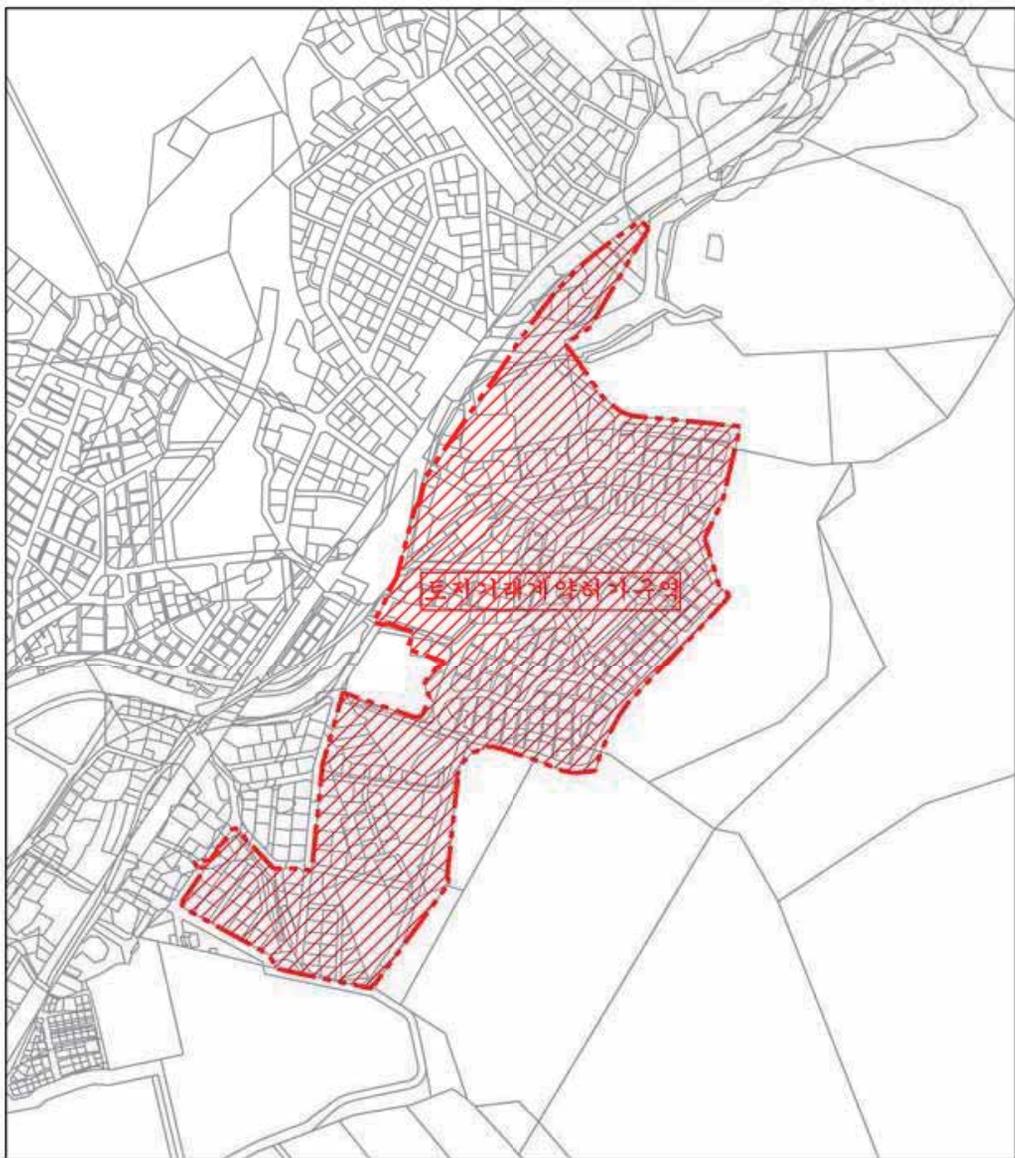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붙임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노원구 상계3



상계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공공재개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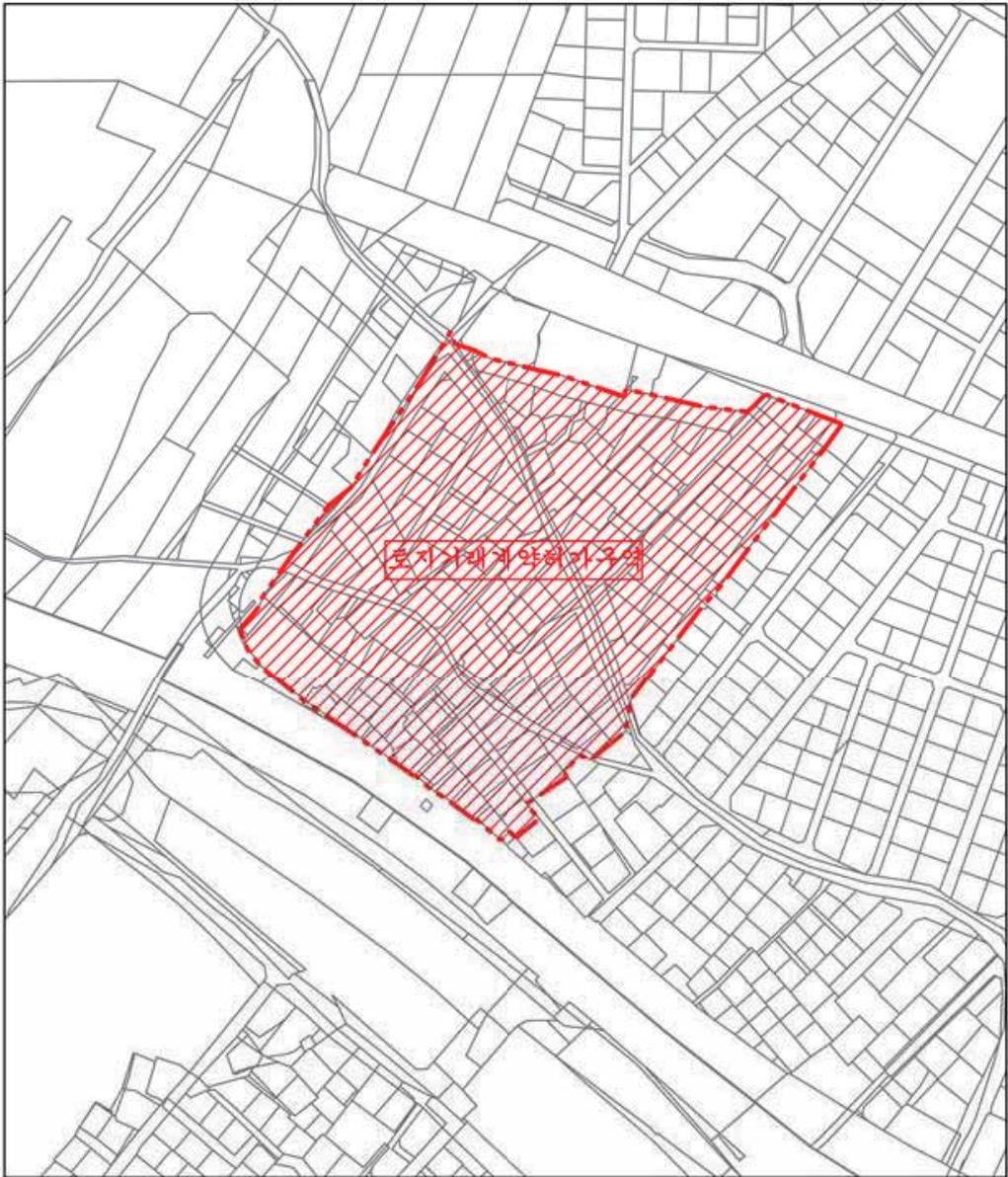
 지구 범위

S = 1 : 5000

0 20 60 100 15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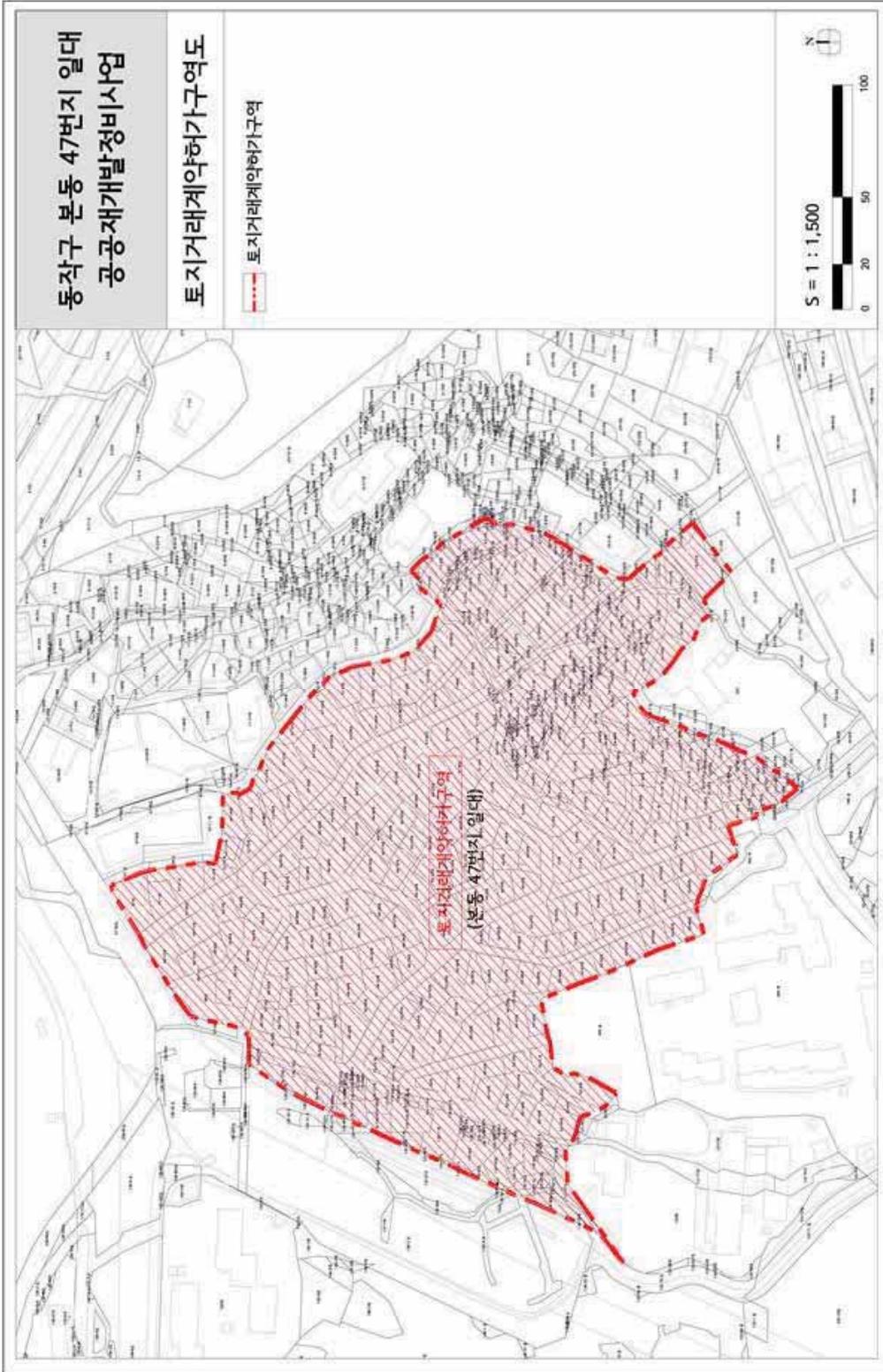


◎ 강동구 천호지구A1-1



<p>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A1-1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재개발</p>	<p>범례</p> <p>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p> <p> 지구 범위</p>	<p>S = 1 : 2500</p> <p>0 10 20 40 60 100</p> 
<p>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p>		

© 동작구 본동



© 성동구 금호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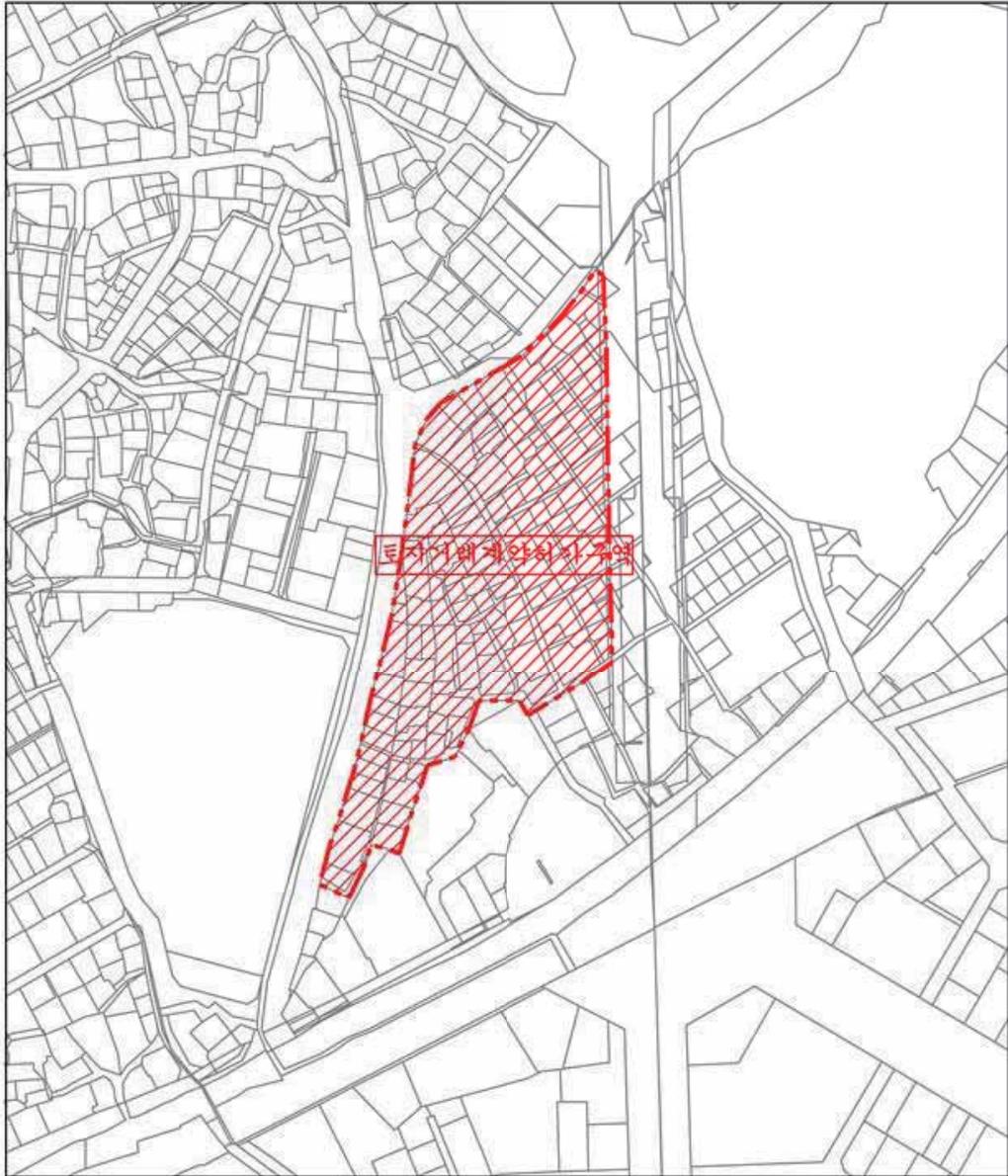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정비사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S = 1 : 1,500
0 20 50 100

© 종로구 송인동1169



송인동 116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공재개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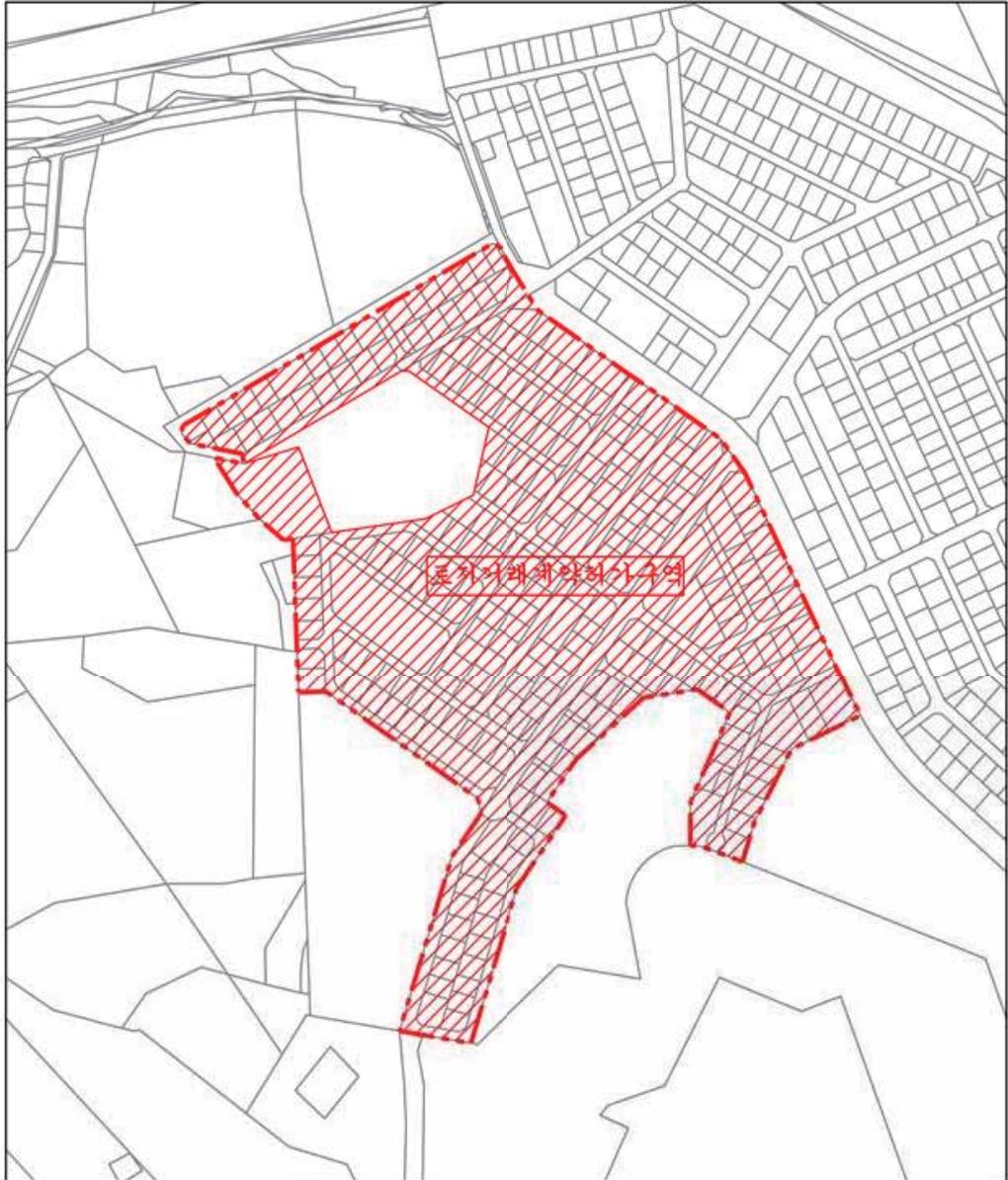
 지구 범위

S = 1 : 2500

0 10 20 40 60 100



© 양천구 신월7동-2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토지거래제한허가구역도

범례

 토지거래제한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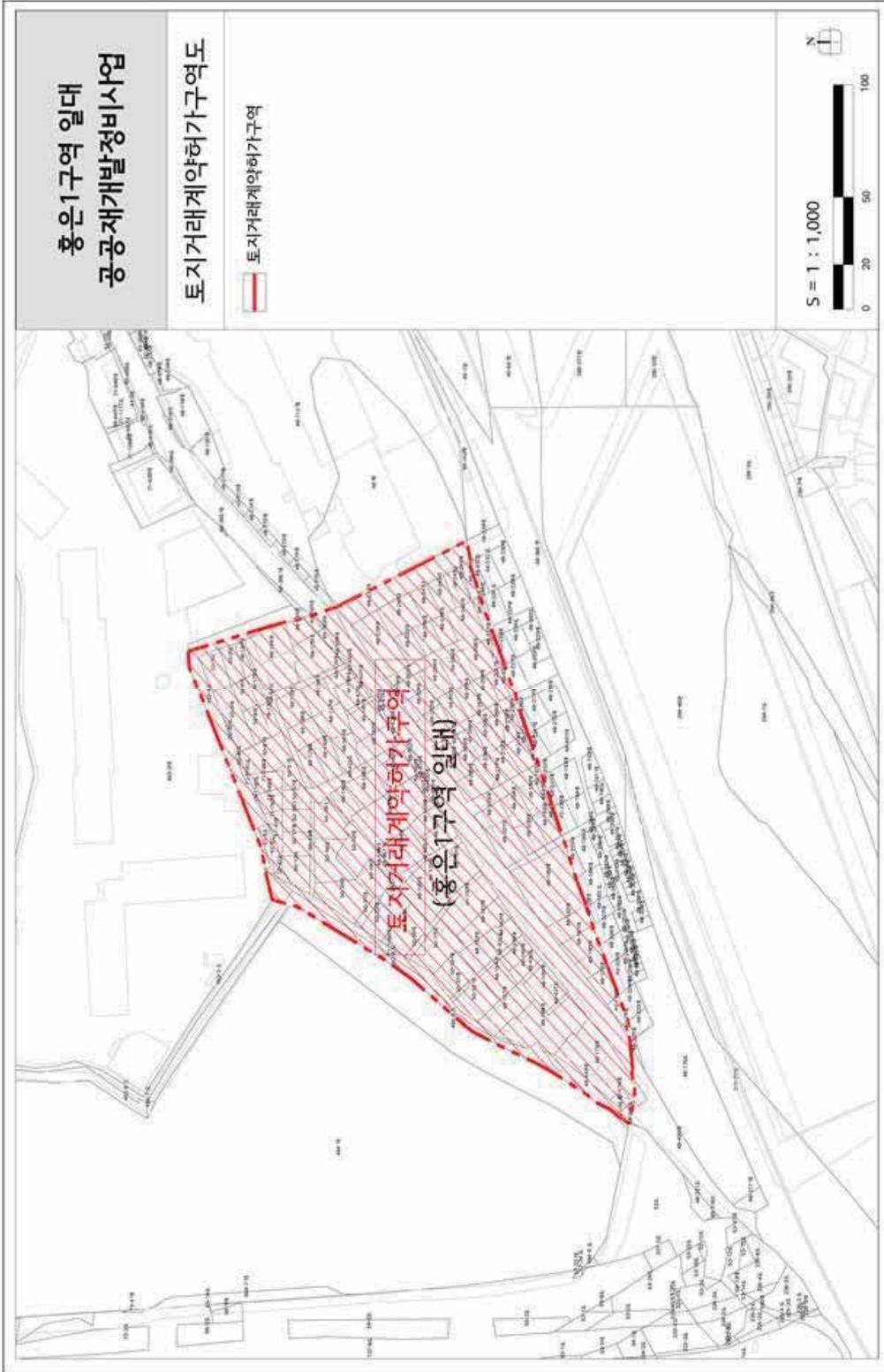
 지구범위

S = 1 :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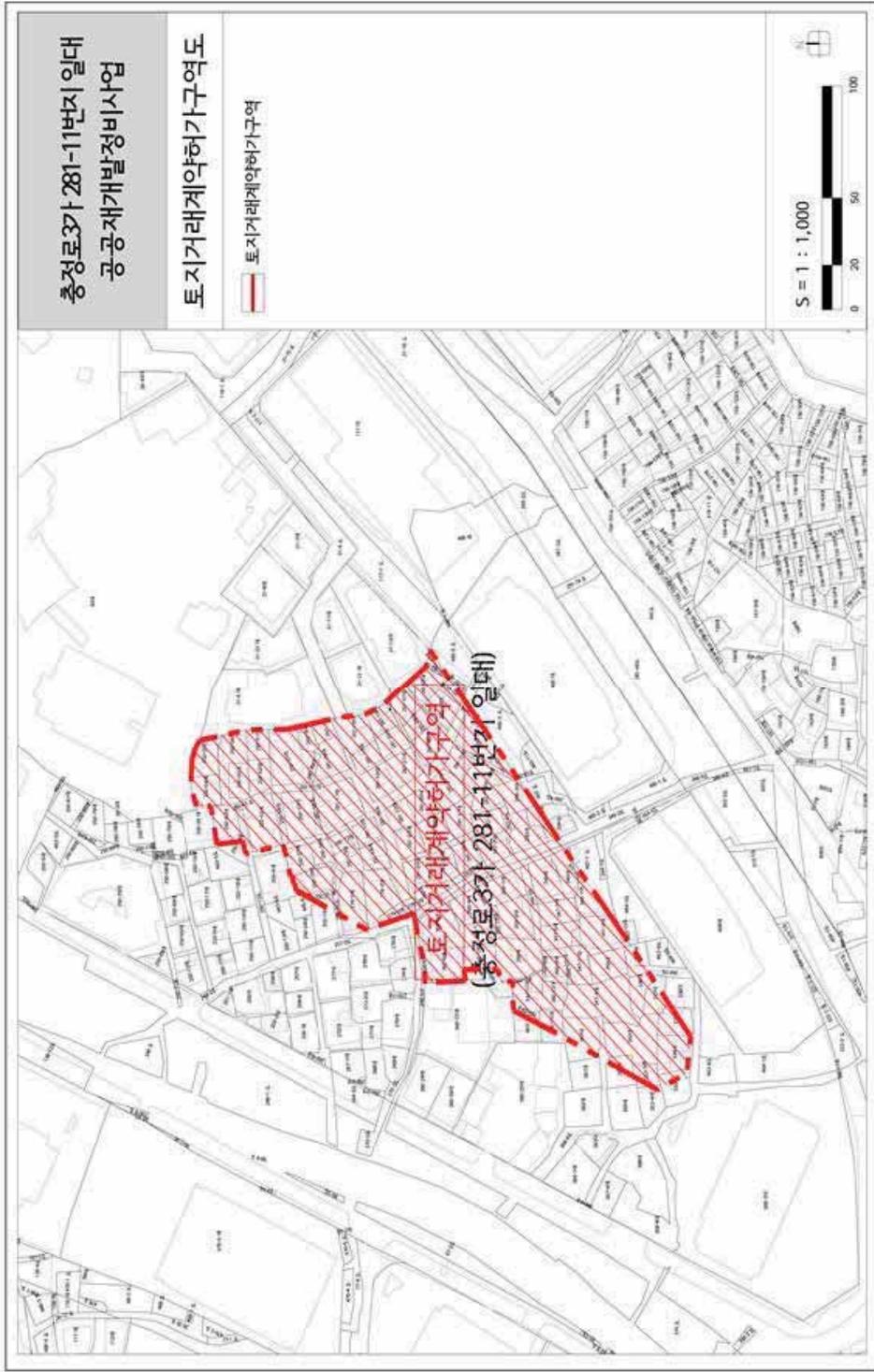
0 20 40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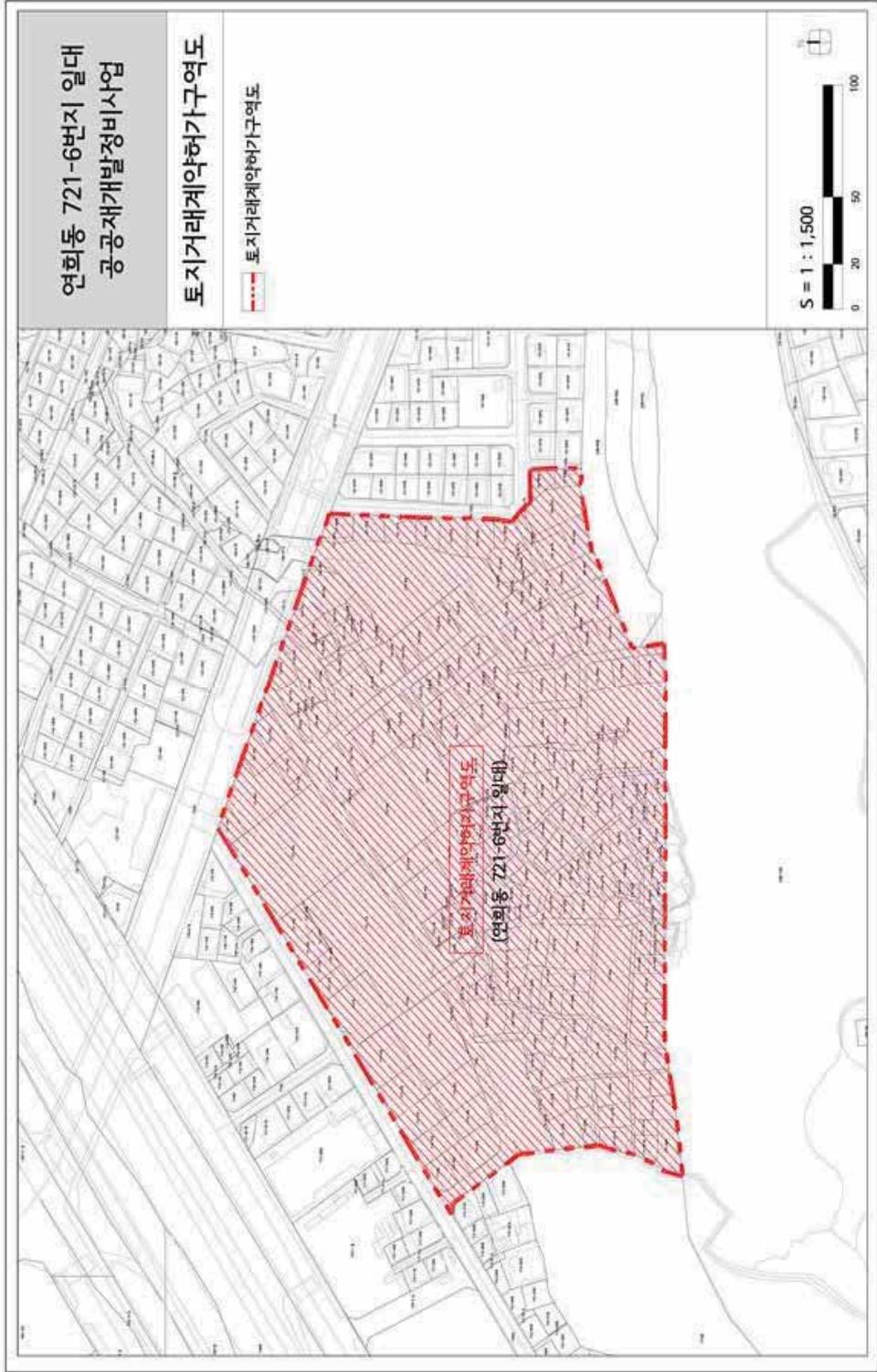
© 세대문구 홍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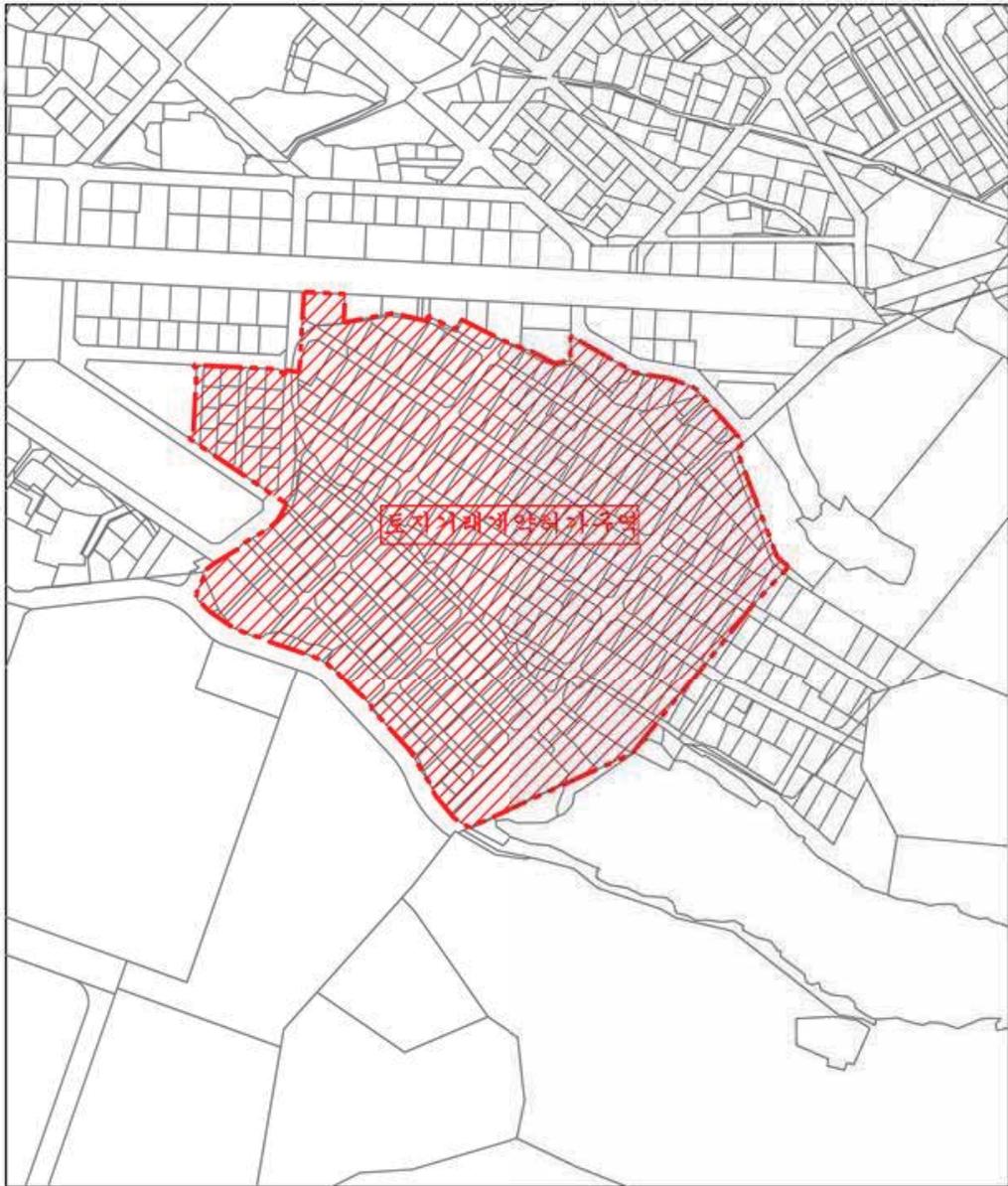
© 서대문구 충청로1



© 서대문구 연희동7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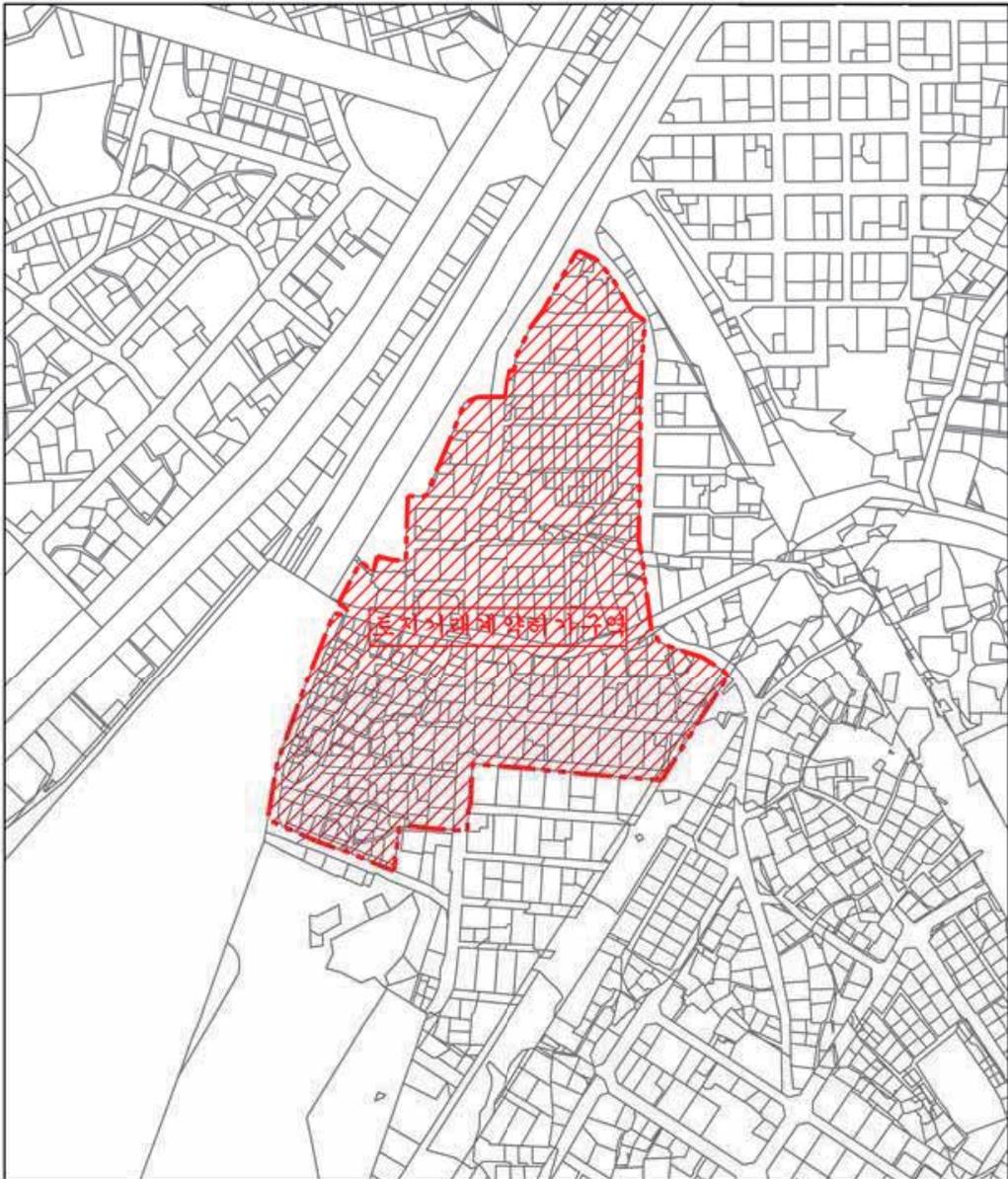


◎ 송파구 거여새마을



<p>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 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p>	<p>범례</p>	<p>S = 1 : 3500</p>
<p>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p>	<p>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p> <p> 지구범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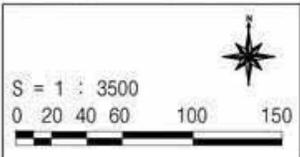
◎ 동대문구 전농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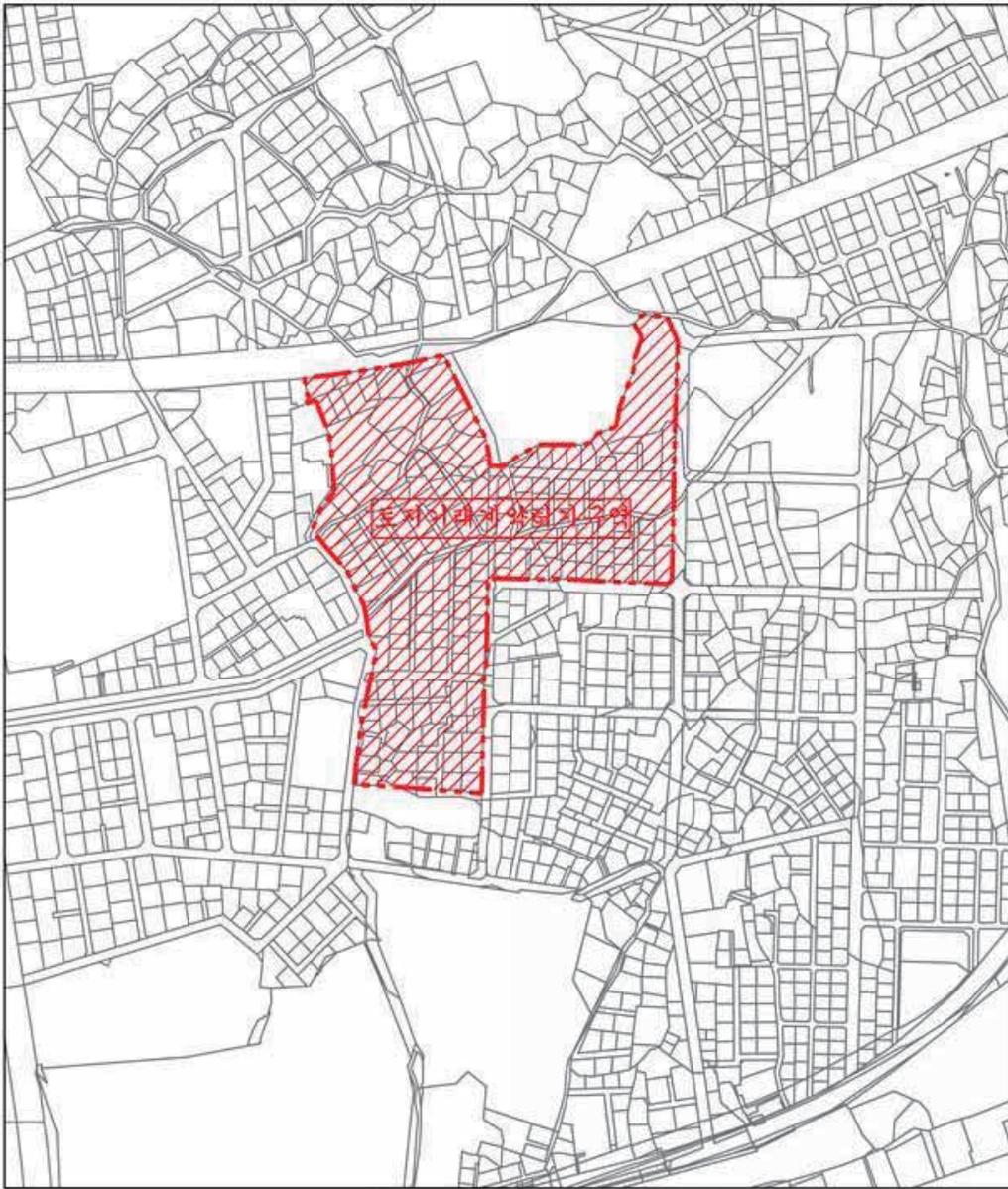
전농9구역 재개발정비구역
공공재개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구 범위



© 중랑구 중화122



중화동 122번지 재개발정비구역
공공재개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구 범위

S = 1 : 4000

0 20 40 60 100 150

A north arrow is located to the right of the scale bar. The scale bar is marked with intervals of 20 units, ranging from 0 to 150.

© 성북구 성북1



성북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공공재개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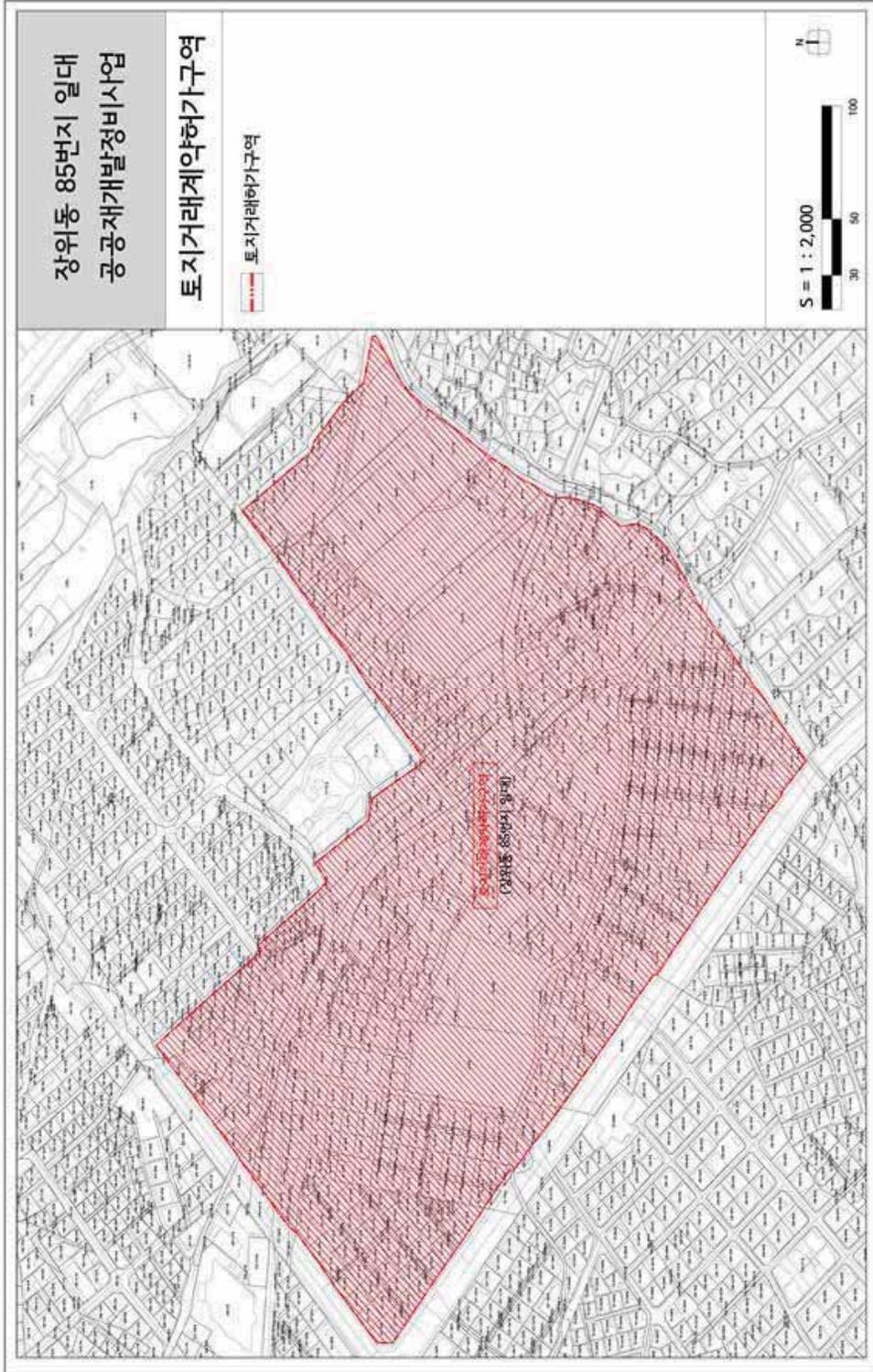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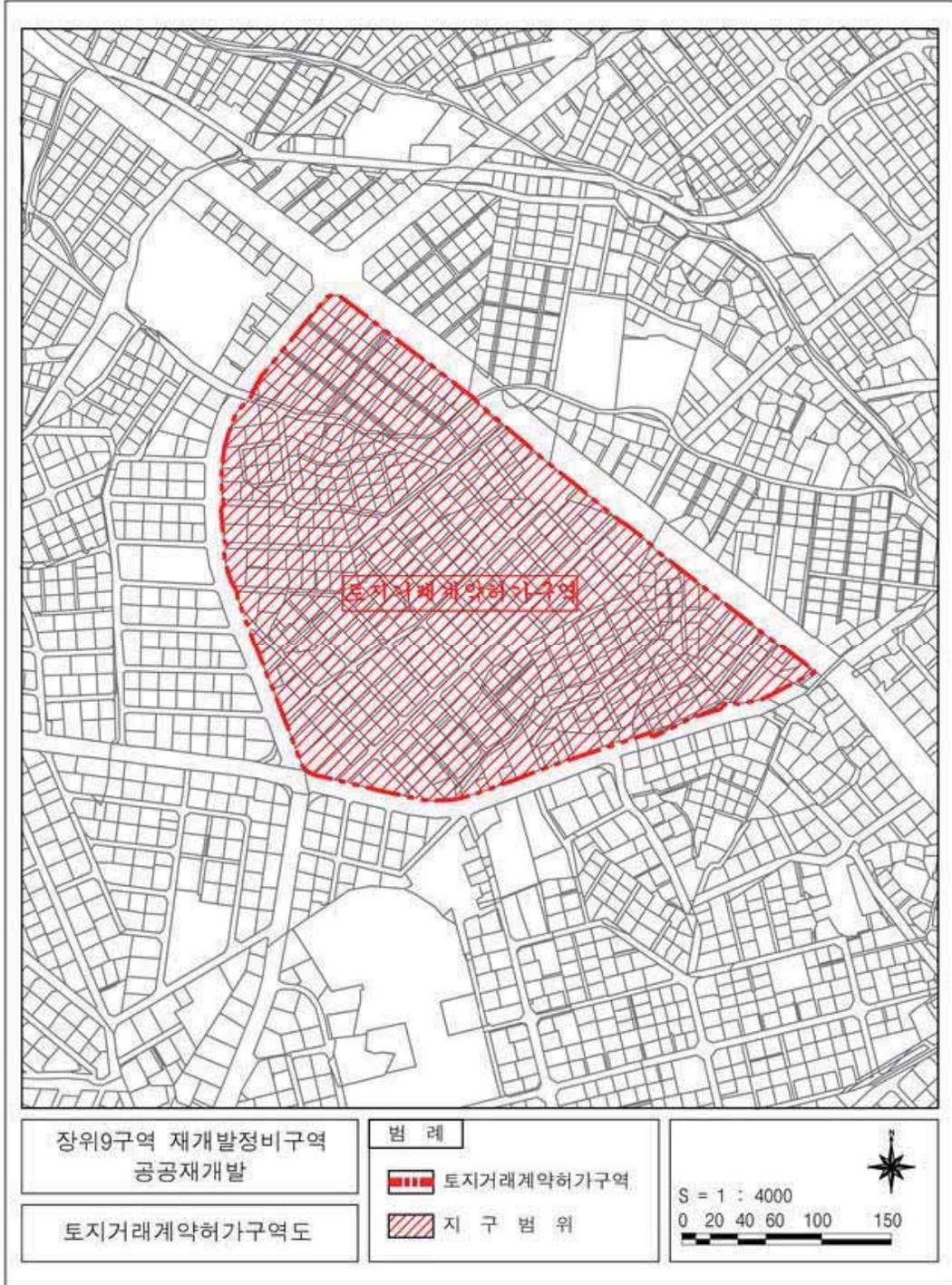
S = 1 : 4000

0 20 40 60 10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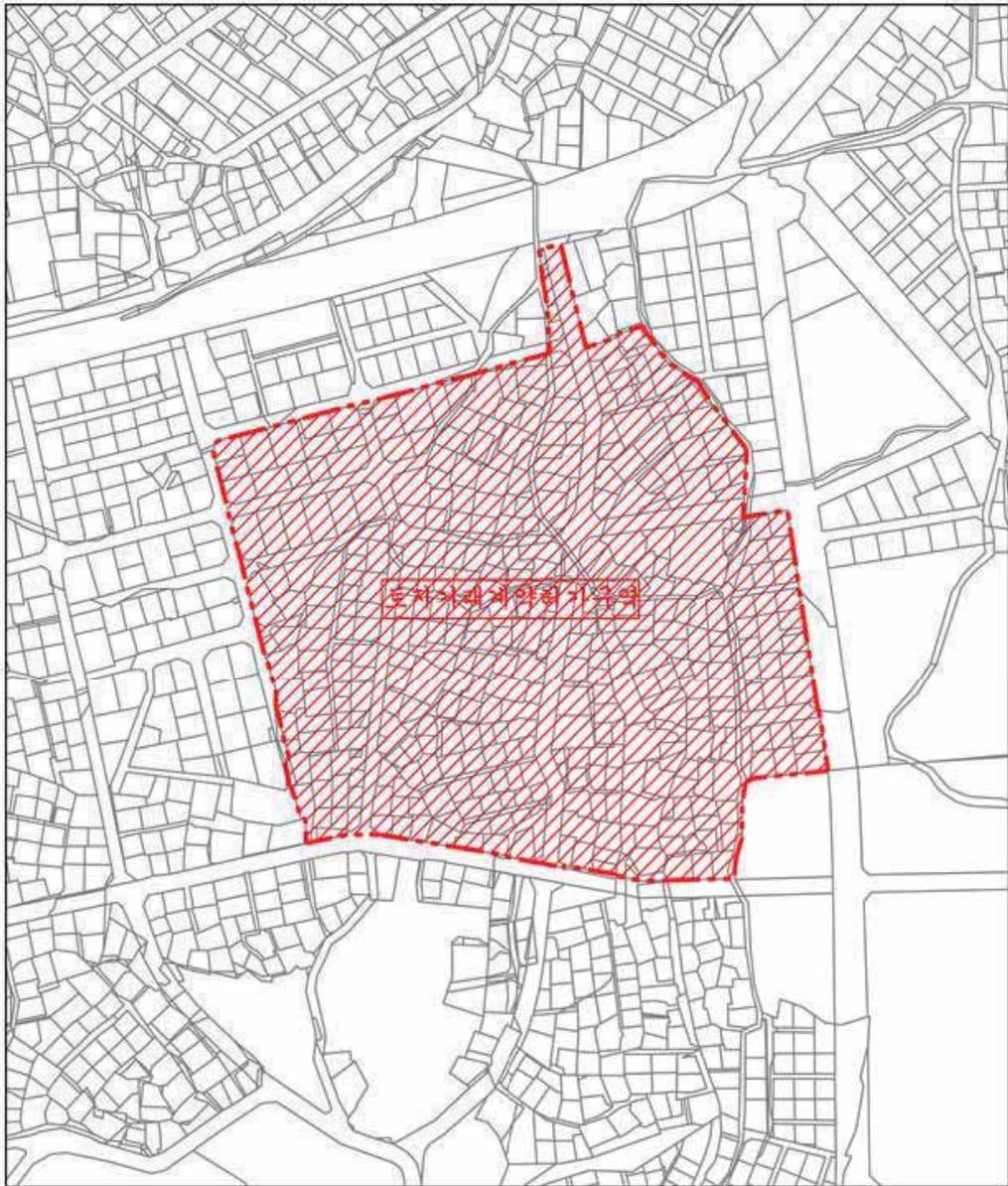


© 상복구 장위8

◎ 성북구 장위9



© 영등포구 신길1



<p>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구역 공공재개발</p>	<p>범례</p>	<p>S = 1 : 3000</p>
<p>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p>	<p>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p> <p> 지구범위</p>	

2022 - 832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3. 24. ~ 2022. 4. 8.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037088428	종로구 송인동 234-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5길 65)	수도요금	2020. 12. 외 4납기	5회	1,529,760원	해당 내역은 2022. 3. 1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 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소		
부동산	종로구 송인동 234-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5길 65)	임*영	591020-5***** (등기번호1152102131678, 폐문부제)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29번길 37, 1202동 703호(정왕동, 대림아파트3단지)	1,529,760원	2021. 4. 11.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윤석진 주무관(☎ 02-3146-210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 - 83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쥬시너젠	제190호	' 22.3.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505호 (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 디지털타워1차)

2022 - 840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2. 3. 24. ~ 2022. 4. 6.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so2020@seoul.go.kr
 - 팩스: 02-768-8897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2. 4. 7. ~ 2022. 4. 20.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순번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사전 통지일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 명	발송지 주소	등기번호
1	2021-12-15 19:50	마스크 미착용	5호선 열차	2022-02 -01	기타	2022-02-07 18:00	690603-*****	서*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078830 920611
2	2022-01-26 14:57	마스크 미착용	3호선 열차	2022-03 -07	이사불명	2022-03-07 13:37	520708-*****	조*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3길	1078831 00818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2022 - 841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2.3.24. ~ 2022.4.6.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
 - 이의제기 기한: 2022.4.7. ~ 2022.6.6.(60일간)
 -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F A X: 02-768-8897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부과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1	부과고지	571109-*****	안*석	마스크 미착용	2022-02	2022-02-01	2022-02-04	기타
2	부과고지	711116-*****	김*덕	마스크 미착용	2022-02	2022-02-01	2022-02-04	기타
3	부과고지	530420-*****	정*복	마스크 미착용	2022-02	2022-02-01	2022-02-07	기타
4	부과고지	830123-*****	박*선	마스크 미착용	2022-02	2022-02-01	2022-02-07	기타
5	부과고지	740502-*****	박*혜	마스크 미착용	2022-02	2022-02-01	2022-02-08	폐문부재
6	부과고지	490726-*****	백*성	마스크 미착용	2022-03	2022-03-03	2022-03-14	기타
7	부과고지	720507-*****	김*식	마스크 미착용	2022-03	2022-03-03	2022-03-14	기타
8	부과고지	640904-*****	김*천	마스크 미착용	2022-03	2022-03-03	2022-03-14	기타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부과일자	
	부과번호		부과금액	

이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신청인 (인)

서울시장 귀하

※ 문의전화 : 02-2133-4359 FAX : 02-768-8897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845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 후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 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2. 3. 24.~2022. 4. 7.(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납세번호	납세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	입차일자	입차시간	출차일자	출차시간	출차 시간	부과 금액	주차요금	기신금	납부자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	20212784	00004733921420120 211125001942	170하7570	스타리아 (STARIA)	한강진역	008:30	44470	15:30	44471	00:00	40,800	0	40,800	주식회사 더캐리	경기도양시일산동구백미로 195	수취인불명	2022-04-01	
2	20213115	00004733921420120 211225002012	178하9574	코나(KONA)	종묘	013:27	44514	20:28	44515	09:55	32,400	0	32,400	방0용	경기동두천시생면로72	주소불명	2022-04-01	
3	20213175	00004733921420120 211225001539	165하1091	아반떼(AVANTE)	신대방역	003:30	44523	19:23	44523	22:53	10,900	0	10,900	안0근	충남보령시웅천읍장터6길	수취인불명	2022-04-01	
4	20213180	00004733921420120 211225001490	39하3634	베뉴(VENUE)	사당노외	006:11	44529	16:47	44529	22:58	30,000	0	30,000	순0영	경기도의왕시약수터3길	이시불명	2022-04-01	

2022 - 847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2. 3. 24. ~ 2022. 4. 7.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65503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7(대흥동 18-183)	수도요금	19. 03. 외 10납기	11회	770,7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 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8-183 토지, 건물	오현옥	541207-2***** (등기번호110500154533 1 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7 (대흥동 18-183)	770,750원	2022.4.7.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다영(☎02-3146-36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2 - 47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6호(2017.07.27.)로 결정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창신동 278번지 일대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건축한계선 및 필지분할선 신설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01.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종로구청장

1.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필지		계획내용	면적(㎡)	필지		계획내용	
		위치	면적(㎡)			위치	면적(㎡)		
5	3,422.4	창신동 237	103.5	공동개발 지정	3,458.6 (증 36.2)	창신동 237	103.5	공동개발 지정	
		창신동 241	114.6			창신동 241	114.6		
		창신동 242	99.2			창신동 242	99.2		
		창신동 243	130			창신동 243	130		
		창신동 244-1	89.3			창신동 244-1	89.3		
		창신동 244-2	70.6			창신동 244-2	70.6		
		창신동 244-4	57.8			창신동 244-4	57.8		
		창신동 245	49.6			창신동 245	49.6		
		창신동 247	82.6			창신동 247	82.6		
		창신동 255-1	900			창신동 255-1	900		
		창신동 260	94			창신동 260	94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필지		면적(㎡)	필지		
		위치	면적(㎡)		계획내용	위치	
		창신동 261	111.8		창신동 261	111.8	
		창신동 263	55.1		창신동 263	55.1	
		창신동 264	79.7		창신동 264	79.7	
		창신동 265	74.4		창신동 265	74.4	
		창신동 271	95.9		창신동 271	95.9	
		창신동 273	162		창신동 273	162	
		창신동 276-4	20.7	도로	창신동 276-4	20.7	도로
		창신동 276-1	141.2		창신동 276-1	141.2	
		창신동 275	86	공동개발 지정	창신동 275	86	<토지합병> 창신동 283, 284-3 <자율적 공동개발> ① 276-1, 275, 278, 279, 280, 283, 263-13 ② 278, 279, 281-1, 281-3, 282-1, 283, 263-13
		창신동 278	99.2			창신동 278	
		창신동 279	142.1	공동개발 지정	창신동 279	142.1	
		창신동 280	66.1			창신동 280	
		창신동 281-1	76.2		창신동 281-1	76.2	
		창신동 281-3	115.7		창신동 281-3	115.7	
		창신동 282-1	152		창신동 282-1	152	
		창신동 283	71.1	공동개발 지정	창신동 283	153.1	
		창신동 284-3	82			창신동 263-13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변경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구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종로변, 지봉로변	3m 후퇴	-
	성곽길 진입도로	2m 후퇴	-
	이면부 진입도로	1m 후퇴	창신동 275, 276-1, 278 건축한계선(1m) 신설

다.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결정 : 변경

○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 23

()

가

건설부 고시 제1980-53호(1980. 2. 27.)로 도시계획시설(철도) 최초 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12호(2021. 9. 16.)로 결정(변경)된 우리 구 필동1가 40-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0-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 명 칭: 도시계획시설(철도 연결통로) 개설 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

- 규 모: L= 27~30m, B= 2~6.6m, H= 27.5~40.7m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 면 적: 161.6㎡(대지 124.1㎡, 도로 37.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충무로피에프브이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65호(충무로4가, 일흥빌딩)

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년 12월31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준공 직후 무상귀속(관련 기관) 및 사유지 내 연결통로 구분지상권 설정

아.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을 보입니다.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점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관 계 인
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0-1	대	181.8	57.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
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1	대	67.1	22.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
3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5	대	30.4	29.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
4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6	대	5.0	5.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
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7	대	5.0	5.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
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8	대	4.6	4.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	-
7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13	도로	0.3	0.3	재단법인형실재단 외 2인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 102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27	-	-	-
8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13-2	도로	2,263.6	11.9	서울특별시	-	-	-	-
9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22-1	도로	2,688.4	1.1	국 (건설교통부)	-	-	-	-
1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1-10	도로	310.6	24.2	서울특별시	-	-	-	-
	계	-	-	5,566.8	161.6	-	-	-	-	-

2022 - 5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차장	용답동 53-3,4,5,6,7,8,9번지	581.7	-	581.7	2016. 9. 22. (성동구 고시 제2016-86호)	
변경	주차장	용답동 53-4,5,6,7,8번지 53-3,9제외	581.7	감) 155.3	426.4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용답동 53-4번지 외 4필지(426.4㎡) • 용답동 53-3, 9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지에 대해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일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2. 결정도 및 지형도 : 별첨

※ 게재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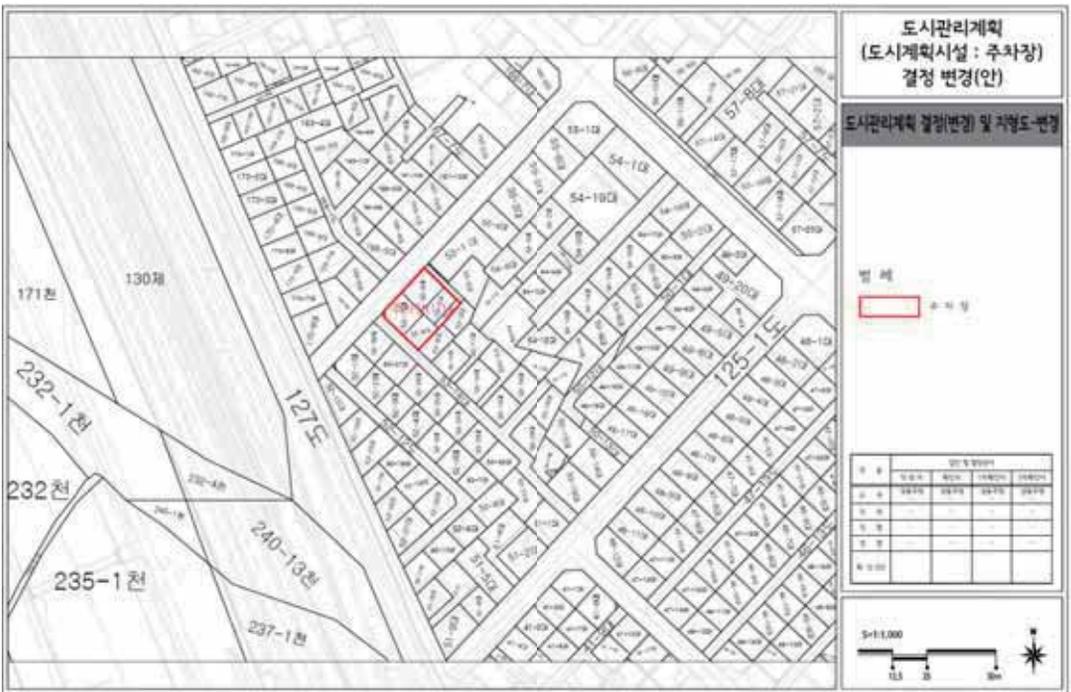
3.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 -555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합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도 (기정)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도 (변경) >



2022 - 56

6,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47(2010.12.09)호 및 제2009-84(2009.03.0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성동구 행당동 130-125일대 행당제6,7구역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행당6·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시설물 및 녹지 설치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30-125번지 일대

○ 행당제6,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다. 공원면적 : 14,430.30㎡

라.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02-2286-5654)

2022 - 57

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84(2009.3.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성동구 행당동 128-1번지 일대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행당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시설물 및 녹지 설치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1번지 일대

다. 공원면적 : 3,208.0m²

라.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02-2286-5654)

2022 - 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결정을 실효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중랑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1	12	집산도로	1,620	중화동 342-5	상봉동 517-23	일반도로	2001.11.26. (중랑고' 01-88호)	
변경	중로	3	61	4~12	집산도로	523	상봉동 496	상봉동 61-4	일반도로	2001.11.26. (중랑고' 01-88호)	부분실효 (미집행구간)
기정	소로	3	-	6	집산도로	300	상봉동 276-67	상봉동 56-9	일반도로	2001.11.26. (중랑고' 01-88호)	
변경	소로	3	-	6	집산도로	105	상봉동 279-46	상봉동 279-121	일반도로	2001.11.26. (중랑고' 01-88호)	부분실효 (미집행구간)

나.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상봉동 67-10 일대	482	감)482	0	2001.11.26. (중랑고' 01-88호)	실효

2. 실효일자 : 2021. 11. 27.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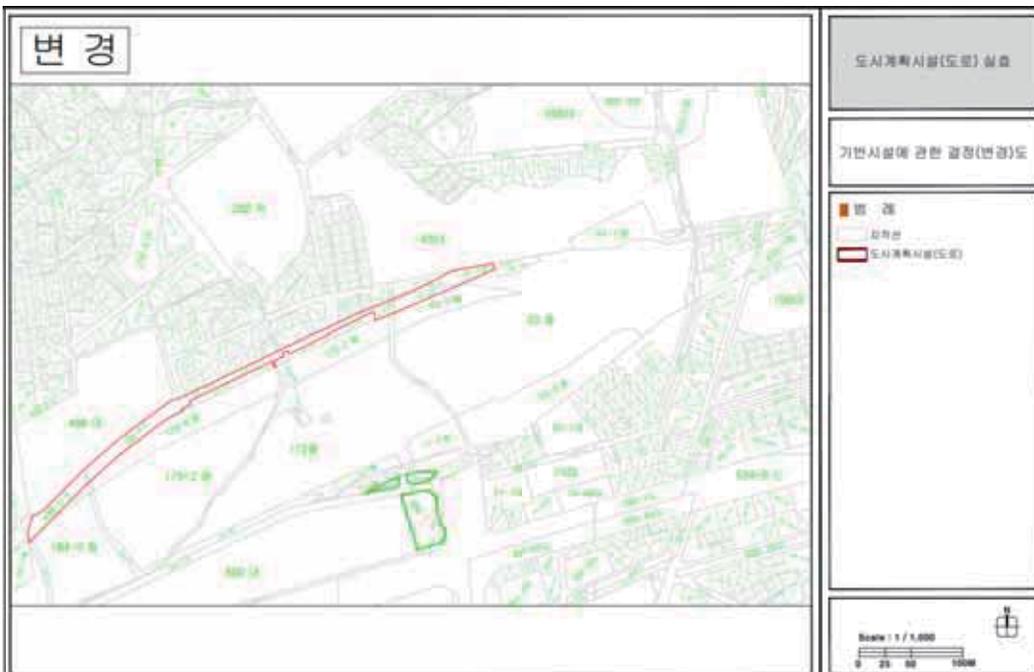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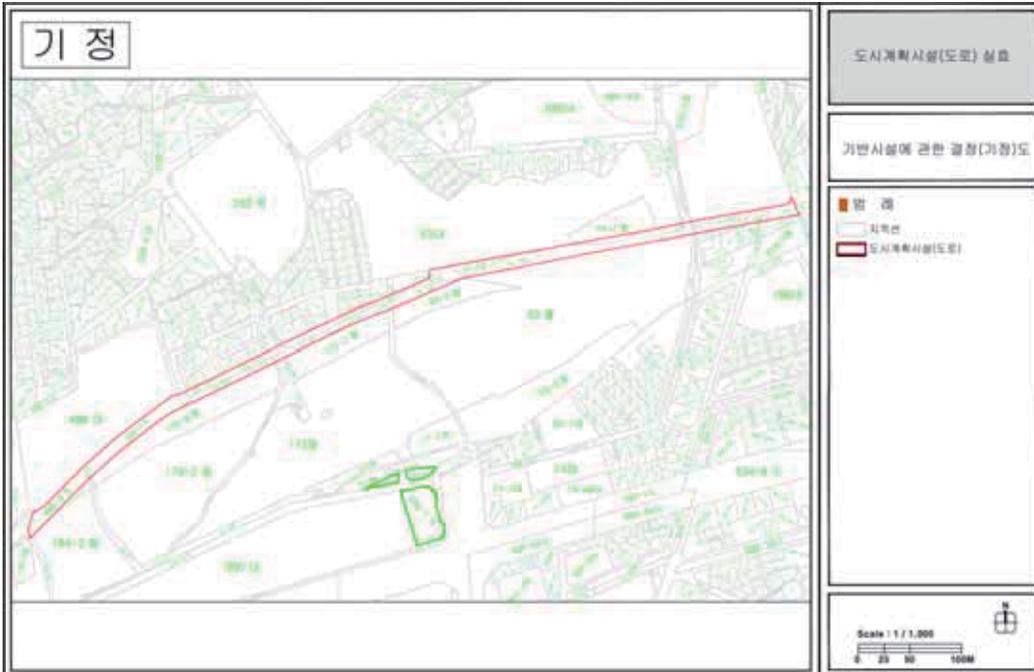
4.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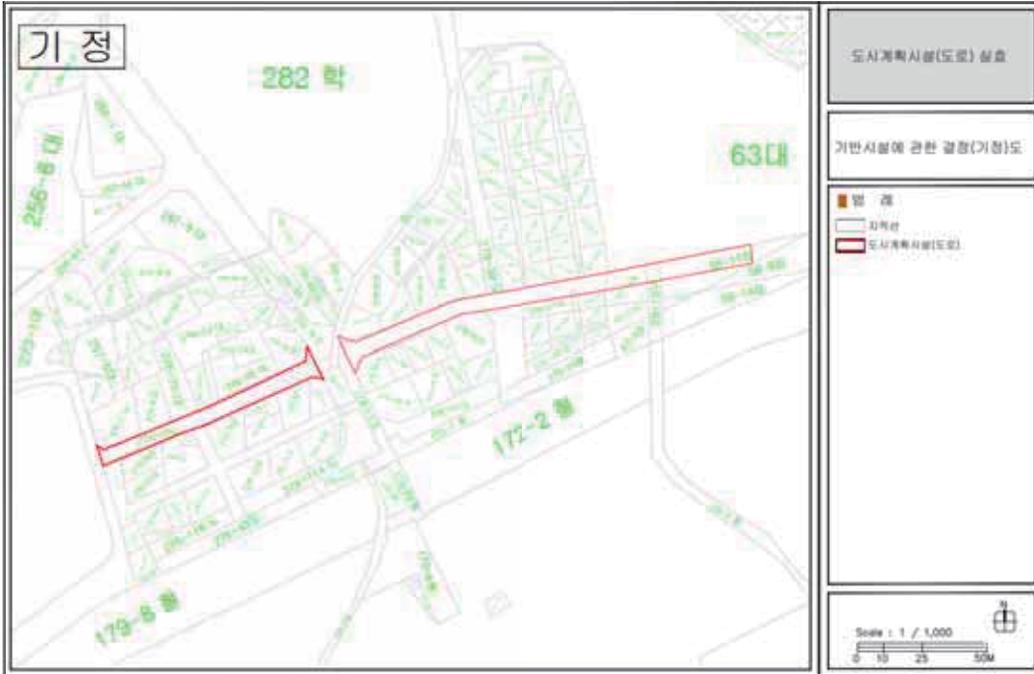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 ☎ 2094-2184)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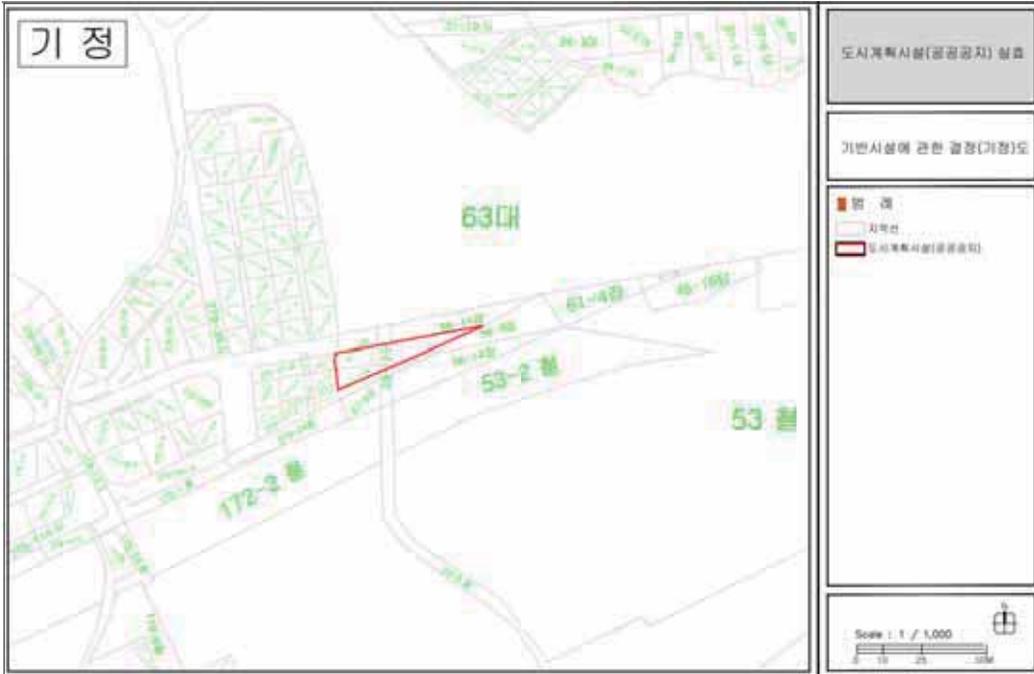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
- 도로(중화동 342-5 ~ 상봉동 517-23)



○ 도로(상봉동 276-67 ~ 상봉동 56-9)



○ 공공공지(상봉동 67-10 일대)



2022 - 49

()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1-131호(2021.07.0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성북동 113-21 외 9필지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면적	최초 결정일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21 외 9필지	681㎡	2017-08-03 (성북구고시 제2017-108호)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다. 사업기간: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2022.12.31.까지

라. 취소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절차 보완 후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자 함

마. 토지 및 물건 조서: 붙임과 같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문화체육과(☎2241-2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 업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 업 의 명 칭 :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 (㎡)	소유권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113-21	대	36	36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정*숙				
2	성북구 성북동 113-22	대	122	122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시암 진 최*주*소)	장*자	영동음 세마을교회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95	근저당권	시암
3	성북구 성북동 113-24	대	60	60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한*순	신한은행 (성북동지점)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113-25	대	33	33	서울 노원구 상계로 81길 **	한*연				
5	성북구 성북동 113-26	대	76	76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오*훈				
6	성북구 성북동 113-27	대	102	102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권*정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7	성북구 성북동 113-74	대	53	53	별명	홍*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 성북구 보문로168	압류	세무2과
8	성북구 성북동 113-72	대	142	142	서울 성북구 성북로10길 **	백*설 (1/2)	하나은행 (장충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서울 성북구 성북로10길 **	오*희 (1/2)				
9	성북구 성북동 113-60	대	56	56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북들길251-*** **동 **호	김*빈				
10	성북구 성북동 113-61	대	1	1	별명	이*용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구역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113-21	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짐 단층주택 76㎡	건물 76	주택	김*현	서울 용산구 우서단로10길 ***~**호				
2	성북구 성북동 113-22	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외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89㎡	건물 77 창고 8 창고 4	주택	장*자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사망 전 최후주소)	용문동 용문응 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95	근저당권	시망
3	성북구 성북동 113-24	건물	목조시멘트기외지붕 단층주택 60㎡	건물 60	주택	하*철	경기 부천시 작동로21길 **	신한은행 (성북동지점)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113-25	건물	목조시멘트기외지붕 단층주택 62㎡	건물 57 보일러실 5	주택	한*연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				
5	성북구 성북동 113-26	건물	시멘트조 단층주택 101㎡	건물 99 창고 2	주택	오*훈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				
6	성북구 성북동 113-27	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외지붕 단층주택 129㎡	건물 125 보일러실 4	주택	권*정	서울 성북구 성북로 21길 **~***	국민은행 (삼전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7	성북구 성북동 113-72	건물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외 및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122㎡	주택 120 창고 2	주택	나*근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95 **~*동 **호	하나은행 (성북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2022 - 52

()
 가 ()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0-143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21-65호(2021.04.22.)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사업명 : 월계역3번출구 인근 보행환경개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259-1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성 명 :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월계역3번출구 인근- 보행환경개선사업
4. 사업의 내용 : 공공공지 조성 (변경없음)
 - 면 적 : 428㎡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간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변경없음)
7.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8.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 53

() 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81(2021.06.17.)호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2-2(2022.01.06.)호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55-3 ~ 중계동 산136-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설치사업
- 명칭 : 신내-중계 전력구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명	규 모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노원구 공릉동 155-3	노원구 중계동 산136-2	-	753.9	776.2	서고 2021-281호 ('21.6.17)	도로 중복결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아.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2),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02-2096-45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별첨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46,609	776.2			
1	공릉동	산2	임	12,148	95.9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2	공릉동	148	전	988	7.2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3	공릉동	155	대	10,252	19.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4	공릉동	155-3	천	3,643	45.2	건설부		
5	공릉동	155-1	천	3,947	36.8	노원구		
6	공릉동	산2-4	도	3,865	138.7	서울시		
7	중계동	28-34	도	4	0.5	기획재정부		
8	중계동	28-33	도	104	25.5	서울시		
9	중계동	28-32	도	13	0.1	서울시		
10	중계동	산136-2	도	7,150	169.4	서울시		
11	하계동	산16-63	도	4,491	237.8	서울시		

2022 - 52

(:)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 3.24.)로 결정된 지하철 7호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환기구 이설에 따른 정거장 면적 변경 및 위치표기 정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장승배기역)	도시철도	동작구 상도동 366일대	5,804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1993. 3.24.)	
변경	철도 (장승배기역)	도시철도	동작구 상도동 26-20일대	5,934.3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1993. 3.24.)	장승배기역(7호선) 환기구 이설 증) 130.3㎡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철도 (장승배기역)	· 장승배기역 환기구 이설 설치 - 면적 : 5,804㎡ → 5,934.3㎡ 증) 130.3㎡	- 상도동 373-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장승배기역 환기구 이설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하고, - 기존 환기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상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변경도서에 표기함
		· 시설 위치명 - 기정 : 동작구 상도동 366 일대 → 변경 : 동작구 상도동 26-20 일대	- 도시계획시설 최초결정조서에 표기된 위치(주소)가 실제위치와 상이 하여 정정

3. 관계도서 : 생략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33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 129

(), 12
(), ()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06.20.)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12차아파트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신반포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48,929.7	-	1,548,929.7	

2.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합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기정	1,548,929.7	238,495.9	388,886.8	921,547.0	대상지 (3주구)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1,548,929.70	100.0	1,548,929.70	100.0	변경없음
주거 용지	소계	937,065.19	60.5	937,065.19	60.5	-
	주택용지	937,065.19	60.5	937,065.19	60.5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중심 시설 용지	소계	96,005.50	6.2	96,005.50	6.2	-
	지구중심	37,698.50	2.4	37,698.50	2.4	변경없음
	주구중심	23,965.80	1.6	23,965.80	1.6	변경없음
	분구중심	34,341.20	2.2	34,341.20	2.2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487,820.81	31.5	487,820.81	31.5	-
	도로용지	229,023.90	14.8	229,023.90	14.8	변경없음
	공원용지	59,401.77	3.9	59,401.77	3.9	변경없음
	녹 지	68,713.04	4.4	68,713.04	4.4	변경없음
	광 장	972.90	0.1	972.90	0.1	변경없음
	학교용지	118,440.70	7.6	118,440.70	7.6	변경없음
	공공청사	8,944.40	0.6	8,944.40	0.6	변경없음
	문화시설	2,324.10	0.1	2,324.10	0.1	변경없음
기타	소계	28,038.20	1.8	28,038.20	1.8	-
	종교용지	10,849.30	0.7	10,849.30	0.7	변경없음
	문화시설	4,012.00	0.3	4,012.00	0.3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13,176.90	0.8	13,176.90	0.8	변경없음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1)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합계		921,547.00	100.0	921,547.00	100.0	변경없음
주거 용지	소계	575,206.33	62.4	575,206.33	62.4	-
	주택용지	575,206.33	62.4	575,206.33	62.4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중심 시설 용지	소계	35,213.90	3.8	35,213.90	3.8	-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주구중심	8,243.10	0.9	8,243.10	0.9	변경없음
	분구중심	26,970.80	2.9	26,970.80	2.9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290,045.87	31.5	290,045.87	31.5	-
	도로용지	154,700.80	16.8	154,700.80	16.8	변경없음
	공원용지	35,860.57	3.8	35,860.57	3.8	변경없음
	녹 지	40,874.00	4.4	40,874.00	4.4	변경없음
	광 장	972.90	0.1	972.90	0.1	변경없음
	학교용지	51,019.90	5.6	51,019.90	5.6	변경없음
	공공청사	6,617.70	0.7	6,617.70	0.7	변경없음
	문화시설	-	-	-	-	변경없음
기타	소계	21,080.90	2.3	21,080.90	2.3	-
	종교용지	3,892.00	0.4	3,892.00	0.4	변경없음
	문화시설	4,012.00	0.5	4,012.00	0.5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13,176.90	1.4	13,176.90	1.4	변경없음

가) 신반포12차아파트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17,712.2	100.0	-	
주택용지	14,580.4	82.3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분구중심	2,609.6	14.7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용지	도로	522.2	3.0	-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용지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구중심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주택용지 선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구중심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구중심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주택용지 선형 변경

3.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없음

- 가. 용도규제
- 나. 건축선의 지정
- 다. 건폐율의 규제
- 라. 용적률의 규제
- 마. 세대밀도
- 바. 건축물의 높이
- 사.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아.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 자.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 차.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카. 경관에 관한 사항
- 타.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4.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건축계획 : 변경없음
5.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계획 : 변경

- 가. 단지별 개발시행계획(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	위치	대지면적 (주택용지)	공공용지면적(m ²)			공공용지 부담률(%)	비고
				계	도로	현금 (환산부지 면적)		
기정	신반포 12차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50-5	17,712.2 (14,580.4)	522.2	522.2	-	2.95	
변경	신반포 12차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50-5	17,712.2 (14,580.4)	1,044.4	522.2	522.2	5.90	증) 522.2m ² (증2.95%)

II.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 :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17,712.2	-	17,712.2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12.2	-	17,712.2	100.00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522.2	-	522.2	2.95	
주택용지		14,580.4	-	14,580.4	82.32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중심생활시설용지	분구중심	2,609.6	-	2,609.6	14.73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17,712.2	-	17,712.2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712.2	-	17,712.2	100.0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h	21	집산 도로	599	잠원동 78	잠원동 84	일반 도로	-	-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변경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7,712.2	획지1	14,580.4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4	-	-	4	-	선형변경(면적변경 없음)
			획지2	2,609.6							

마. 건축시설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변경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7,712.2	획지1 (공동주택)	14,580.4	잠원동 50-5번지	공동주택	20.0	252.21	299.85	120m (35층이하)																				
			획지2 (분구중심)	2,609.6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분구중심용도	50.0	250.00	-	관련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계획 479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세대수</th> <th>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479</td> <td>(100.00%)</td> <td>공공주택* 56세대</td> </tr> <tr> <td>60㎡이하</td> <td>290</td> <td>(60.54%)</td> <td>공공주택 56세대</td> </tr> <tr> <td>60~85㎡이하</td> <td>126</td> <td>(26.31%)</td> <td>-</td> </tr> <tr> <td>85㎡초과</td> <td>63</td> <td>(13.15%)</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86.85%) • 본 고시문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 - 공공주택(공공기여) 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름(해당사항 없음)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름 ※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은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계획이며,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479	(100.00%)	공공주택* 56세대	60㎡이하	290	(60.54%)	공공주택 56세대	60~85㎡이하	126	(26.31%)	-	85㎡초과	63	(13.15%)	-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479	(100.00%)	공공주택* 56세대																											
60㎡이하	290	(60.54%)	공공주택 56세대																											
60~85㎡이하	126	(26.31%)	-																											
85㎡초과	63	(13.15%)	-																											
심의완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이하(초과용적률 47.6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원로 14길변 3m - 그 외 이면부, 도로 및 공원변 3m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2018.06.20.) : 수정가결 [수정사항] - 중심용지(분구중심 : 2,609.6㎡)는 별도 획지로 분할할 것 [조건사항] - 서측 도로(잠원로14길) 확폭계획은 향후 교통성평가시 남측으로 연계되는 나루터로4길의 횡단구성을 고려하고, 대상지 남측 도로(나루터로)와 교차되는 부분의 처리방안(가각부 확폭 등)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할 것 - 건축계획 관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부고속도로변 스카이라인계획 및 북측 공원 연접 주동의 높이계획 정적성을 면밀 검토할 것

■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합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현금 (환산부지면적)		
토지이용계획	17,712.2㎡	14,580.4㎡	1,044.4㎡	522.2㎡	522.2㎡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522.2㎡ + 522.2㎡) - 0㎡ - 0㎡ = 1,044.4㎡ (5.9%)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면적	• 1,044.4㎡ - 도로 522.2㎡ - 현금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522.2㎡						
현금기부채납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 현금기부채납(약 90억) - 환산부지면적 = 현금 기부채납 비용 ÷ 부지가액 = 9,037,193,200원 ÷ 17,306,000원/㎡ = 522.2㎡ ※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납부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 평균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 납부금액 확정						
기준(허용) 용적률	• 230% 이하(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00%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 + 1.3a) = 230% × (1 + 1.3 × 0.07429) ⇒ 정비계획용적률 = 252.2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a=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044.4㎡ / 14,058.2㎡ = 0.07429 </div>						
법적 상한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건축심의회서 최종 확정						

바.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획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299.85%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252.21%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299.85% - 252.21% = 47.64%			
	증가된 용적률의 50%	$47.64\% \times 0.5 = 23.82\%$ $: 14,580.4\text{m}^2(\text{대지면적}) \times 23.82\% = 3,473.05\text{m}^2$			
	의무 연면적	3,473.05m ² 이상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44.98m ²	62.68m ²	56	3,510.08m ²	> 3,473.05m ² (의무)
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구분	세대규모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44.98m ²	62.68m ²	56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기여)	-	-	-	-	해당사항 없음

1)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법정상한용적을 완화)	공공주택 비율(%)
합 계	479	100.0	423	56	11.7
60㎡이하	290	60.5	234	56	11.7
60~85㎡이하	126	26.3	126	-	-
85㎡초과	63	13.2	63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사.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보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재난방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수재해	· 계획구역의 입지상 한강변에 위치하나 기존 제방시설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음. 그러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 해당사항 없음
	화재	·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을	30%	○ •생태면적을 30%이상 계획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전면투수포장 적용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면적 I, 녹지모양 III, 내부연결성 III, 외부 연결성 III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정녹지 배치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사업대상지는 기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최소화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흠막이공법 실시
비오름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름유형평가 3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북측에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음	•건물높이, 배지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활 환경	경관	Skyline보전	○	•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공원이 입지하고 있음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광장 등 주민공동 시설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 계획수립	○	•잠원로14길 및 나루터로에 보행자전용도로설치	-
		자전거전용 도로 계획수립	○	•잠원로14길 및 나루터로에 자전거 도로 설치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총11개소 (110대분)로 법 정주차대수대비 20.9%로 확보
추가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 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도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현황	변경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후 4년이내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324	증)155	479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범위	내 용	비 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절대 정화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인 지역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학교보건법 제6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상대 정화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기준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 호텔,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호가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차.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 용	비 고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은폐장소를 최소화 • 접근통제: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 • 영역성 강화: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범의식을 강화 • 활동의 활성화: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유도 •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 유지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가로등, 보인등, CCTV 체계유지 • 공가 발생시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가구, 페이بل 등 수거 • 공가 밀집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CCTV 및 보인등 설치 • 구역내 모든공사에 대한 순찰, 점검 등 범죄예방활동 • 단지내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순찰요원 배치 (24시간 운영)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반포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	증)17,712.2	17,712.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정비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17,712.2	-	17,712.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712.2	-	17,712.2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h	21	집산 도로	599	잠원동 78	잠원동 84	일반 도로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이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신설	소 계		17,190.0	100.0	
	획지1	주택용지	14,580.4	84.82%	
	획지2	분구중심	2,609.6	15.18%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공동주택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상 분구중심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3)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20 이하 주택용지
	획지2		50 이하 분구중심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제3종일반 주거지역	230	-	252.21	299.85	주택용지
	획지2		-	-	250.00	-	분구중심

다) 높이 계획

구분	위치	높이(최고층수)	비고
신설	획지1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120m(35층이하) 주택용지
	획지2		관련법규에 따름 분구중심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원로 14길변 3m - 그 외 이면부, 도로 및 공원변 3m 	-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획지1	주차출입구	• 잠원로14길변에 위치	주택용지
	주차장	•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하로 확보할 계획	
획지2	주차출입구	• 나루터로변에 위치	분구중심
	주차장	• 주차장은 쾌적한 근린생활시설이용을 고려하여 지하로 확보할 계획	

나) 환경관리계획

검토행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환경	생태면적율	30%	○	•생태면적을 30%이상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투수포장 적용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면적 I, 녹지모양 III, 내부연결성 III, 외부연결성 III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사업대상지는 기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최소화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흠막이공법 실시
비오름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름유형평가 3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활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북측에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음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경관	Skyline보전	○	•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공원이 입지하고 있음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광장 등 주민공동 시설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 계획수립	○	•잠원로14길 및 나루터로에 보행자전용도로설치	-
		자전거전용 도로 계획수립	○	•잠원로14길 및 나루터로에 자전거 도로 설치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총11개소 (110대분)로 법정주차대수대비 20.9%로 확보
추가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다)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비율(%)
합 계	479	100.0	423	56	11.7
60㎡이하	290	60.5	234	56	11.7
60~85㎡이하	126	26.3	126	-	-
85㎡초과	63	13.2	63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IV.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수정가결	[수정사항] • 중심용지(분구중심 : 2,609.6㎡)는 별도 획지로 분할할 것	[수정사항 반영함] • 중심용지(분구중심 : 2,609.6㎡)를 별도 획지로 분할하여 계획하였음 - 분구중심 협의제(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획지 분할 및 형태 변경에 대해 협의 완료 함
	[조건사항] • 서측 도로(잠원로14길) 확폭계획은 향후 교통성평가시 남측으로 연계되는 나루터로4길의 횡단구성을 고려하고, 대상지 남측 도로(나루터로)와 교차되는 부분의 처리방안(가각부 확폭 등)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할 것	•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서측 도로(잠원로14길) 남측으로 연계되는 나루터로4길의 횡단구성을 고려하고, 대상지 남측 도로(나루터로)와 교차되는 부분의 처리방안(가각부 확폭 등)에 대해 조치하겠음
	• 건축계획 관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부고속도로변 스카이라인계획 및 복측 공원 연결 주동의 높이계획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변 스카이라인계획 및 복측 공원 연결 주동의 높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정비계획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7. 건축계획(배치도)(예시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열람장소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38)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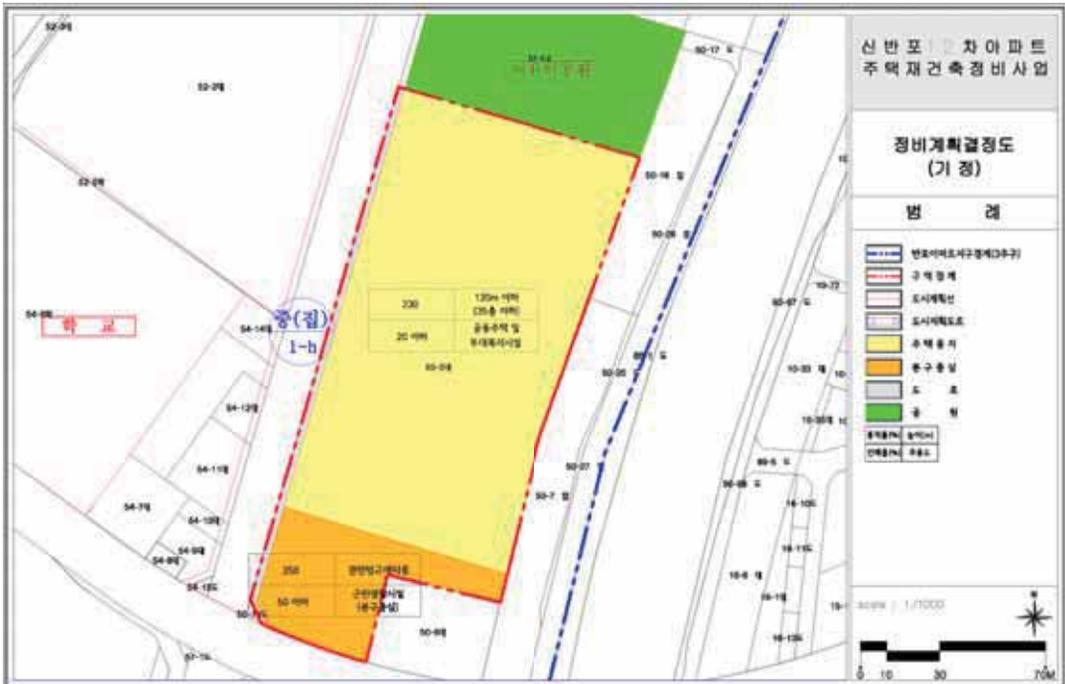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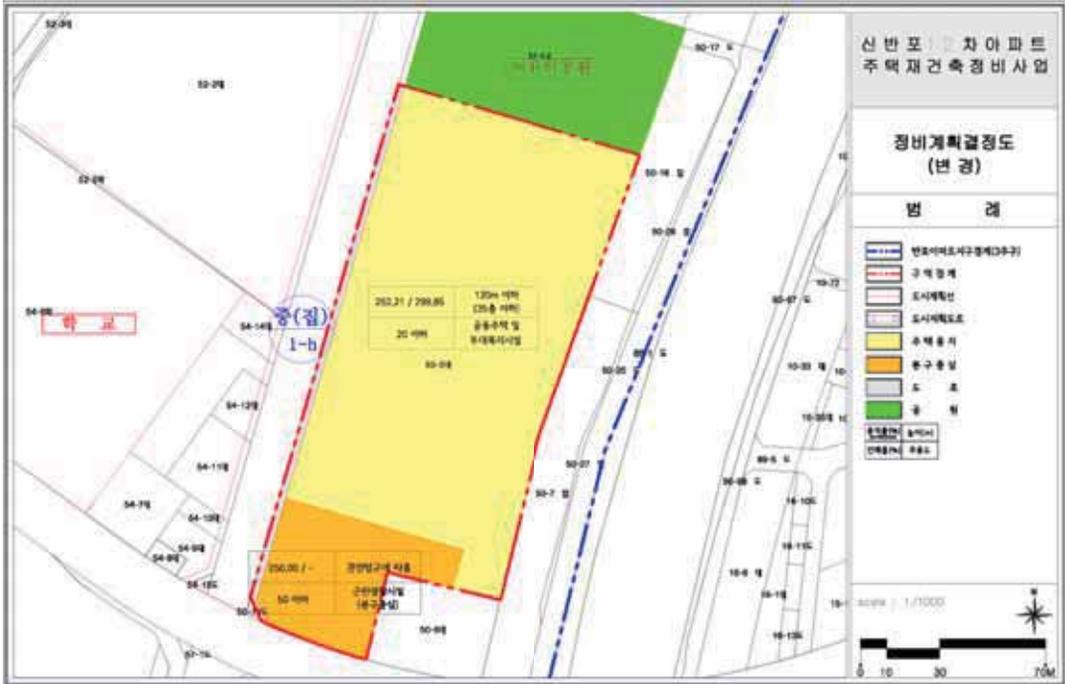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 기 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기 정



- 변경



■ 건축계획(배치도) (예시도)

- 2018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18.06.20) 심의시 -



- 심의 수정사항 반영시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배치도)이 확정됨

2022 - 64

() () 가

1.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07.24.)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7호(2019.06.27.)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0-42호(2020.05.01.)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8호선 송파역 도시계획시설(철도)의 출입구 이설 및 연결통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칭: 8호선 송파역 출입구 이설 및 연결통로 개설 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60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영열
-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94, 4층(석촌동, 일신빌딩)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2020.08.21. ~ 2022.03.19.
- 변경: 2020.08.21. ~ 2022.07.29.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물 준공 후 서울교통공사로 무상귀속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관련조서 생략(변경없음)

아.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 346

() 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4-139(1994.04.28.)호로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04-116(2004.11.10.)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13-3(2013.01.0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하고 마포구고시 제2014-82(2014.05.08)호, 제2015-151(2015.08.27.)호, 제2016-117(2016.9.8.)호 및 제2017-103(2017.07.13.)호, 제2018-164(2018.12.06.)호, 제2020-133(2020.09.03.)호 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포구 토정로 56(당인동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3)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 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토정로 56(당인동 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 2) 명칭 :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면적	118,779㎡	144,660㎡	시설결정 면적 변경 (감 4,119㎡)
사업규모	건축물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112,009.38㎡	건축물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105,631.67㎡	연면적 감 6,377.71㎡ (감 5.69%)
	발전설비 800MW급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1) 성명(상호)

당 초	변 경	비 고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김호빈	대표자 변경

2)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보령북로 16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
2013.01.03. ~ 2022.02.28.	2013.01.03. ~ 2024.12.31.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예정 일정에 맞추어 사업기간 연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마포구 당인동	1	대지	대지	68,101.0	62,182.0	65,304.0	61,343.7	한국중부발 전 쥬	한국중부발 전 쥬	면적 변경
2	마포구 당인동	1-8	대지		259.0		259.0		한국중부발 전 쥬		금회 제척
3	마포구 당인동	1-9	대지		930.0		930.0		한국중부발 전 쥬		
4	마포구 당인동	43-2	대지		30.0		30.0		한국중부발 전 쥬		
5	마포구 당인동	44-1	대지		63.0		63.0		한국중부발 전 쥬		
6	마포구 당인동	44-2	대지		23.0		23.0		한국중부발 전 쥬		
7	마포구 당인동	45-2	대지		1.0		1.0		한국중부발 전 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8	마포구 당인동	45-3	대지		241.0		241.0		한국중부발 전(주)		
9	마포구 당인동	46-2	대지		66.0		66.0		한국중부발 전(주)		
10	마포구 합정동	47-5	대지		689.0		689.0		한국중부발 전(주)		
11	마포구 당인동	5-1	대지		235.0		235.0		한국중부발 전(주)		
12	마포구 당인동	5-2	대지		86.0		86.0		한국중부발 전(주)		
13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53-1	대지	대지	166.0	166.0	93.0	166.0	한국중부발 전(주)	한국중부발 전(주)	면적 변경
14	마포구 합정동	53-5	대지	대지	288.0	288.0	288.0	288.0	한국중부발 전(주)	한국중부발 전(주)	
15	마포구 합정동	53-6	대지		62.0		62.0		한국중부발 전(주)		금회 제척
16	마포구 합정동	53-8	대지		11.0		11.0		한국중부발 전(주)		
17	마포구 합정동	55-1	대지	대지	42,625.0	42,625.0	40,732.0	41,964.6	한국중부발 전(주)	한국중부발 전(주)	면적 변경
18	마포구 합정동	55-13	대지		93.0		93.0		한국중부발 전(주)		금회 제척
19	마포구 합정동	55-14	대지		2.0		2.0		한국중부발 전(주)		
20	마포구 합정동	55-15	대지		182.0		182.0		한국중부발 전(주)		
21	마포구 합정동	55-16	대지		292.0		292.0		한국중부발 전(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2	마포구 합정동	63-3	대지		7.0		7.0		한국중부발 전 쉐		
23	마포구 당인동	68-2	대지		36.0		36.0		한국중부발 전 쉐		
24	마포구 당인동	68-3	대지		43.0		43.0		한국중부발 전 쉐		
25	마포구 당인동	75-5	대지	대지	103.0	103.0	13.0	103.0	한국중부발 전 쉐	한국중부발 전 쉐	면적 변경
26	마포구 당인동	75-6	대지		22.0		22.0		한국중부발 전 쉐		금회 제척
27	마포구 당인동	75-7	대지		13.0		13.0		한국중부발 전 쉐		
28	마포구 당인동	75-8	대지		14.0		14.0		한국중부발 전 쉐		
29	마포구 당인동	75-9	대지		23.0		23.0		한국중부발 전 쉐		
30	마포구 당인동	75-10	대지		18.0		18.0		한국중부발 전 쉐		
31	마포구 상수동	349-1 9	대지		1,101.0		1,101.0		한국중부발 전 쉐		
32	마포구 당인동	32-2	도로	잡	2.0	2.0	2.0	2.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쉐	
33	마포구 당인동	32-3	도로	잡	65.0	65.0	65.0	65.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쉐	
34	마포구 당인동	32-4	도로	잡	19.0	19.0	19.0	19.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쉐	
35	마포구 당인동	44-3	도로	대지	700.0	700.0	700.0	700.0	서울특별시	한국중부발 전 쉐	
36	마포구 합정동	50-2	도로	도로	20.0	20.0	20.0	20.0	한국중부발 전 쉐	한국중부발 전 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7	마포구 합정동	50-7	도로	잡	710.0	710.0	710.0	710.0	서울특별시	한국중부발 전 주	
38	마포구 합정동	50-9	도로		8.0		8.0		한국중부발 전 주		금회 제척
39	마포구 합정동	52-7	도로	잡	34.0	34.0	34.0	34.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40	마포구 합정동	53-2	도로	도로	46.0	46.0	46.0	46.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41	마포구 합정동	54-2	도로	잡	50.0	50.0	50.0	50.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42	마포구 상수동	349-2 0	도로		410.0		410.0		서울특별시		금회 제척
43	마포구 합정동	50-4	전	전	570.0	570.0	235.0	292.4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면적 변경
44	마포구 합정동	52-6	전		60.0		60.0		한국중부발 전 주		금회 제척
45	마포구 합정동	53-7	전	전	10.0	10.0	10.0	10.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46	마포구 당인동	74-2	철도	철도	3,495.0	3,495.0	3,343.0	3,378.6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면적 변경
47	마포구 당인동	74-8	철도		45.0		45.0		한국중부발 전 주		금회 제척
48	마포구 당인동	74-9	철도	철도	20.0	20.0	20.0	20.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49	마포구 합정동	53-3	구거	구거	46.0	46.0	46.0	46.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50	마포구 합정동	53-4	구거	잡	33.0	33.0	33.0	33.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51	마포구 합정동	54-1	구거	구거	35.0	35.0	2.0	35.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면적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2	마포구 합정동	54-3	구거		27.0		27.0		한국중부발 전 쉼		금회 제척
53	마포구 합정동	54-4	구거		6.0		6.0		한국중부발 전 쉼		
54	마포구 당인동	1-11	천	잡	8.0	8.0	8.0	8.0	한국중부발 전 쉼	한국중부발 전 쉼	
55	마포구 당인동	1-12	천	잡	500.0	500.0	500.0	500.0	한국중부발 전 쉼	한국중부발 전 쉼	
56	마포구 당인동	1-13	천	잡	67.0	67.0	67.0	67.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쉼	
57	마포구 당인동	1-14	천	잡	282.0	282.0	282.0	282.0	한국중부발 전 쉼	한국중부발 전 쉼	
58	마포구 당인동	1-15	천	잡	11.0	11.0	11.0	11.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쉼	
59	마포구 당인동	1-16	천	잡	152.0	152.0	152.0	152.0	한국중부발 전 쉼	한국중부발 전 쉼	
60	마포구 당인동	1-17	천	잡	2.0	2.0	2.0	2.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쉼	
61	마포구 당인동	1-18	천	잡	8.0	8.0	8.0	8.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쉼	
62	마포구 합정동	72-8	천	잡	170.0	170.0	170.0	170.0	한국중부발 전 쉼	한국중부발 전 쉼	
63	마포구 합정동	72-9	천	잡	49.0	49.0	49.0	49.0	한국중부발 전 쉼	한국중부발 전 쉼	
64	마포구 합정동	72-10	천	잡	296.0	296.0	296.0	296.0	한국중부발 전 쉼	한국중부발 전 쉼	
65	마포구 합정동	72-11	천	잡	12.0	12.0	12.0	12.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쉼	
66	마포구 합정동	72-12	천	잡	122.0	122.0	122.0	122.0	한국중부발 전 쉼	한국중부발 전 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67	마포구 합정동	72-13	천	잡	21.0	21.0	21.0	21.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주	
68	마포구 합정동	72-14	천	잡	2.0	2.0	2.0	2.0	한국중부발 전 주	한국중부발 전 주	
69	마포구 합정동	72-15	천	잡	214.0	214.0	214.0	214.0	마포구	한국중부발 전 주	
70	마포구 당인동	1-22		하천		81.0		81.0		마포구	
71	마포구 당인동	1-23		하천		15.0		15.0		마포구	
72	마포구 당인동	1-28		대지		638.0		638.0		한국중부발 전 주	신규 편입
73	마포구 당인동	1-29		대지		2,673.0		2,673.0		한국중부발 전 주	
74	마포구 합정동	50-3		도로		17.0		10.7		한국중부발 전 주	
계					124,152.0	116,559.0	118,779.0	114,660.0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3)

자.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022 - 414

() 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108호(2017.08.03.)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된 【성북동 113-21 외 9필지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서류 열람을 공고 하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제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241-2605)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시행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성북동 113-21 외 9필지	681㎡	2017-08-03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108호)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마.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바. 관계서류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성북구청 7층 문화체육과 (☎ 02-2241-2605)

사. 의견서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2241-2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 업 시 행 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 업 의 명 칭 :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 (㎡)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113-21	대	36	36	정*숙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2	성북구 성북동 113-22	대	122	122	장*자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사망 전 최후주소)	영문용 세마을교회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95	근저당권	사망
3	성북구 성북동 113-24	대	60	60	한*순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신한은행 (성북동지점)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113-26	대	76	76	오*훈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5	성북구 성북동 113-27	대	102	102	권*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2길 ***-**-**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6	성북구 성북동 113-74	대	53	53	홍*영	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 성북구 보문로168	압류	세무2과
7	성북구 성북동 113-61	대	1	1	이*용	불명				
8	성북구 성북동 113-25	대	33	33	한*연	서울 노원구 상계로 31길 **				서울특별시 공공공지 협약취득
9	성북구 성북동 113-60	대	56	56	김*빈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두들길251-**-** **동 **호	서울특별시 공공공지 협약취득			서울특별시 공공공지 협약취득
					백*설 (1/2) 오*희 (1/2)					
10	성북구 성북동 113-72	대	142	142		서울 성북구 성북로10길 ** 서울 성북구 성북로19길 **				서울특별시 공공공지 협약취득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성북동 113-22	건물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89㎡	건물 77 창고 8 창고 4	주택	정*자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시암 전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95	용문동 새마을금고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95	근저당권	사망
2	성북구 성북동 113-26	건물	시멘트조 단층주택 101㎡	건물 99 창고 2	주택	오*훈	서울 성북구 성북로21길					
3	성북구 성북동 113-27	건물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29㎡	건물 125 보일러실 4	주택	권*정	서울 성북구 성북로 21길		국민은행 (삼선교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4	성북구 성북동 113-21	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투트즘 단층주택 76㎡	건물 76	주택	김*현	서울 용산구 우서면로10길 ***, **호					서울특별시 공공저항협약취득
5	성북구 성북동 113-24	건물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0㎡	건물 60	주택	하*철	경기 부천시 직동로21길 **					서울특별시 공공저항협약취득
6	성북구 성북동 113-25	건물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2㎡	건물 57 보일러실 5	주택	한*연	서울 노원구 상계로31길 **					서울특별시 공공저항협약취득
7	성북구 성북동 113-72	건물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및 스투트지붕 단층주택 122㎡	주택 120 창고 2	주택	나*균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95 **동 **호					서울특별시 공공저항협약취득

2022 - 535

()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9호 (2012.8.16.)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9호(2012.8.16.)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9호(2012.8.16.)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43호(2020.6.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물푸레근린공원에 대하여 『고양삼송·지축·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 중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의해 일부 해제됨에 따라 물푸레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은평구청장

가. 공 원 명 : 물푸레근린공원

나.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산101-19번지 일원

다. 면 적 : 147,207.20㎡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의 내용

- 물푸레근린공원(변경) 총괄

1) 부지면적(총괄) : 147,207.2㎡ → 137,723.2㎡

- 물푸레근린공원(변경) 세부

1) 기반시설(도로) : 7,589.36㎡ → 6,347.95㎡

2) 녹지 및 기타 : 136,990.85㎡ → 128,748.26㎡

※ 세부조서 및 도면 별첨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총괄표 (위치 : 은평구 진관동 산101-19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47,207.20	10,216.35	2.00	41.93	41.93	56	137,723.20	8,974.94	2.00	41.93	41.93	56	시설투자 감소 1,241.41㎡			
소 계	7,589.36	7,589.36					6,347.95	6,347.95					감 1,241.41㎡			
도로	5,607.78	5,607.78					4,366.37	4,366.37					감 1,241.41㎡			
광장	1,981.58	1,981.58					1,981.58	1,981.58								
조경 시설																
유 회 시설																
휴 양 시설	1,460.30	1,460.30				53	1,460.30	1,460.30				53				
교 양 시설																
운 동 시설	983.41	983.41					983.41	983.41								
편 익 시설	183.28	183.28	2	41.93	41.93		183.28	183.28	2	41.93	41.93					
관 리 시설						3						3				
누 지 및 기타	136,990.85	(299.81)					128,748.26	(299.81)					감 8,242.59㎡			
시 설 율 (법정 40%)												$(8,974.94/137,723.20) \times 100 = 6.52\%$				
건 폐 율 (법정 10%)												$(41.93/137,723.20) \times 100 = 0.03\%$				

2.시설조서

구	분	경										전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147,207.20	10,216.35	2	41.93	41.93	56			137,723.20	8,974.94	2	41.93	41.93	56	감1,241.41㎡		
		소		7,589.36	7,589.36							6,347.95	6,347.95						감1,241.41㎡	
		도		5,607.78	5,607.78							4,366.37	4,366.37						감1,241.41㎡	
기	반	가		1,981.58	1,981.58					가		1,981.58	1,981.58							
		가-1								가-1										
		가-2	진관동 산110-17입	(1,362.69)	(1,362.69)					가-2	진관동 산110-17입	(1,362.69)	(1,362.69)							
		가-3	진관동 246-20수	(500.79)	(500.79)					가-3	진관동 246-20수	(500.79)	(500.79)							
		가-4	진관동 산101-44입	(94.80)	(94.80)					가-4	진관동 산101-44입	(94.80)	(94.80)							
후	관	가-5	진관동 71전	(23.30)	(23.30)					가-5	진관동 71전	(23.30)	(23.30)							
		소		1,460.30	1,460.30				53			1,460.30	1,460.30					53		
		후	나		1,460.30	1,460.30				53	나		1,460.30	1,460.30					53	
후	관	나-1	진관동 산110-17입	(64.65)	(64.65)				(3)	나-1	진관동 산110-17입	(64.65)	(64.65)					(3)		
		후	나		1,460.30	1,460.30				(3)	나		1,460.30	1,460.30					(3)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나-2	진관동 산110-17임	(29.87)	(29.87)			(2)	나-2	진관동 산110-17임	(29.87)	(29.87)			(2)
	나-3	진관동 산100-27임	(72.50)	(72.50)			(4)	나-3	진관동 산100-27임	(72.50)	(72.50)			(4)
	나-4	진관동 산100-27임	(334.10)	(334.10)			(9)	나-4	진관동 산100-27임	(334.10)	(334.10)			(9)
	나-5	진관동 산101-19임	(189.40)	(189.40)			(7)	나-5	진관동 산101-19임	(189.40)	(189.40)			(7)
	나-6	진관동 93-39대	(399.20)	(399.20)			(10)	나-6	진관동 93-39대	(399.20)	(399.20)			(10)
	나-7	진관동 산110-44임	(48.58)	(48.58)			(3)	나-7	진관동 산110-44임	(48.58)	(48.58)			(3)
	나-8	진관동 산100-36임	(129.00)	(129.00)			(6)	나-8	진관동 산100-36임	(129.00)	(129.00)			(6)
	나-9	진관동 산100-36임	(63.00)	(63.00)			(6)	나-9	진관동 산100-36임	(63.00)	(63.00)			(6)
	나-10	진관동 산100-36임	(130.00)	(130.00)			(3)	나-10	진관동 산100-36임	(130.00)	(130.00)			(3)
소 계			983.41	983.41						983.41	983.41			
포살장	다	진관동 246-12전	983.41	983.41				다	진관동 246-12전	983.41	983.41			
	다		(983.41)	(983.41)				다		(983.41)	(983.41)			
소 계			183.28	183.28	2	41.93				183.28	183.28	2	41.93	41.93

안민시장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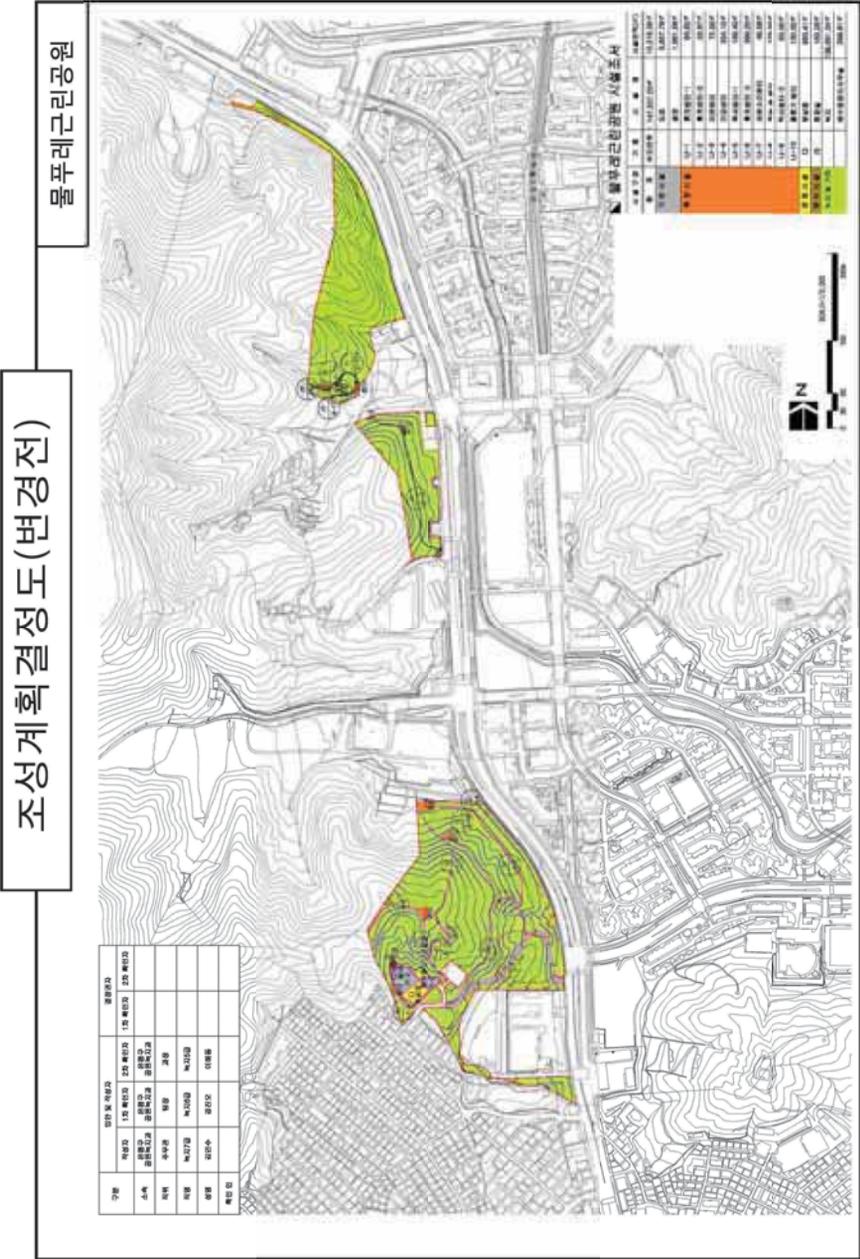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간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간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시 설	라	진관동 산110-17임	183.28	183.28	2	41.93	41.93			라	진관동 산110-17임	183.28	183.28	2	41.93	41.93			
소 계	라		(183.28)	(183.28)	2	(41.93)	(41.93)			라		(183.28)	(183.28)	2	(41.93)	(41.93)			
관 리 시 설								3										3	
목재헬스	①								2	①									2
안전난간	②								1	②									1
녹지 및 기타	소 계		136,990.85									128,748.26							김8,242.59㎡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136,990.85	(299.81)								128,748.26	(299.81)						김8,24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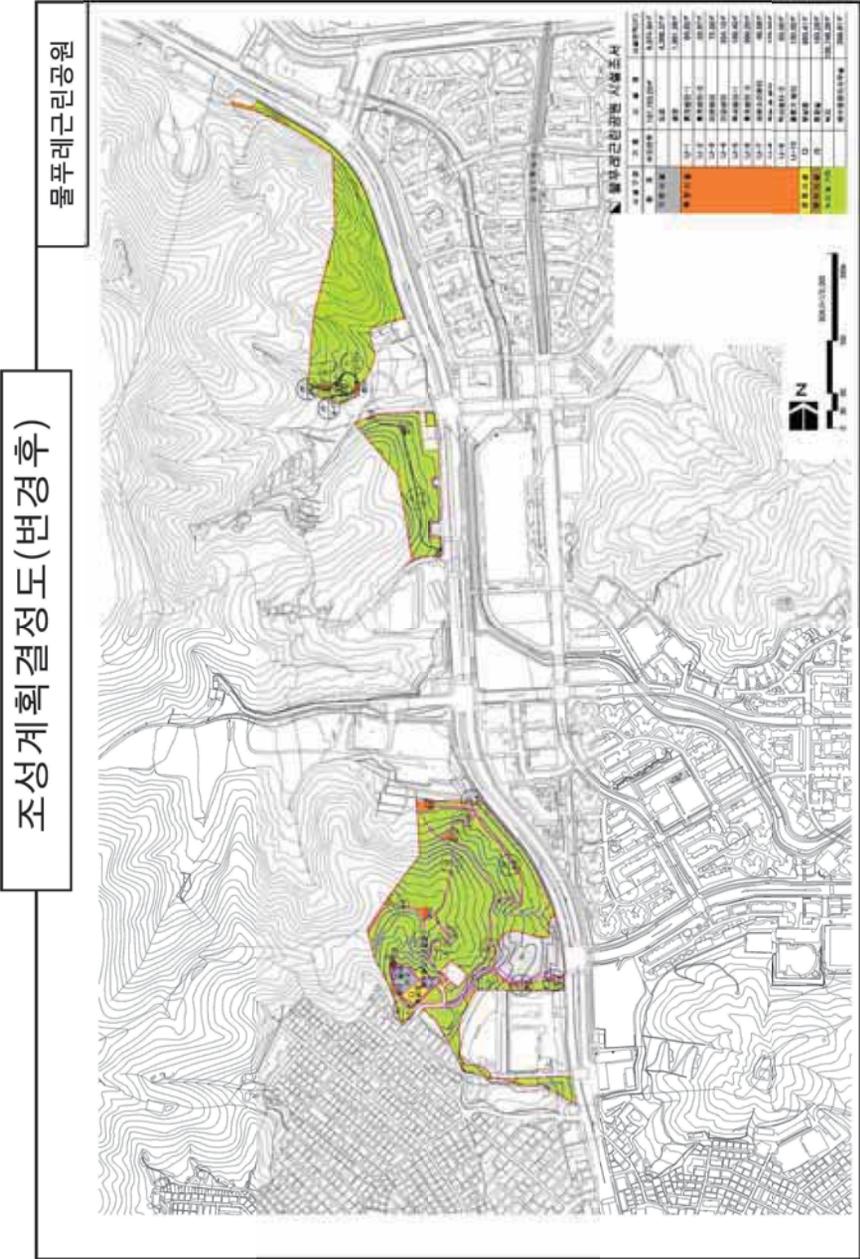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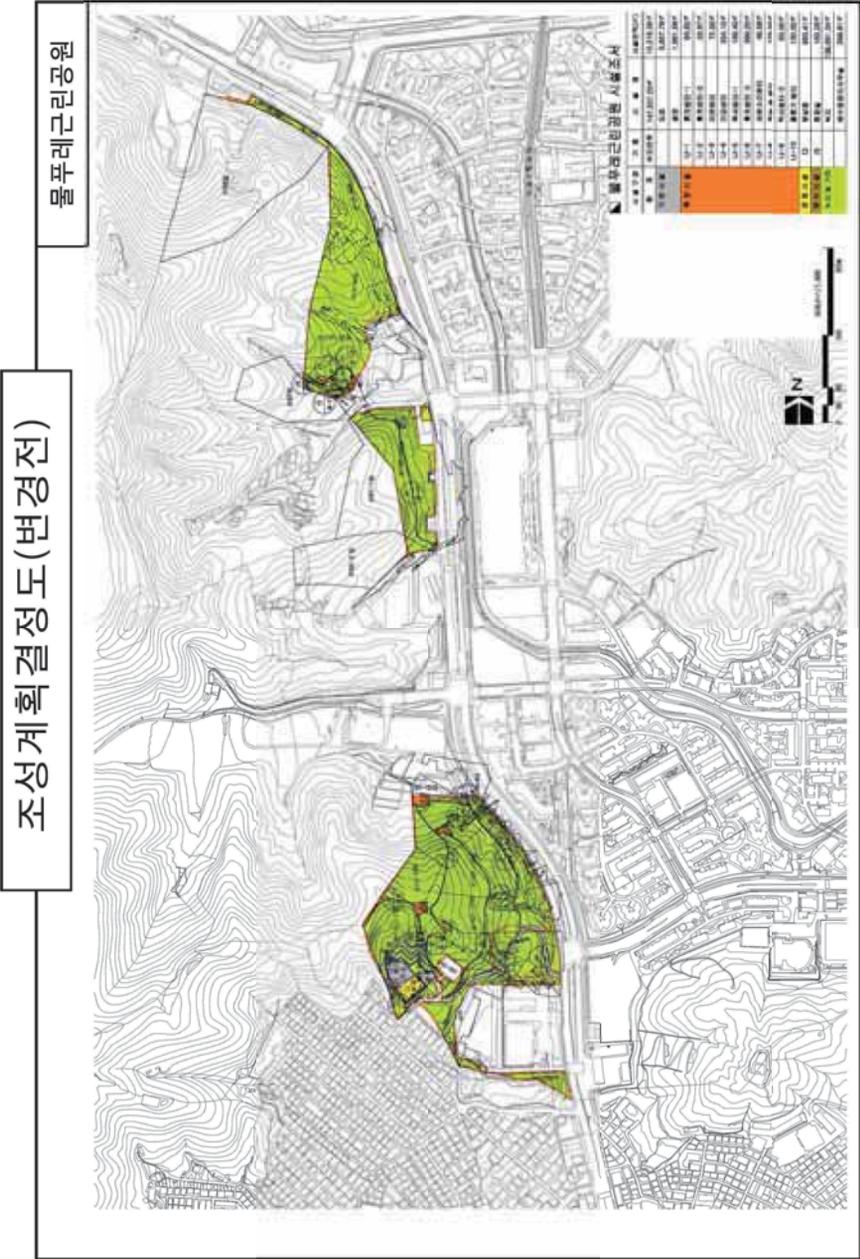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135.25	5,607.78				
변경					1,920.95	4,366.37				
당초	소 계				318.77	2,231.40				
변경					158.55	1,109.92				
당초	소로	3	1	7	318.77	2,231.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1	7	116.22	813.58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2	7	19.30	135.1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경		3	3	7	23.03	161.2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소 계				1,816.48	3,376.38				
변경					1,762.40	3,256.45				
당초	산책로	4	1	1.8	334.00	592.00	산책로	공원입구	나-5	
변경		4	1	1.8	334.00	592.00	산책로	공원입구	나-5	
당초		4	2	1.8	313.90	589.65	산책로	소로3-1	나-6	
변경		4	2	1.8	259.82	469.72	산책로	소로4-3	나-6	
당초		4	3	1.8	50.00	106.09	산책로	산책로4-2	산책로4-1	
변경		4	3	1.8	50.00	106.09	산책로	산책로4-2	산책로4-1	
당초		4	4	1.8	17.20	34.65	산책로	공원입구	산책로4-2	
변경		4	4	1.8	17.20	34.65	산책로	공원입구	산책로4-2	
당초		4	5	1.5	255.80	487.50	산책로	나-6	나-3	
변경		4	5	1.5	255.80	487.50	산책로	나-6	나-3	
당초		4	6	1.2	107.10	132.50	산책로	나-4	공원경계	
변경		4	6	1.2	107.10	132.50	산책로	나-4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	7	1.2	64.70	92.00	산책로	나-3	산책로 4-8	
변경		4	7	1.2	64.70	92.00	산책로	나-3	산책로 4-8	
당초		4	8	1.2	118.60	142.80	산책로	공원입구	나-4	
변경		4	8	1.2	118.60	142.80	산책로	공원입구	나-4	
당초		4	9	1.8	20.78	374.08	산책로	순환산책로		
변경		4	9	1.8	20.78	374.08	산책로	순환산책로		
당초		4	10	1.5	317.60	472.00	산책로	가-4	가-5	
변경		4	10	1.5	317.60	472.00	산책로	가-4	가-5	
당초		4	11	1.5	42.50	64.70	산책로	공원입구	나-8	
변경		4	11	1.5	42.50	64.70	산책로	공원입구	나-8	
당초	산책로	4	12	1.5	14.00	18.40	산책로	산책로4-11	나-9	
변경		4	12	1.5	14.00	18.40	산책로	산책로4-11	나-9	
당초		4	13	1.5	8.60	11.60	산책로	나-9	산책로4-14	
변경		4	13	1.5	8.60	11.60	산책로	나-9	산책로4-14	
당초		4	14	1.5	60.70	93.80	산책로	나-8	나-10	
변경		4	14	1.5	60.70	93.80	산책로	나-8	나-10	
당초		4	15	1.5	23.00	36.40	산책로	공원입구	나-10	
변경		4	15	1.5	23.00	36.40	산책로	공원입구	나-10	
당초		4	16	1.8	68.00	128.21	산책로	산책로4-2	나-5	
변경		4	16	1.8	68.00	128.21	산책로	산책로4-2	나-5	







2022 - 650

()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226호(1988.3.28.) 및 구로구고시 제2016-161호(2016.10.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 구로구고시 제2017-58호(2017.04.13)로 실시계획 인가, 구로구고시 제2017-74호(2017.05.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구로구고시 제2017-123호(2017.07.27.), 제2018-45호(2018.02.22.), 제2018-117호(2018.06.14.), 제2019-37호(2019.02.21.), 제2019-154호(2019.08.22.)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24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3-35~115-124

다. 공사완료(준공)현황

()		가		()
가	B=8m, L=377m	2019-154 (2019.08.22.)	2018.04.30.~2021.1 2.31.	2021.12.31 (2021.12.31)

라. 위치도 : 1부 (계재생략)

2022 - 620

() () 가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0호(1997.2.7.)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2호(2021.9.30.)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91호(2020.5.1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구로구 고시 제2020-223호(2020.11.12.)로 실시계획 인가 정정 고시된 개웅산근린공원의 일부인 천왕동 9-100번지 일대에 대하여,
2.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련 내용은 구로구청(녹색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3월 24일

구로구청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9-100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변경)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개웅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내용(변경)
 - 당 초 : 토지보상
 - 변 경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등
- 3) 사업의 면적 : 1,960㎡
-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ㄱ 성 명 : 구로구청장
 - ㄴ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 5)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 6)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변경)
 -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2020.5.14.~2022.5.13.)

○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2020.5.14.~2025.5.13.)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나. 변경사유 :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 준공 예정일 변경

다.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구로구청 녹색도시과(☎02-860-31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개웅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평면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960	1,960						
1	천왕동 산8-10	임야	1,737	1,73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천왕동 9-100	대지	95	95	에스에이치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3	천왕동 9-101	대지	33	33	에스에이치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4	천왕동 9-104	대지	1	1	에스에이치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5	천왕동 9-105	대지	92	92	에스에이치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6	천왕동 9-102	대지	2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022 - 621

[()]
() 가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0호(2021.9.30.)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96호(2020.5.14.)로 실시계획 인가 및 구로구 고시 제2020-235호(2020.11.19.)로 실시계획 인가 정정 고시된 온수근린공원의 일부인 온수동 산11-2 등 3필지에 대하여,
2.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련 내용은 구로구청(녹색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산11-2, 온수동 77-5, 온수동 22-23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동) 조성사업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등

다. 사업의 면적 : 7,859㎡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ㄱ 성 명 : 구로구청장
- ㄴ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변경)

-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2020.5.14.~2022.5.13.)
-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2020.5.14.~2025.5.13.)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아. 변경사유 :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 준공 예정일 변경

자.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구로구청 녹색도시(☎02-860-31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동)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7,859	7,859						
1	온수동 산11-2	임야	7,841	7,84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온수동 77-5	대지	15	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온수동 22-23	대지	3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명 :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동)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계				1,028							
1	온수동 산11-2	건물	세멘조	11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온수동 산11-2	건물	세멘조	1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온수동 산11-2	건물	세멘조	5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수동 산11-2	건물	목조	15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온수동 산11-2	건물	세멘조	13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	온수동 산11-2	건물	세멘조	4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온수동 산11-2	건물	세멘조	15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온수동 산11-2	건물	세멘조	1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	온수동 산11-2	건물	세멘조	15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명 : 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 소공원 2-1) 조성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4	14						
1	오류동 18-144	대지	11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오류동 18-146	대지	1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오류동 18-145	대지	2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022 - 626

[()]
() 가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0호(2021.9.30.)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122호(2020.6.18.)로 실시계획 인가 및 구로구 고시 제2020-236호(2020.11.19.)로 실시계획 인가 정정 고시된 온수근린공원의 일부인 온수동 15-2 등 3필지에 대하여,
2.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련 내용은 구로구청(녹색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5-2, 오류동 18-144, 오류동 18-146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자연공원(소공원) 조성사업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등

다. 사업의 면적 : 24㎡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ㄱ 성 명 : 구로구청장
- ㄴ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변경)

-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2020.6.18.~2022.6.17.)
-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간(2020.6.18.~2025.6.17.)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아. 변경사유 :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 준공 예정일 변경

자.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구로구청 녹색도시과(☎02-860-31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은수도시자연공원(소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2	2						
1	은수동 15-2	전	2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명 : 은수도시자연공원(소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계				22							
1	오류동 18-144	건물	벽돌조	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오류동 18-146	건물	벽돌조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명 : 은수도시자연공원(은수근린 7-2)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008	1,008						
1	오류동 1-3	대지	379	379	허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달래로 13길 ○				
2	오류동 1-106	대지	315	3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오류동 1-23	대지	182	18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오류동 1-24	대지	132	13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명 : 은수도시자연공원(은수근린 7-2) 조성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계				288.34						
1	오류동 1-3	건물	연외조	1층	허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13길 ○				
				지층			32.40			
2	오류동 1-106	건물	시멘트 블럭조	5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오류동 1-23	건물	시멘트 블럭조	46.2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022 - 489

[4]
() ()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1-497호(2021. 3.18.) 및 제2021-1741호(2021.10.14.)로 열람공고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2022. 2.23,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동 작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70,954	-	70,954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50호(2002.2.28.)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1·2구역, 특별계획3구역, 특별계획5구역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나) 특별계획4구역에 관한 지침(변경)

나. 재열람공고 개요

1) 열람기간 : 2022. 3.25.(금) ~ 4. 7.(목)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도시계획과)

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02-820-96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 78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선명)	점용기간	
(주)골든블루 마리나 서초지점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잠실수중보~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인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마리나선박대 여업	동력선 4척	2022.3.12. ~ 2022.11.30.	2022. 3.17.

2022 - 104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시계 내 한강 (월드컵대교)	선박 6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022.3.1.~ 2022.12.31.	2022. 3.7.

2022 - 105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튜브스터 코리아(주) (대표 안영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1층 GS25(반포동, 체빛섬)	세빛섬 내 가빛섬~예빛섬 사이 수상 구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수상레저사업	- 무동력선 (파티보트) 17척 - 동력선(구조선) 1척	2022.3.23.~ 2021.10.31.	2022. 3.17.

2022 - 110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대교)	선박 2척	잠실수중보 보수	2022.3.15.~ 2022.5.31.	2022. 3.10.

2022 - 111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주)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잠실수중보~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인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수상 레저사업	동력선1척	2022.3.12 ~ 2022.11.30.	2022. 3.17.

2022 - 117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홍** (아리랑하우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	잠실대교 ~ 성수대교	• 선박: 38척 (212.8㎡)	유선사업	2021.3.15. ~ 2022.12.31.	2022. 3.14.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대진물산 잠실마리나지점 (대표 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잠실대교 ~ 청담대교	선박 2척 (35.5㎡)	수상레저사업	2022.3.15. ~ 2022.12.31.	2022. 3.15.
			63.3㎡ (기타점용)	선박계선	2022.3.15. ~ 2022.6.30.	

2022 - 118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계 내 한강 (강동대교~행주대교)	모터보트5척, 작업대1척	교량점검	2022.3.15.~ 2022.12.18.	2022. 3.16.

2022 - 119

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계천로 8	서울시계 내 한강 (월드컵대교)	선박 2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022.3.1.~ 2022.12.31.	2022. 3.16.



2022 - 41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당초)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잠원동
(변경)당초 구간 중(압구정동 386,386-1,387,389,390, 잠원동121번지)
 - 면 적: (당초) 3,695.4㎡ (변경) 8,489.2㎡(영구 3,438.2, 일시 5,0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당초) 열배관매설 (변경) 기존 열배관 일부 교체 및 기존관 철거
 - 내 역: (당초) 열배관 L=2,554m 500A: 2,170m*2열, 600A: 384m*2열
(변경) 열배관 L=2,311m 500A: 1,793m*2열, 600A: 515m*2열,
공사내용: 관교체(500A->600A) L=131m*2열, 기존관 철거(500A) L=243m*2열
5. 점용기간: 2021.06.15.~2022.12.31.
6. 공사기간: (당초)2021.01.21.~2021.04.30. (변경)2021.01.21.~2021.04.30.
변경허가일부터.~2022.05.14.

2022 - 47

()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치수과)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5-3번지 등 4필지
(115-2, 115-3, 115-5, 115-6)
 - 면 적: 4,441.68㎡(영구 3,753.99, 일시 687.6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주민 편익을 위해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공간을 확보
 - 내 역
 - 지하보도 1개소(B=8.0, H=3.0, L=84.8m)
 - 육갑문 1개소(B=7.5, H=9.9, L=10.4m)
 - PHC말뚝(∅500×80T, L=15.0m): 15본
 - 추진 및 도달기지 가시설: 1식
5. 점용기간: 2022.03.18.~2027.06.30.
6. 공사기간: 2022.03.18.~2023.07.30.
(수해대책기간 제외지 공사 중지 : '22.05.15~ '22.10.15.)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